政策討議시리즈 32
1986. 12

農地所有現況과 改善方案

地方公聽會 및 座談會討議內容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 리 말

이 책자는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地方公聽會 및 座談會에서 토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本 硏究院은 농어촌종합대책의 일환인 現行 農地制度를 개선하고자 지난 8월 26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여기서 발표된 主題와 討議內容 등을 엮어서 政策討議시리즈 31(1986. 8)로 이미 간행한 바 있다.

農地問題는 지역성이 강해 地帶나 地域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本 硏究院은 이를 정확히 파악하여 농지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農水產部의 協助를 받아 지난 9월 23일부터 전국 8개 郡 지역을 선정하여, 2개 郡에서는 公聽會, 6개 郡에서는 座談會를 개최하였다. 해당지역의 農民代表, 農民團體長, 一線公務員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록한 것이 이 책자이다. 여기서 발표된 主題는 서울 공청회의 것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省略하였다. 그리고 일부지역의 討議內容가운데 토의자의 이름이 누락된 것은 기록상태가 좋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며, 미리 당사자의 양해를 얻고자 한다.

이번 지방 공청회 및 좌담회에서 討議된 내용은 農地賃貸借管理法의 제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制度施行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로 믿는다.

끝으로 공청회 및 좌담회에서 귀중한 의견을 발표해 주신 農民代表를 비롯한 參席한 여러분에게 심심한 謝意를 표하며, 또 協助가 컸던 農水產部 關係官,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해당지역 郡守 및 關係者 여러분에게도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1986年 12月

韓國農村經濟硏究院長 金 榮 鎭

開催地域 및 開催日程

開催地域	開催日字	備考
全北 金堤郡	1986. 9. 23	公聽會
慶北 尙州郡	1986. 9. 26	〃
全南 求禮郡	1986. 9. 24	座談會
慶南 昌寧郡	1986. 9. 25	〃
忠北 陰城郡	1986. 9. 29	〃
忠南 禮山郡	1986. 9. 29	〃
江原 洪川郡	1986. 9. 30	〃
京畿 廣州郡	1986. 9. 30	〃

目　　次

Ⅰ. 全北 金堤郡 公聽會 …… 1
Ⅱ. 慶北 尙州郡 公聽會 …… 32
Ⅲ. 全南 求禮郡 座談會 …… 50
Ⅳ. 慶南 昌寧郡 座談會 …… 61
Ⅴ. 忠北 陰城郡 座談會 …… 82
Ⅵ. 忠南 禮山郡 座談會 …… 90
Ⅶ. 江原 洪川郡 座談會 …… 118
Ⅷ. 京畿 廣州郡 座談會 …… 134

빈 면

Ⅰ. 全北 金堤郡 公聽會

가. 開催日時 및 場所

日時 : 1986. 9. 23

場所 : 東津農地改良組合 會議室

나. 討論參加者 및 參席者

主題發表者	金聖昊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委員)
討 論 者		
〈學 界〉	柳鍾完	(全北大 教授)
	張東燮	(全南大 教授)
〈團 體〉	沈成澤	(東津農地改良組合長)
	宋桓澈	(金堤郡 金溝面 單位農協組合長)
	金桂中	(金堤郡 扶梁面長)
〈自作農〉	安吉煥	(金堤郡 竹山面 西浦里)
	宋秀燁	(金堤郡 金溝面 靑雲里)
	崔南植	(金堤郡 廣活面 倉堤里)
〈賃借農〉	金在玉	(金堤郡 白鷗面 江興里)
	裵鍾九	(金堤郡 扶梁面 金江里)
	朴柳鉉	(金堤郡 廣活面 玉浦里)
〈賃貸人〉	林炯奎	(金堤郡 扶梁面 大坪里)
	崔奎倫	(金堤郡 萬傾面 松上里)
	崔成洙	(金堤郡 進鳳面 古沙里)
參 席 者 :	李官範	(農水產部 農漁村開發局長)
	이건재	(全羅北道 農政局長)

신진하　（金堤郡 副郡守）
송준길　（金堤郡 農產課長）

다. 討議內容

司　會（송준길 金堤郡 農產課長）：농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聖昊 委員의 주제발표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柳鍾完（全北 大敎授）：부재지주의 경우는 물론 막아야지요. 그런데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해 논을 사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金聖昊（韓國農村經濟硏究院 硏究委員）：그렇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남에게 빌려 주고 가까이 있는 것을 빌리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그런 것은 부락민이나 알지 정부가 어떻게 규정할 수는 없으므로 農地管理委員會에서 담당할 것입니다.

柳鍾完：그런 것은 법제정을 할 때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炯奎（賃貸人）：농지와 거주지가 붙어 있으나 郡 境界線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그 거리는 불과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金聖昊：일본의 경우를 보면 농지법에 의해서 현주소 원칙입니다. 반드시 자기 토지가 있는 소재지에 살아야만 그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경계선에 있을 경우는, 농업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대대손손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대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획일적

으로 몇 킬로냐 하는 것으로 규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관행이면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宋桓澈(單位農協長) : 쌀값 상승률보다 지가 상승률이 훨씬 높고, 농사를 지어서 땅을 살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농민의 購買力이 모자라서 도시 사람이 농촌 사람의 名義를 이용하여 많은 농지를 새롭게 대량으로 매입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런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는 있는가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쌀값과 농지값을 비교했는데, 농촌의 農地價格과 도시의 토지가격을 비교해 보셨는지요? 그 차이는 제 생각으로도 엄청나게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곳의 실정으로 봐서는 도시에 가서 전세방 하나를 얻으려 하면 적어도 한 필지를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농촌의 호당 耕地面積이 0.8*ha*이니까 약 1/3이상을 팔아야 자녀를 서울에 보낼 때 방이라도 얻어 줄 수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비교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金聖昊 : 土地라는 것이 농민의 생계수단인 쌀을 생산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쌀값과 비교한 것이지요.

宋桓澈 : 논이라는 것은 농민의 재산도 되지 않습니까.

金聖昊 : 그렇죠. 그런데 현재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은 땅값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營農後繼者라든가 새롭게 땅을 사서 늘리려는 분에게는 곤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가격이 올라간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쌀값과 비교한 까닭은, 쌀을 생산하는 논이 쌀값과 심하게 괴리되었다는 뜻에서입니다.

이곳 김제의 경우는 다르지만, 都市近郊는 지금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읍니다.

崔南植(自作農) : 自作農이 老齡化하여 경작능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됩니까?

金聖昊 : 不在地主는 아닙니다만 원칙으로 따지면 임대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賃貸所得稅가 부과되고 있읍니다.

崔南植 : 不在地主에게나 在村地主에게나 똑같이 세금이 부과됩니까?

金聖昊 : 農地賃貸所得稅의 경우는 모두 다 똑 같습니다. 다만 相續稅와 贈與稅는 부재지주에게 중과할 것입니다.

崔奎倫(賃貸人) : 不在地主의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농촌에 현재 거주하면서 공무원이나 교사 등 다른 직업을 갖고, 농사를 안 짓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현재 농사를 안짓고 있을 망정 不在地主는 아니지 않습니까?

金聖昊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農家實情으로는 農業所得만으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農外所得을 키워야만 都農間의 소득균형이 가능해집니다.

催奎倫 : 農地購入資金 2천억원을 방출한다는데, 농지구입자금을 쓸 사람은 많고 돈은 제한되어 있읍니다. 그렇다면 농지구입자금의 전액을 지원하는 것인지,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金聖昊 : 앞으로 기준을 정할 것입니다. 일년에 2천억원이라는 것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年金制度 등으로 이어져서 기금이 되면 제도적인 장치가 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분, 또 營農後繼者 등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될

것입니다.

崔奎倫: 農地購入資金을 주면 꼭 농지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농지값만 오른다는 얘기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金聖昊: 어제는 땅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농지값을 올리는 효과입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朝鮮總督府가 1932년부터 10년간 自作農創設事業을 시행한 적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그 당시 總督府가 땅값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總督府는 지주 중심의 정책을 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천억이든 2천억이든 방출되면, 그것은 땅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팔겠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張東燮: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상속할 때 그 상속인이 농민인 경우와 비농민인 경우를 구별해서 差等稅制를 적용하겠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法網을 피하기 위해서, 도시에 나가 있던 상속인이 농촌에 들어와서 우선 상속을 받아 놓고, 나중에 그것을 팔아버리는 경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만 포탈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金聖昊: 현행 相續稅가 2천평까지 면제됩니다. 농민이 상속을 받을 경우 3정보 즉 9천평까지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과 같은 세금포탈은 정부가 막을 길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農地管理委員會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張東燮: 가령 한번쯤 농사를 짓고 세금을 모두 포탈해 버리는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金聖昊: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시해 본

적이 없어서 일본이나 대만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일본의 토지문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지법에 농사짓다가 떠나면 縣知事가 그 토지를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을 30여년 동안 한 번도 집행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물을 쳐 놓고 대충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일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법이 얼마만큼 지켜질지는 자율적인 農地管理委員會의 기능에 맡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司 會 : 이어서 討論에 들어가겠읍니다. 全北大 柳鍾完 教授님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柳鍾完 : 먼저 農業政策의 理念 또는 목적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것을 「人間解放」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해방이라는 것은 「人間疎外를 止揚」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科學技術의 發達에 의해서 자연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며, 社會制度의 改善에 의해서 사회제도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農業政策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세 가지 목표는, 첫째 食糧自給度 향상, 둘째 값싼 식량의 생산, 세번째는 농가소득의 증대를 들 수 있읍니다. 이 세 가지 목표가 농업정책의 기본목표라고 여겨집니다. 이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농업정책, 즉 農地立法과 함께 농민이 의욕적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타의 농업정책이 확립됨으로써, 농업구조개선과 함께 농업기술 즉 농업생산력이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기술에는 地力向上技術 즉 토지생산성향상 기술과 함께 노농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이 병행해서 향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농지정책과 기타의 농업정책의 기조는 항상 현실과 이념 사이의 가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農地立法은 토지정책의 일환이며, 토지정책의 목적은 인간존재의 기초로서의 자연, 즉 토지와 인간간의 정상적인 물질

대사가 경제발전과정에서 파괴되지 않도록, 토지자원을 정상적으로 유지 보존 개발하면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합리적인 법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토지는 비농업부문이나 농업부문에서나 다같이 생산의 수단으로서 이용되지만, 비농업부문에서는 간접적인 생산수단으로 이용되고 농업부문에서는 토지가 직접적인 생산수단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는 자연의 산물이면서도 그 존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개인에 의해서 독점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이것이 분산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반드시 합리적으로 이용되지 못한다는 모순이 있읍니다. 농지정책의 목표는 이상과 같은 인식하에서 농지의 확보, 즉 농경지의 침식방지 및 확장(구체적으로 말하면 간척, 개간), 농지의 합리적 이용, 농지이용률의 고도화, 농지의 집단적 이용, 그리고 지력의 유지 및 증진 등이 농지정책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농지입법의 골자는 무엇이냐?

먼저 농지입법의 전제를 생각할 때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경영형태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먼저 경영상을 논의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家族經營이거나 協業經營이거나, 借地經營이거나, 自作經營이거나간에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편파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것들이 포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경영이든 수지만 맞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고도로 이용하면서 지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점을 충족시킨다면 어떤 경영형태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專業經營뿐만 아니라 이젠 兼業農家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읍면의 행정체제를 대폭 이용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것을 생각했었는데, 역시 農村經濟硏究院에서도 그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입니다.

둘째로 식량의 자급도 향상을 위해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력증진의 병행이라는 취지에서 입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하고 싶은 것은, 혹자는 선별된 토지의 집중을 통해서 소수 농민의 勞動生産性만을 높임으로써 낮은 農産物生産費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農産物生産費를 낮추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농산물의 자급도향상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번째로 農地法의 實體法을 促進法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農地法이 농지개혁의 성과를 지키는 법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農地改革法에서는 耕者有田의 原則만 강조했을 뿐, 적당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망되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를 촉진하는 법률이 되고, 농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는 사람들이 열심히 찾고 이용할 수 있는 農地委員會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즉, 진실로 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 데 우선권을 가지고 안심하고 경작할 수 있는 촉진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로 권리취득의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교란시키는 행위, 예를 들면 토지 브로커의 買占行爲·土地價引上行爲는 엄격히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을 허가하는 기준은 토지의 생산력을 높일수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을 하는 권한은 물론 농지위원회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기존 不在地主에 대한 대책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부재지주를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부재지주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이것을 획일적으로 다루지 말고 구분해서 법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農地管理委員會에 대해서는, 농지의 권리 이동과 함께 토지이용방법을 제한, 또는 촉진하는 권한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민의 창의력을 이용하여 부재지주를 줄여나가는 데 취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섯번째로 遊休地 配定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유휴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고도이용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타농가에 배정

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정시켰을 때 충분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또 자기가 직접 경작하고 싶을 때는 소유자가 그 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다면, 遊休地 所有者는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말단행정기관의 지도도 기꺼이 받을 것입니다.

일곱번째로 임차료에 관한 것으로, 일률적인 규정은 곤란할 것입니다. 賃借料는 粗收益에서 物材費와 自己資本利子 그리고 均衡勞賃 등을 뺀 나머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農地管理委員會가 그 지역 실정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능히 그 계산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여덟번째로 賃借料 形態 문제가 있는데, 現物制냐 金納制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읍니다. 제생각으로는 이것은 어느 형태든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화폐로써 계약을 맺었을 경우,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 슬라이드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홉번째로 賃借權의 强度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경우, 경작권이 강한 것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경작권이 너무 강할 경우, 임차면적이 감소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宋秀燁(自作農) : 제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이 농지제도 문제가 수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심적인 동요가 컸었읍니다. 제 생각으로는 土地改革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인 줄 알고 사실은 무척 우려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를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賃貸農을 법적으로 허용하겠다. 즉, 부세지주를 막아 주는 둑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또 영세한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이 법이 제정된다는 설명을 듣고 나니 안심이 됩니다. 또한 賃貸農이 전체 농토의 30%를 점하고 있고 또 부재지주가 19%나 되는 상황을 볼 적에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강구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賃貸農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농지제도를 종합적으로 손질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도 긍정적으로 여겨집니다.

그 성패는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自耕農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

씀드리고 싶은 것은 農地價引下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임대농과 부재지주를 규제할 경우 매도자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년에 약 2 천억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농지가격의 하락이 우려됩니다. 사실 지금 도시와 농촌의 地價를 보면, 도시의 地價가 농토값보다 월등히 높아, 농민의 자산인 농토는 어려움을 겪고 있읍니다. 반면에 지금 유지하고 있는 농토가격마저 이 조치로 인한 심리적 동요로 지금의 가격보다 더 하락할까봐 자경농을 하는 입장에서는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이렇게 볼때, 이 문제는 최소의 마찰을 피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앞에는 평야이고, 뒤에는 야산지역이며, 또한 全州와 연결되는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도로변 주변의 야산지역은 몇 만평씩 도시인 소유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뭔가 규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산지역에 관리인을 두어 그 사람의 名義로 돌린다든지, 친척을 이용한다든지, 주민등록을 옮긴다든지 하여 은폐시킨다면 이 제도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農地管理委員會의 효율성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 농지제도와 직접 관련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농가의 소득증대를 기한다는 데도 이 제도의 목적이 있다고 여겨져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농가에는 所得源이 적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산물가격의 유지문제, 세제혜택의 문제도 이 제도를 계기로 아울러 중요하게 다뤄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金堤郡의 이 넓은 평야지대에서도 평균적으로 農家戶當 300 만원의 負債를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발전시켜 주시길 기대합니다.

林炯奎 : 不在地主의 한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投機目的이 아닌 순수한 부재지주의 규제조치는 어떤 것입니까. 농촌에 살면서 반은 賃貸하고 반은 耕作하는 경우와 또 현지에서 경작면적이 적

어 타산이 맞지 않아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차별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農地稅가 累進稅로 적용되므로 大農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累進農地稅法을 폐지하여 대농이 많이 발생케 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정보 上限線을 廢止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 1인당 GNP에나 겨우 미치는 상한선으로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朴柳鉉(賃借農) : 저는 賃借農으로서 이번 조치를 환영합니다. 먼저 賃貸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임대료는 몇년 전만 해도 1필지당 7가마~8가마 선이었읍니다. 그러나 요즘은 10~12가마, 심지어 저희 같은 上畓地域에서는 13가마까지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임대료가 오르게 된 이유는, 그동안 多收穫 新品種 개발과 영농기술의 개선으로 생산이 증가된 것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賃借地 需要의 증가로 賃借人이 스스로 賃借料를 올리게 된 결과가 된 것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자경을 하면서도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하여 임차를 하는 사람보다는, 자기 전답이 전혀 없이 임차에만 의존하고 있는 농가가 더욱 문제가 됩니다. 이분들은 임대농이 농지를 임대해 주지 않을 경우 그야말로 실업자가 되어 생계가 막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를 계속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임차료를 내겠다는 식으로 점점 올라간 것이 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막대한 영농지출을 하면서, 또한 각종 組合費, 農地稅까지도 경작자가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이것을 제하고 나면, 순수한 임차농의 농업소득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의 일시적인 생계수단이 될 뿐, 그 소득으로 농지를 구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읍니다.

반면에 임대농이나 부재지주의 입장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投資에 대한 이자를 생각치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현재 金堤郡의 토지값은 어느 곳이나 1필지에 150가마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150가마 이상을 현금으로 환산한다면 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1천만 원의 자금을 投資해 놓고 보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료

가 그리 비싼 것도 아닙니다. 천만원을 투자해 놓고 70～80만원의 이자밖에 받지 않는 셈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이번 조치대로 임대료의 하향조정이라든가, 賃貸所得에 重課稅를 부과한다면, 임대농이나 부재지주는 자신들이 임대해 준 전답을 매매하거나 회수할 우려가 있읍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농지제도가, 일시적으로나마 영세한 임차농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물론 정부는 農地購入資金을 長期低利資金으로 융자해서 영세농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읍니다. 하지만, 정부자금도 한계가 있는 이상, 일시적이나 짧은 기간내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저는, 임차농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임대농과 부재지주도 병행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宋桓澈：먼저 정부에서 농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農漁村綜合對策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종합대책 중 農地制度改善案은 그 실행상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농민이 못사는 이유는, 農家人口가 전체의 23%를차지하고 戶當 耕地面積이 약 1 *ha*로 영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선진국이라면 보통 농업인구의 10% 이내인데, 우리는 23%나 되어 상대적으로 戶當耕地面積이 영세합니다.

農地賃貸借法이 정착화되면, 현재 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농가들이 대부분 빈곤한 영세농가인데, 이들은 사실상 농촌에서는 수지가 안맞아 도시로 떠나야 할 사람들인데 이들을 농촌에 그대로 묶어 두는 현상이 되어, 戶當耕地面積이 늘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시의 부재지주들이 농지를 뺏길까봐, 주민등록을 농촌으로 옮기어 새로운 농가가 생겨나면 또 농촌인구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戶當耕地面積이 더욱 영세해져서,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때 농가의 장래가 암담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農外所得이 農業所得보다 많은데, 한국도 農外所得이 증가하는 일로에 있읍니다. 그렇다면, 농지를 임차하는 사람이

농외소득개발에는 신경쓰지 않고, 농업소득에 연연하다 보면, 소득개발면에서는 농촌의 장래에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宋秀燁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제도가 실시되면 일시에 부재지주가 농토를 매각하여 농지가격이 하락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農家負債가 호당평균 약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200만원을 갚기 위해서, 천평의 농지를 매각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을 農地價格이 하락되면 2천평을 매각하여야 빚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농촌에서는 생계가 막연하여 도시에 가서 구멍가게라도 하려는 사람들은 농지가격이 하락하면, 싼 가격으로 농지를 팔게 되어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임차제도보다는 먼저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마련해 줬으면 합니다.

우선 企業農育成의 가장 제약이 되는 累進農地稅를 철폐하여 주십시오. 이 累進農地稅는 또 임차농과 임대농 사이에서도 임대를 주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임대농이 부담하게 되면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 임대농은 累進農地稅를 주고 나면,아무 것도 자기 소득이 없읍니다. 그래서 企業農 育成에 제약이 되는 累進農地稅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또 상속문제에 있어서도 一子相續稅로 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아들이 여럿일 경우, 농지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상속이 되므로 자동적으로 농민이 영세해지고 부재지주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제도상의 문제점을 먼저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崔南植 :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잘 말씀해 주셔서 많은 궁금증이 풀렸읍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가 평소 생각하고 느꼈던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대부분이 농사라는 직업을 제일 꺼려하고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읍니다. 자식들도 공부를 못하면 농업학교에 보내거나 농촌에 두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농민은 하루 이틀 마음속으로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농촌에 살아야 하고, 농촌에 뼈를 묻어야 할 사람인데 왜 푸대접을 받느냐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면

농사짓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희생은 농민이 보게 되는 일이 있었읍니다. 지난 20여년전에 農漁村高利債整理를 해봤읍니다만, 농촌의 인심은 그 10여년 동안 상당히 삭막해졌읍니다.

또 친구를 믿지 못하고 형제를 믿지 못하는 현상이 있었읍니다. 그 뒤 8·3조치라는 것을 했읍니다만, 일시조치를 하니까,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다가 5년이나 6년 있다가 겨우 좁쌀이라도 얻어 먹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賃貸借法案도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 보고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제가 평소 생각하기를, 농사도 企業農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래야 농사짓는 데도 고급두뇌가 모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3정보 갖고는 요즘의 과학기계 영농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소득으로 봐서도 3정보 상한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도 企業農, 株式農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부재지주에는 선의의 부재지주와 投機를 목적으로 하는 부재지주,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유 교수님께서 언급하셔서 중복된 감이 있읍니다만, 선의의 부재지주를 投機性不在地主와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農地購買力이 없는 농민이 도시의 친지에게 농지를 구입하게 하여 임차를 할 수도 있읍니다. 이런 경우의 부재지주는 이번 조치로 인해서 손해를 불구하고 농지를 매각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시에 그 친지 사이는 서로 멀어지고 그 임차농은 失農이 됩니다. 이런 것 또한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선의의 부재지주와 投機性不在地主는 구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崔奎倫: 사실 저는 반은 임대농이자 반을 자경을 하고 있읍니다. 제 명의로 된 논은 전부 짓고, 형제들 명의의 논은 전부 임대를 했읍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累進率 때문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료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4년전만 해도 논 1,200평에 백미 7～8가마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지

금은 임대농측에서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임차농측에서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임차를 해도 남는 것이 있으니까 서로들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임대료는, 제가 보기에 상한선까지 와 있다고 여겨집니다. 정부에서 20%, 30%로 정한다는 것은 결국 농사를 짓는데 合作式이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가령 1,200평에 5가마, 6가마식으로 定額制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농사를 짓는 사람도 營農効率을 높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定率制는 농사를 잘 짓거나 못 짓거나 일정비율을 주는 것이지만, 定額制로 하면 임차인이 임대료를 주고도 더 많은 생산을 얻기 위해 영농효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裵鍾九(賃借農) : 저도 지금은 임차농이지만 한 3년 지나면 임대를 해줘야 할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관행대로 나간다면 저로서는 다행이겠읍니다만 임차하는 농민, 영세농의 입장에서 볼 때, 쉽게 말해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간에 항시 불만이 고조됩니다. 그러면 누가 양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서로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법 제도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아까 최선생께서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료를 올린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많이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더 준다고 해도 안 받으면 되는데, 받으니까 자꾸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金桂中(扶梁面長) : 우선 耕者有田 原則의 회복에 대해 대찬성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 법안에서 農地管理委員會의 機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委員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시면서 인격과 학식을 갖춘 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선임 방식으로서 선거에 의한 방법은 부적격자를 뽑게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읍·면장이 위촉하는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또 위원에 대해 최소한도의 수당을 보장해 주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한테 그만한 대가를 안주고 책임만 물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성인원수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6명이었읍니다만 6명일 경

우, 지역 사정을 잘 모릅니다. 큰 면에 군데군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락 나름의 사정을 세세히 알 수가 없었읍니다. 때문에 모든 업무집행 과정에서 차질이 생기기도 했읍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락단위로 1명씩 위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전에 저희 면은 30개 자연부락이었는데, 지금 27개로 분류되고 있읍니다. 행정구역은 7개 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눠준 자료를 보면, 行政區域單位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行政區域 里 單位로 해서는 그 지역내부를 소상히 알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일으킬 염려가 있고, 특히 이 법안에서는 農地管理委員會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自然部落單位로 한다면 저희 면의 경우는 27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農地管理委員들에게는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구이므로 여기에 핵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地價下落에 있어서는, 모두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에 관한 농촌의 여론을 들어보면, 가장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것이 地價下落에 관한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강직하게 농토만을 큰 재산으로 삼고, 낙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도가 생겨서 지가가 하락되어, 재산이 일시적으로 도난당했다는 느낌을 가질 때, 또 재산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는 느낌이 들 때, 과연 농민들의 심정이 어떻겠읍니까. 그야말로 정부에 대한 큰 원망의 불씨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地價下落을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일년에 農地購入資金을 2천억씩 투입한다고 했는데, 2천억이라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면에 약 13필지 정도, 1억 3천만원 정도 해당됩니다. 그러면 겨우 이것으로 지가가 조정될 것인가 생각해 보니, 틀림없이 지가가 내려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1년에 2천억을 줄 것이 아니라, 첫해의 시행이 가장 중요한 만큼 첫해와 그 다음해는 5천~6천억 정도의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지가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정도 투자를 하면 한 면에 약 40필지 정도 매매가 되어 지가가 유지될 것이라는

계산을 나름대로 해 봤읍니다. 지가가 하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實驗期間의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자료를 보면, 약 3개면을 실험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실험기간을 최소한 1년 내지 2년으로 해서,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나름대로 제 생각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읍니다.

安吉煥(自作農) : 農漁村綜合對策이라는 것은 정부가 농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 마련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은, 그동안 생산비 보장을 못 받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형편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農地所有制度 문제 이전에, 우리 농민들이 못 살게 된 원인과 그 결과로서 나타난 부채문제의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農村經濟硏究院에서 농지제도만이라도 먼저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해결을 해 보자는 의도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부재지주의 형태를 보면, 經濟投資와 生活投資의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경제투자는 투기성 있는 복부인들의 경우이고, 생활투자는 농사로써 수지가 안맞아 임대한 공무원·회사인 등이 갖고 있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공장 비업무용 지구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재지주의 형태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읍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잘못 이용되면 악법이 될 수 있읍니다. 물론 악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소위 農地管理委員會가 그 책임을 맡는다고 되어 있읍니다만 그러나 그 악명 높은 투기자들이 역설적으로 보면, 오히려 일자리 없는 농민들에게 임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즉 도시근교에는 相對農地가 많고 호남지방에는 거의 완전히 絕對農地인데 相對農地의 가격은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絕對農地는 농지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사려는 사람도 별로 없읍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지가가 하락하는 경우, 부채농가의 부채 상환능력이

감소할 것이고, 자산으로서의 농지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익추구보다는 윤리나 도의적으로 임차관계가 유지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체제가 잘못 이용된다면, 여러가지의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즉 임차를 떼이고, 농지를 급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읍니다. 지금 대농들의 농지가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지가격이 하락될 경우, 특히 외부의 부재지주들이 합법을 가장한 비합법으로 농지를 매입할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2천억원의 구입자금으로는 도저히 농지가격을 조정할 수도 없읍니다. 또한 그 2천억원의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배정을 할 때, 잘못된 배정을 했다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말하자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읍니다. 또한 農地管理委員會의 문제에 있어서도, 잘못 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부재지주의 형태를 3가지 정도로 분류하여, 카드에 기재하고 법제화되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을 시행하길 바랍니다.

沈成澤(農地改良組合長) : 김성호 위원님이 설명하신 農地制度改善案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또 정부에서 발표한 農漁村綜合對策의 일환으로 나온 이번 農地制度改善案이 잘 실행된다면, 앞으로 우리 농촌도 잘 사는 농촌으로 발전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단히 반가운 말씀입니다.

自作農, 賃借農, 賃貸農 여러분들의 말씀을 다 들었읍니다. 아마 농사는 제가 제일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4만2천정보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自作農도, 賃借農도, 賃貸農도 다 찰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한데 제가 듣기에 거슬리는 것이 부재지주를 심리적으로 죄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등 그럴 이유가 없읍니다. 부재지주 중 일확천금으로 벼락부자가 된 경우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 동진 고을에는 그런 분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통계를 대충 따져 보니까 대부분 평균한 필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저 자기 식량이나 공급하고, 아들 딸들에게 식량공급해 주는 정도 또는 도시에서 월급생활 하면서 조금 임대하신 분

들, 이런 분들이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자료에서는 부재지주가 그런 식으로 언급되어 있는 듯하여 유감입니다.

耕者有田의 原則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경영능력에 따라서 소유규모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땅이라도 김제평야 지역에 있는 땅과 남원의 금지면에 있는 땅은 아주 다릅니다. 금지면의 예를 들면 이름은 논이지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읍니다. 한번은 논의 역할을 하고 또 한번은 밭의 역할을 하여 딸기재배로 일년이면 몇억씩 벌어 들이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논이라면 재산형성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문제는 농가부채와 농가소득 증대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 농촌이 빨리 부채에서 벗어나고 잘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종합대책의 목표입니다. 農地制度改善 문제도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 나름대로 임대농, 임차농, 자작농층에서 나오는 말씀을 몇가지로 대충 집약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로 봐서, 농지를 농민이 관리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땅을 갖고 있는 부재지주의 재산침해에 대한 우려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해서 그 충격을 완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賃借農의 위치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나 임차농의 폭이 좁아져 임차지 구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있었읍니다. 앞으로 해마다 2천억 가까운 융자금이 단시일내에 농촌으로 나온다면 농촌의 경기가 괄목할 만하게 발전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것은 물론 시행해 봐야 알겠지만, 2천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나온다면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2년거치 18년 상환이라면 償還能力의 문제가 나중에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그 다음에, 농정시책면에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은 農地管理委員會를 각 읍면마다 둔다고 했는데, 이 기능을 확대해서 기술적 측면, 즉 農業生産性提高를 위해서 農村指導의 기능도 점진적으로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농촌의 모든 분들이 다 잘 살수 있는 풍요로운 농촌이 되기를 바

라며 제 소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張東璽 : 모두 발표도 토론도 다 잘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다 짚고 넘어가서 제가 따로 특별히 말씀 드릴 것은 없읍니다. 다소의 중복을 무릅쓰고,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농지제도는 무엇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가.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것은 영국의 유명한 풍자경제학자인 아더 영(Arthur Young)이 표방하기를, "농지의 소유욕은 모래를 황금으로 만드는 마력을 갖고 있다"고 했읍니다. 결국 토지의 소유자와 이용자를 일치시켜야만 토지의 社會的 生産力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만일 토지를 가진 사람과 토지의 이용자가 일치되지 않으면 토지의 사회적 생산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 농지법도 소작을 금지하고 있읍니다. 저는 이것을 在村地主의 경우이건 不在地主의 경우이건 小作地는 다같이 금지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긴 것은 在村地主이거나 不在地主이거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폐단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작문제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地主는 힘이 강한 자고 小作人은 약자라는 것입니다. 약자와 강자 사이에는 정상적인 거래가 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지주의 일방적인 힘의 작용에 의해서 小作料率이 고율화되고 小作期間이 단기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在村地主의 경우와 不在地主의 경우를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在村地主의 경우가 不在地主 경우보다도 훨씬 더 小作料率이 높고, 小作期間도 훨씬 더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는 폐단은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소작료율이나 소작기간으로 볼때 재촌지주의 경우보다 부재지주의 경우가 더 악질적이라는 아무런 근거가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부재지주나 재촌지주나 다 같이 중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읍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결국 소작을 금하는 것이 현행 농지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적으로는 소작이 있게 되는가, 또 정부당국은 왜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가를 철저히 따져 봐야 됩니다. 즉,

소작을 주는 사람은 왜 소작을 주는 것이며, 남의 땅을 소작하는 사람은 왜 소작하는 것인가, 그리고 不法인 줄 알면서도 정부당국은 왜 이것을 묵인하고 있는가를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지방의 경우, 제가 몇해 전에 都市近郊地域, 平野地域, 山間地域에서 500호 농가를 표본조사하여 실태조사를 해본 바 있읍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재촌지주가 소작을 주는 이유는, 「농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작을 준다」 하는 것이 전체의 28%였읍니다. 그리고 장기질병, 노후, 미망인, 군입대, 어린 상속인 등등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소작을 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26%였읍니다. 소작을 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5%에 불과했읍니다. 또 不在地主의 경우는 어떠한가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량확보가 45%, 위토라는 것이 26%, 직업전환이 12%, 그리고 투기성이 6% 밖에 안되는 걸로 나왔읍니다.

아까의 주제발표와는 좀 다른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가 조사한 것은 농지를 농업목적으로 하는 것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작인이 왜 남의 땅을 경작하는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은 自耕能力에 비해서 자기가 가진 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땅을 빌리는 것이라는 자체타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당국은,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주고 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용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묵인하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결국 법은 있으나 지키지 않으면 죽은 법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농촌사회는 농지법에 관한 한 거의 無法社會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숨어서 또는 법망을 피해서 소작을 하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적어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고, 소작문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農村經濟硏究院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문제를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으로 오늘 이 공청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압니다.

저는 소작을 조건부로 인정하자고 일찍부터 주장해 온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즉, 지금까지 농사를 짓던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작을 준 경우, 이것은 법으로 인정해 주고, 그리고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경우도 법으로 인정해 주고, 다만 농민 아닌 사람이 신규의 땅을 사서 이것을 소작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철저히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른바 조건부 小作制度를 오랫동안 주장해 왔읍니다.

不在地主의 소작관계만 중대시할 게 아니라, 在村地主의 소작관계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부재지주의 성격이라는 것이 농지개혁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아까 주제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만에 하나라도 큰 마찰이 없도록 소작입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소작입법은 지주를 모두 기생지주로 몰아 죄악시하고, 그리고 소작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지주가 과거의 성격과는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직업을 바꾸기 위해 이농한 것도 부재지주라고 규정하여 똑같이 과거의 것처럼 죄악시한다면, 농업의 규모확대는 어려울 것이고, 小農生産樣式이 고착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재지주는 적어도 세 개의 유형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相續에 의한 경우, 離農으로 인한 경우, 그리고 新規農地購入에 의한 경우, 이 세 가지 입니다. 이 세 유형을 엄격히 구분하여 小作立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 마찰이 있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또 신규구입에 의한 소작은, 도시자본의 농촌침투를 막기 위해서도 엄격히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농이나 상속에 의한 경우는, 현재는 부재지주의 농지지만 곧 처분할 농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농지의 경우에 부재지주라고 해서 재촌지주의 경우보다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재촌지주보다 오히려 더 혜택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농하는 경우, 땅을 팔려는 사람에게 譲渡所得稅 같은 것은 면제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농하지 않은 재촌지주의 경우는 그 땅을 계속 소유하면서 영구히 소작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소작관계가 갖는 불합리성이 장기화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농이나 상속의 경우는, 빨리 농지를 팔고 떠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끝으로 첨가하고 싶은 것은, 혹자는 "현행농지법하에서도 부득이하게 소작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농지를 남에게 맡긴 경우도 정부가 묵인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구태어 법을 만들어서까지 이것을 인정해 줘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연구원 측에서 이미 자문자답을 하기도 했읍니다. 저도 이 문제에 관해서, 주체측의 기본안을 찬성하면서, 약간 부언하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현실적으로 소작이 묵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행법에 따라 그것을 금지한다면 몇가지 문제가 생겨납니다.

첫째, 자작을 가장한 소작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규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읍니다. 그 다음 이농을 간절히 원하는 농민도, 농지상실에 대한 불안감으로 감히 이농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호당 경지면적이 적어질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小農生産様式을 고착시키게 합니다. 小農生産様式이 고착화되면, 농업생산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농업소득이 낮아지게 되고, 농업소득이 낮으면 농촌은 빈곤할 수 밖에 없다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만일 정부에서 賃貸借管理法 즉 小作立法을 한다면, 첫째로 자작을 가장한 소작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死文化 현상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法網을 피한 소작은 그 불합리성이 새로운 입법에 의해서 그 조정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세째로 이농을 원하는 농민이 안심하고 농촌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농민이 더 많은 농지를 경작할

수 있어서 규모의 확대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지의 협소로 인해 나타나는 각종 소득의 문제, 생산력의 저하, 빈곤의 악순환 문제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컨대, 소작지의 약 21%에 해당하는 비농민의 특수한 토지구입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작지의 약 80%는 최악시할 수 없는 부재지주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들 선의의 토지소유자에게 큰 피해를 주지 말고, 경작유전의 원칙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타당한 농지제도의 구상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현재 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소작을 주는 지주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소작농으로 하여금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르는 자작농제를 구현시켜 보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만 부재지주를 최악시하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수정을 해 주신다면 더욱 전적으로 당국의 제안에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司 會 : 다음은 지금까지의 토론내용에 대해 金聖昊 研究委員께서 말씀해 주시겠읍니다.

金聖昊 : 감사합니다. 발표하신 것을 모두 받아들여 그대로 정리하여 앞으로 취할 조치에 성심성의껏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만 논의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어긋났다 싶은 점만 몇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전북대학교 柳鍾完 教授께서 말씀해 주신것 가운데, 遊休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농사짓는 척하며 平均收量도 못미치게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상당수 있읍니다. 도시 주변에는 그리고 공장 짓는다고 땅을 사서 팽개쳐 놓은 농토도 상당수 있읍니다. 이에 관해서는 현재 「농지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시장 군수가 일방적으로 代理耕作을 지명하는 법적 근거가 별도로 있읍니다. 그것으로 할 경우에 임차료도 10% 입니다. 그러니까 代理耕作은 쌍방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므로 임차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農地轉用에 관해서는, 기업체가 農地轉用을 할 경우에는 매년

수백억원의 農地轉用費用을 받아놓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는 간척지, 농지조성에 쓰고 있읍니다.

그리고 農地稅 문제는 지난번 서울 공청회때 바로 이 金堤에서 이기용씨가 올라오셔서 累進稅에 대해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저도 깜짝 놀랐읍니다. 課稅標準이 자꾸 높아지니까, 면세해줬다 해도 이것은 그림의 떡처럼 되어 버렸구나, 이것은 농지제도와는 직접 관계가 안되지만, 새로운 문제점으로 알고 앞으로 저도 깊이 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넓은 면적을 직접 갖고 임대하는 것보다,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 임대해 주면 현행 세제로 보면 農地稅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분산시켜서 임대한 돈은 면적이 적으니까, 감수해도 되고, 뭐 이러한 문제점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累進農地稅 관계는 저희 연구원에서도 한번 문제로 삼아 제기해 보겠읍니다. 지난번 減稅措置 했을 때도 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몇년 동안 연구를 했읍니다. 그랬다가 지난번 총선거 직전에 民正黨에서도 받아들여 이렇게 한 것인데, 그 결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아주 엉뚱한 데로 빗나가고 말았읍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林炯奎 선생께서 말씀해 주신 不在地主의 定義에는 여러가지 있읍니다만, 張東燮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재촌지주가 도시 부재지주보다 더 지독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경우 이거다 저거다 편파하는 것이 아니라, 在村地主든 뭐든 농촌에 살아서 그 돈이 농촌에 남게 되면 괜찮지 않은가, 그 돈이 도시로 빠져 나가는 것이 문제이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3정보의 폐지문제인데, 아마 여기가 平野地帶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3정보 이상 가지고 있다 해도 법적으로 절대로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소송을 걸어도 그것은 조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1974년도에 제가 農地局地政課長을 할 때 3정보 이상 가진 분을 農地改革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法務部에 有權解釋을 요청한 적이 있읍니다. 하니까 그것은 時限法이라서 처벌할수 없다는 것으로 그냥 끝났었읍니다.

그런데 앞으로 3정보 이상을 계속 매입할 수 있느냐, 여태까진 실제로 다 사셨읍니다. 사모님 이름으로도 사고, 아들이름 등 분산해서 사셨거든요.

농지 3정보 상한규제 때문에 못 샀다는 분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農地改革法 施行規則 52조에 의해서, 증명과정에서 그 사람의 農地所有規模가 몇 정보인가를 적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行政規制로서 여태까지 3정보 이상은 못사도록 한 것은 行政指導로 했던 것이지, 法的根據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농촌이 너무나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3정보 상한을 철폐한다면, 「죽는 놈 뒤통수 밝기다」하여 애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나아진다면, 일본이나 대만처럼 저절로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勞動力不足 때문에 기계는 꼭 필요합니다. 기계가 있으면 규모는 커져야 합니다. 이것은 필연의 원칙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3정보 상한폐지를 터놓고 얘기 못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농사 짓는 데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農地管理委員會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변할 것입니다. 농지제도는 자꾸 변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차농으로 계신 朴柳鉉 선생의 말씀은 심각한 얘기입니다.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이번 조치로 인해 전부 회수해 버린다면 이것이 惡法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봤을 때, 참 지금이야말로 國民大和合의 단계가 오지 않았느냐, 가진 분이 조금 양보하고, 이런 선의의 양보없이는 이런 것이 실제로 필요가 없읍니다. 이번 법은 그 내용으로 아시겠지만, 어느 쪽을 누르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점이야말로 농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가진 분이 조금 양보하시는 아량, 이것이 아니면 참 어려운 농사, 해결할 길이 없읍니다. 이 점이야말로 이번 조치의 가장 핵심이지 않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립니다.

一子相續制를 송선생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一子相續制가 농업경영의 논리로 보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속은 民法의 규정을 받는데 民法은 국제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입니다.

家라고 하는 것이 法概念의 단위가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民法主義, 個人中心主義로 보면, 一子相續制는 특권을 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 일본 등 모든 국가에서 몇 십년간 一子相續制를 추진하려다가 결국 民法의 個人主義 原則에 의해서 이것을 못했읍니다. 그대신 형제가 여럿일 경우 그 농지는 한 명에게 모두 물려주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농지장기자금이 나갑니다. 유산으로 땅을 모두 받은 사람이 다른 형제들에게 나간 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農地購入資金制度,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모순으로 안되는 一子相續制를 제도적으로 밀고 있는 것이 장기적인 농지구입자금인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러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株式農, 企業農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지금 企業農이 안되고 있는 것은 소유상한 때문이 아니라, 실제는 機械費用 등 다른 사정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그것만 잘되면 법이야 있건 없건 다 企業農이 될 수 있읍니다. 여태까지 도시에서 논쟁할 때는 소유상한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말씀하지만, 농사만 잘 되고 제값 받아 보십시요, 자꾸 커 나가니다. 이것은 농지제도의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기업농이 안되는 건 실제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農地改革 당시에 그 규모가 3정보 이내로 팍 줄어들었읍니다. 그랬다가 1967년까지 3정보 이상의 대농이 4만 1천호까지로 크게 증가되었읍니다. 그 당시의 대농은 머슴노동력으로 廣作을 했읍니다. 그런데 68년 이후 농촌인구가 줄어들 때 머슴층이 제일 먼저 빠져 나갔읍니다. 그리고 영세농층이 줄어드니까, 노동력이 부족하여 대농들이 자꾸 줄어들었읍니다. 요즘은 家族勞動力도 부족하여 기계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中農標準化, 즉 중농이 자꾸 많아집니다. 대농이 떨어져 나가고 소농층도 자꾸 빠져 나가고, 이 상태에서 이제 兩極分化의 단계가 와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일본이 지금 그렇습니다. 일본의 농가소득을 보면 中農層이 지금 소득이 제일 낮습니다. 小農層은 農外所得을 해서 소득이 높고, 大農層은 대규모 경작으로 소득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農漁村綜合對策에 의해서 농촌에 공장을 세

우고 하는 일들이 실은,10년 전, 20년 전에 되었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작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앞으로 農外所得이 증대되어야 농가소득이 올라갈 것입니다. 일본의 농외소득은 전농가 소득의 80%, 대만은 65%인데, 우리는 35%입니다.

농외소득이 아니면 우리는 농가소득을 높일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영세농가를 빨리 쫓아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상한제를 철폐했을 때, 이 정책에 대해 학계에서는, 영세농의 목을 쳐서 내쫓는다고 호된 비판을 했읍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것을 얘기했다가는 당장 몰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흘러가는 대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崔奎倫 선생님이 定額制와 定率制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제지역처럼 이렇게 기반조성이 된 경우는 定額制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定額制로 획일화시키면 기반조성이 안되어 있는 강원도 같은 곳은 곤란합니다. 수확량의 기복이 심해서 그곳은 定率制로 해야 됩니다. 定額制냐 定率制냐 하는 것은 앞으로 農地管理委員會에서 그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하도록 할 구상입니다.

金面長님께서 農地管理委員會에 관해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27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法定里는 몇개입니까?

金桂中 : 법으로는 7개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읍니다. 27개 분리로 되어 있고 조례로 제정된 분리가 27개입니다.

金聖昊 : 그런 점은 새로운 문제를 접한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연구하기로 하겠읍니다. 그리고 沈組合長님은 農地管理委員會가 단순한 농지의 소유관리 뿐아니라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일본의 농업위원회는, 식량을 매입하는 部落委員會, 農事普及委員會 그리고 農地委員會의 3개가 각 市·町·村별로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農業委員會는 이것이 통폐합된 것으로서 농촌의 지도사업을 관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읍·면 단위로 지도소가 따로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農業委員會가 모든 농촌의 행정에 관련된 기초기관입니다.

이농자의 보호, 이것은 다시 한번 장선생님 지적하신 것을 재고해 보겠읍니다.

地價下落問題, 이것은 참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조치가 4개 조치인데 그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地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賃貸借法이라지만, 이 법에 의해서 地價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非農民所有農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점부터 그 영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네 가지 조치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정책적으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조치를 했다고, 일시에 비농민 소유지가 매각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이나 대만이 地價를 묶으려고 엄청난 조치를 취했어도 地價를 잡지 못했읍니다. 특히 蔣介石씨가 대만의 土地法을 만들었는데, 중국 대륙에서 쫓겨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毛澤東의 토지정책 때문에 진 것이라는 생각이었읍니다. 역대 明·淸 등의 왕조때 地價를 조사해 봤더니, 나라가 망할 즈음엔 항상 땅값이 뛰었답니다. 그래서 蔣介石씨가 대만에 와서는 地權均等主義라는 것을 실시했읍니다. 地價에 대해 매년 公正價格을 고시하고 올라간 만큼 100% 課稅를 했읍니다.

그랬어도 暗地價로 거래되고, 대만정부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정도로 묶어놓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답니다. 地價라는 것은 함부로 잡혀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 우려하실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不在地主를 죄악시한다고 하셨는데, 서울공청회 때는 이것이 문제가 안되었읍니다. 서울에서는 不在地主, 非農民所有農地를 좋게만 쓰면, 신문에서 금방 호된 비판을 합니다. 耕者有田 原則을 무시한다는 식으로 신문 등에서 엄청난 비판을 가하면, 그동안 몇 년 연구했던 것이 헛된 것이 되어 버립니다.

여론을 의식해서 쓴 것이지, 실제 내용을 보시면 조금 차등과세 한다는

은, 非農民所有農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시점부터 그 영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네 가지 조치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정책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조치를 했다고, 일시에 비농민 소유지가 매각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읍니다.

그리고 실제 일본이나 대만이 地價를 묶으려고 엄청난 조치를 취했어도 地價를 잡지 못했읍니다. 특히 蔣介石씨가 대만의 土地法을 만들었는데, 중국 대륙에서 쫓겨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毛澤東의 토지정책 때문에 진 것이라는 생각이었읍니다. 역대 明·淸등의 왕조때 地價를 조사해 봤더니, 나라가 망할 즈음엔 항상 땅값이 뛰었답니다. 그래서 蔣介石씨가 대만에 와서는 地權均等主義라는 것을 실시했읍니다. 地價에 대해 매년 公正價格을 고시하고 올라간 만큼 100% 課稅를 했읍니다.

그랬어도 暗地價로 거래되고, 대만정부에서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정도로 묶어놓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답니다. 地價라는 것은 함부로 잡혀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 우려하실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不在地主를 죄악시한다고 하셨는데, 서울공청회 때는 이것이 문제가 안되었읍니다. 서울에서는 不在地主, 非農民所有農地를 좋게만 쓰면, 신문에서 금방 호된 비판을 합니다. 耕者有田 原則을 무시한다는 식으로 신문 등에서 엄청난 비판을 가하면, 그동안 몇년 연구했던 것이 헛된 것이 되어 버립니다.

여론을 의식해서 쓴 것이지, 실제 내용을 보시면 조금 차등과세한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양쪽 다 좋게 한 것이고, 그 표현상의 문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司 會 : 李官範 農水產部 農漁村開發局長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李官範 (農水產部 農漁村開發局長) : 약 다섯시간에 걸쳐서 진지한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공청회는 서울공청회대로 의의가 있었지만, 지방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金堤에 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오히려 더 생생하고, 서울공청회에서 못들은 얘기도 많이 나왔읍니다. 같은 얘기라도 실제 농사를 짓고, 또 서로 주고 받고 다른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니 참으로 생동감 있고 참다운 소리를 저희들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좋은 말씀은 법제정이나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고, 이 법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만의 하나라도 잘한다고 한 것이 절대로 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세밀한 주의를 하여 국민 각자, 여러분 각자 각층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더 종합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더더우기, 전북대학의 유 교수님과 전남대학의 장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셨고, 해박한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公聽會 준비에 힘써 주신 郡守님 이하 金堤郡廳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Ⅱ. 慶北 尙州郡 公聽會

가. 開催日時 및 場所

日時 : 1986.9.26 오전 10 시

場所 : 상주군청 회의실

나. 討論參加者 및 參席者

主題發表 : 金聖昊 (韓國農村經濟硏究院 硏究委員)

討 論 者 :

〈學 界〉 金祥基 (慶北大 敎授)

金厚根 (慶尙大 敎授)

〈團 體〉 김영배 (외남면장)

김용해 (단위농협장)

김명근 (농지개량조합장)

〈自作農〉 성석제 (내서면 능암리)

오임환 (외서면 가곡리)

김시영 (공검면 예주리)

〈賃借農〉 이종대 (사벌면 원흥 3 리)

김동배 (낙동면 신상리)

배세춘 (청리면 원장리)

박초식 (공성면 금계리)

〈賃貸人〉 박종훈 (함창읍 구향리)

박용찬 (사벌면 원흥리)

신택호 (낙동면 장곡리)

〈參席者〉 權正鉉 (農水産部 農地課長)

박경훈 (慶尙北道 農地課長)
김주동 (尙州郡 副郡守)
피규섭 (尙州郡 農產課長)

다. 討議內容

司 會 (尙州郡 農產課長) : 金聖昊 委員께서 발표하신 內容과 관련해서 慶北大 金祥基 교수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십시오.

金祥基 (慶北大 教授) : 이 문제는, 제 개인생각으로도, 언젠가는 한번 파헤쳐져야 하고,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발표에서 익히 들어왔던 것처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개선방안이 정부측이나 정당에서, 또는 학계에서 자주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현재 문제삼고 있는 農地뿐만 아니고, 약 63%에 해당하는 전국의 임야, 해안 도서지방에 있는 작은 섬들도 첨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농지의 소유관계, 그리고 임대차문제는 국토의 종합적·합리적인 측면에서도 꼭 논의가 되었어야만 하고, 또 立法的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이 입법시행 과정에서, 만인에게 전부 만족할만한 것이 될 수는 없으나, 그런대로 다소 지역의 특성이나 개별 부재지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는 과정에서, 장래 경지는 농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小作料率이 20%냐, 30%냐 오늘도 얘기가 많이 나왔읍니다만, 절대로 입법조치로써 세부적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地價의 몇 배의 賃貸料를 낼 수 있는 곳도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도 땅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어쓰는 사람이나 피차의 필요로 관례대로 동의하고 있는데, 구태여 몇 %라고 정하는 것이 우습다고 상당한 분들이 반박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얘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기준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구체적인 율은 지역의 실정에 맡겨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 賃借農은 아주 零細農이나 小農層이 아니라 中農層이 임차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기왕에 농사를 지을 바에야 규모를 확대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필코 확대를 시켜줘야 되겠는데, 문제는 임차의 경우에, 임차지나 임대지의 면적에 상한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얘기는 별로 언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기계화나 능률적인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를 하든 자기 논을 사든간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농지개혁법의 분배상한선이 3정보라는 것도 반드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연히 임차의 한계와 직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賃貸借法을 만드시더라도 賃借地의 限界는 없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제도와 방침, 정책을 막론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읍니다. 이 제도를 거부한다거나 배제하는 의미는 아니나, 다만, 현재 우리 농어촌의 여건으로 봐서 과연 자율적으로 農地管理委員會가 운영 및 구성되고, 제대로 집행될 것이냐에 약간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좀더 정부차원이든 지방자치단체건간에, 훈련을 시키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식으로든 완벽한 農地委員會를 구축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은, 農村, 農業, 農民을 농민 스스로 비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농민이 긍지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향후의 정책방향은 소농, 중농, 대농을 기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기계화가 간접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저는 임대차관리법만 만들어서는 농지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相續法, 戶籍法도 거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一子相續이 아닌 多子相續을 그대로 두고는, 유산으로 갈라준 땅을 부재지주다, 내놔라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賃貸借管理法案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완적으로 相續法, 戶籍法도 고쳐져야만 이것이 합리적인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성석제 (自作農) : 제가 겪어본 바, 있는 그대로의 실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農地購入資金을 지원해 주신다는데, 이 자금이 어떻게 대여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농촌의 실정을 보면, 영세농가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농지구입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금융기관에서 담보없이는 해 주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영세농가로서 그 토지를 구입한다고 해도 갚을 능력이 없어, 보증인조차 없읍니다. 그러니 이 자금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중농이나 대농에게 그 혜택이 갈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이 점을 감안해서 법을 정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점을 배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비농민의 농지매입에 대한 규제는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실정으로는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보내 준 것이면 몰라도 농가 자체의 소득원으로는 토지를 구입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객지에서 사는 것을 규제한다 하면, 아무래도 토지값이 내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교육비, 부채관계 등의 해결은 어떻게 하겠읍니까.이런 점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종대 (賃借農) : 저는 수년간 농촌에서 살아 왔읍니다. 노동력도 있고 영농규모를 더 확대하고 싶어도, 농지가 없어서 더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1,000 평 정도를 경작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저는 자녀교육문제, 부채관계, 생계유지등 여러가지 부담이 있어서 농지를 매각 처분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읍니다. 이러한 영세농가를 정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제 입장에서 무척 걱정이 됩니다.

박종훈 (賃貸人) : 저는 지난 3월 5 일자 정부의 農漁村綜合 對策이 발표되어 이에 따른 일환으로 農地賃貸料率의 上限線이 설정된다하니, 장래적인 국가안목에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에서는 아직도 農地賃貸借가 관행에 의하여,일년간 구두계약, 반갈림으로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이런 반면에 노동력의 부족현상과 도시취업으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좀더 세심히 연구하여 지역적인 여건에 맞추어, 賃貸料率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읍니다.

김명근(농지개량조합장) :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농민들에게 농토를 돌려준다는 것이 우리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번의 제도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많은 자료의 수집과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그간 농민들에게서 들은 몇 가지 여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이번 조치를 잘 모르고 있읍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신문을 별로 안보고, 또 T.V는 보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없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실상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T.V등으로 홍보를 잘해 주시면 훨씬 좋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貸出限度額에 대한 문제가 농민들간에 거론됩니다. 신문에 보면 3천평에 1,500만원 정도의 대출을 해주고 2년거치 18년 상환, 5% 年利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평당 6,550원짜리 땅을 사는데는 1,996 만 5천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빌려주는 것은 그중 약 80%로써 1,570만원을 빌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 399만 원이 농민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상주군의 모든 생산, 投資費를 조사해서 분석해 본 결과 반당 純收入이 약 21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을 해 보니까 역시 9년째 가서야 비로소 18만6천원 정도의 수입이 생김과 동시에 자기땅의 재산이 900만원 정도 조성됩니다. 다행스럽게 土地價格이 6~7천원 정도라면 어느정도 맞습니다만, 지금 저희 구역내에는 최고는 15,000원 하는 곳도 있고 최하는 5,000원 하는 곳도 있읍니다. 그래서 조금 土地價格이 높은 곳은, 이번 조치로 조금 내린다 해도 1만원은 넘으리라 생각됩니다. 1만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 현기준으로 보면, 45년이 지나

야 이익이 나오고 땅은 땅대로 남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보더라도 농지 구입자금의 이자는 연리 3%로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어느정도 근거가 있을 것이고, 대출은 지역특성을 살려서 좀더 신축성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농민들은 財産稅, 相續稅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相續稅와 贈與稅는 一子女 家口만 면제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아들이 둘이상 되고, 자신의 경작규모가 커서 나누어 줄 수도 있는데도 면제가 못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賃貸料率도 사실상 여기는 현재 반당 9만원~10만원정도입니다. 그것을 쌀로 따진다면 80㎏ 1가마반 정도가 됩니다. 임대료는 쌍방 보호책을 강구하고, 그 지역의 작물의 재배, 또는 그 지역의 생산성 등을 감안해서 신축성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오임환(자작농) :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9,000평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12,000평, 15,000평 등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을 차등을 두어 좀더 많이 부과를 하면 좋겠는데, 다만 같은 9,000평이라도 김제같은 지역에서는 별로 크지 않아도, 여기서는 무척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6,000평이상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貧益貧 富益富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농민의 매입농지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로 했다는데, 매입은 앞으로 절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현재 이미 매입한 것은, 귀찮아서라도 팔도록, 重課稅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토지가 농민들에게 자동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賃借料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내용적 지주가 60~70% 차지합니다. 소작료로 30~40%만 지불해야 되는데도 정반대가 되고 있읍니다. 이것이 완전히 법제화되더라도 뒷거래가 없도록 강력한 賃借人이 30~40%만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따져보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무척 많습니다. 법적으로 임차인이 50% 이상은 줄 수 없도록 강력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입니다.

農地購入資金支援은, 이왕 주려면 좀더 확실하게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과 다른 사람의 여론도 들어보면 償還期間도 20～25년은 되어야 하고, 정부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利子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농민만이 농지를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임차농) : 저는 농지가 농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데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 역시 남의 땅을 부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만 제가 농사를 짓는 실정으로 봐서는 總收益의 25%밖에 소득을 얻을 수 없읍니다. 그 이유는 지주에게 주고 남은 나머지가 25%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이 잘 살 수 있는가 생각해 본 결과, 정부에서 農地購入資金을 年5%에 18년 상환보다는 좀더 長期低利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금지원을 5%, 18년 상환으로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營農資金 기타 등등 농가지출이 많아서, 부담이 됩니다. 이것을 2～3%로 해서 30년이상 장기상환을 해야만, 농민이 농지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零細農民은 누가 保證을 서겠는가 하고 걱정하신 분도 있지만, 여유가 있는 분에게는 매입토지를 저당해서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농민이 잘 살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이 격차가 없도록 하려면 우선적으로 農產物 價格이 정상궤도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값을 받을 수 있어야 농민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농민이 잘 살려면 남의 땅으로 농사짓지 말고 自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참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해(단위농협장) : 우선 여기 계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농민도 자기의 직업의식을 갖고, 떳떳한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다 부유한 것은 아닙니다. 농촌에도 얼마든지 잘 사시는 분들도 있읍니다. 또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農地制度改善도 이 農業問題의 일환으로 거론될 수 있어서, 저는 농업문제 전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귀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평소에 주장해 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기득권을 갖는 비농민의 소유지는 사유재산으로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만, 앞으로는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의 문제는, 실제 농촌 일선지도기관이 산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하는 일, 또 農村振興廳 산하의 指導所에서 하는 일, 그리고 농협의 영농부 또는 경제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중첩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農地管理委員會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을 좀더 보완하고 연구해서, 농민을 지도하는 기관을 통합했으면 합니다. 어떤 통합적인 제도적 기구가 마련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農地規制에는 전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山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이북지역의 山地는 거의 대부분 서울 사람의 소유이고, 현재 서울 사람들이 경상도 지역까지 침투를 하고 있다고 들었읍니다. 따라서 山地에 대해서도 농지와 마찬가지로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農地管理委員會의 운영은, 제도적인 장치보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행을 해보지 않고는, 당장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확실치는 않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農地管理委員會나 農協에 信託營農을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는 거의 생소한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해할만한 충분한 연구지침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영(자작농) : 農村經濟硏究院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만, 우선 賃借料率에 관해서는, 이 지방실정으로 봐서는 20%, 30%는 좀 낮은

감이 듭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자료를 보니, 地方農地管理委員會에 맡겨서 한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지방실정에 맞게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農地管理委員會를 조직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시범지구를 설정해서 한다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各 道에 따라서 실정이 좀 다르므로 各 道에 一個面씩 선정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農地購入資金問題는 제 생각으로도, 支援條件에서 金利를 좀 낮추고 償還期間을 길게 해야 농민이 자기 농지를 살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기계화되고, 경영규모가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농지가 상속에 의해 영세화되고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인해 농지가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택호(임대인) :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비닐하우스가 많이 번창을 해서, 小作料를 50 % 내지 60 %도 주는 일이 있읍니다.

稻作에 대해서는 약 30 %~ 40 % 주는 곳도 있읍니다.

그런데 농민이 자기 땅을 경작하지 않고 남의 땅으로 할 경우, 土地改良을 거의 하지 않아서, 토양이 酸性化되고 있읍니다.

자기 농토가 아니니까, 客土, 堆肥도 안하고 金肥만 주다 보니까, 지력이 떨어져서 수확물의 질도 나빠집니다. 따라서 자기 농토가 되면, 객토나 퇴비를 할 것이므로 땅의 지력이 향상되어, 전체 수확량도 나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배세춘(임차농) : 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농지소유개선방향에 관해서 상세한 말씀을 들었고, 또 앞에서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 말씀들과 같은 생각이므로, 더 부과해서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김영배 (외남면장) : 저는 일선의 행정실무자로서, 邑·面農地管理委員會의 구성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김용해씨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읍·면단위의 농업의 기관들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한 가지인데, 여러 기관에서 각기 지도를 하다보니, 다소 농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시정했으면 좋겠고, 다음은 아직까지 불분명한 農家의 定義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명문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金厚根(慶尙大 教授) : 앞에서 전부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 案을 보면, 賃借料率을 한 30 %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임차료는 農地用役의 供給과 需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일 임차료를 30 %로 고정시킨다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대개 50 % 정도인데, 농지용역의 초과수요가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陰性賃貸借가 생겨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 다음에 在村地主의 땅을 인정하더라도, 만일 임차료가 30 % 정도로 낮다면 賃貸地를 회수해서 그 지주들이 조방적으로 땅을 경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임대를 하는 농가를 보면, 고령자가 약 50 % 이상 되는데, 또 이것은 경영규모를 축소하고, 農業機械化를 저해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自營農家는 雇地農이 되어 작업별로 고지를 주어, 고지농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읍니다. 따라서 만일 임차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나 고정을 시키기보다는 정부에서는 농촌에 農外就業의 기회를 확대해서, 자율적으로 임차료가 하락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또 아니면 타작 또는 모내기 등 작업별 가격보장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락의 農地管理委員會에서 그걸 정한다 하지만, 아마 실제로는 이해관계가 전부 얽혀 있는 것이라 군수 이하 관리위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으리라고 예상되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임차료를 農地管理委員會에서 몇%로 정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만일 不在地主의 토지를 구입한다고 할 경우, 지금 현재 그 땅을 임차하고 있는 사람에게 優先權을 줄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길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부분 농가는 부채가 많고 구입할 능력이 없으므로, 결국 땅은 대지주들이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대농, 소농의 격차가 더 벌어져 농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물론 대규모 지주들이 땅을 사서 규모를 확대하고 기계화하는 것이 大經營으로 육성되는데는 이바지할지 모르나 小農階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오히려 더 빈곤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여기 계신분들 모두가 다 찬성을 하신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

司 會 : 이상으로 討論者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봤읍니다. 끝으로 金聖昊 委員의 보충설명과 답변을 듣겠읍니다.

金聖昊(韓國農村經濟硏究院 硏究委員) :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읍니다.

말씀하신 것을 전부 충분히 수렴해서, 또 저희가 건의서를 첨가하여 농수산부 장관에게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충하고 싶은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경북대학의 김상기 교수님과 김용해 선생님이 말씀하신 林野問題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農村經濟硏究院에서 충북 몇개 邑·面과 강원도 홍천 아주 산간지대를 조사했었는데, 그 일대 山地마저도 거의 40% 정도가 서울사람에게로 넘어 갔읍니다. 그러니까 부락 뒤의 소라도 먹일 만한 좋은 산지는 다 넘어 갔읍니다. 부락에서는 그것을 이용도 못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이것은 청와대의 특별지시로, 연구원도 참여해서 山地問題에 대해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山地問題를 다룬다 해도 改革은 없을 것

입니다. 分益契約制度, 즉 所有者와 利用者가 收益制로 나눈다거나,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는 세금을 높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현재 구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다음은 賃借農의 3정보 上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현재 임차제에 관해서는 上限이 없읍니다. 그런데 상한이 없다면 대농이 많이 생길 것이 아니냐는 문제인데, 김제지역의 경우를 보면, 현재 10정보 정도의 농사를 직영하려면 대략 4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4천만원으로 10정보 갖느니, 은행에 넣어 이자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의 공청회에 나오신 분 중에서도 10여정보씩 가지신 대지주들도 계셨는데, 그중 자경하는 것은 2~3정보일 뿐 나머지는 다 임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농을 하면 유리하다고 하지만 실은 조금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農地改革 당시에는 3정보 이상 농가가 2천호였읍니다. 그후 1967년까지 3정보이상의 大農層이 급속히 증가해 大農層이 41,000호까지 올라갔읍니다. 그 당시 농지개혁이후 왜 대농층이 늘어났는가 하면 머슴이 많고, 노동력이 많으므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68年부터 전체 농가호수는 줄어들기 시작했읍니다. 제일 먼저 빠져 나간 것이 머슴층이고, 하층농가가 빠져 나가니까 노동력이 부족되어 대농의 경우 규모를 줄이고, 임대하여 자꾸 줄어들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23,000호 정도로 줄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 대농하려고 기계를 샀다가는 기계값을 상환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한때에 한필지, 두필지 팔고하여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大農이 증가되어야 농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大農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이 제일 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3정보 상한이 있기 때문에 대농의 발생이 규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3정보 이상을 아들 이름이나 부인 이름 등으로라도 살 수 있읍니다.

경영이 안되고 수지가 안맞으니까 못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든 정부정책을 해서 대농이 클 수 있는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의 農地制度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소유상한을 제한은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農地改革法에도 이것이 없읍니다. 農地改革法施行令에도 법적근거가 없읍니다. 農地改革法施行規則 52조를 보면, 農地賣買所有證明에 필요한 것으로 각 邑·面長이 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면 이것은 저절로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정부가 상한을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어려운 농민이 무척 많으니까 이것까지 풀어봤다고 하면, 있는 사람만 살고 없는 사람은 죽느냐고 문제가 될까봐 그냥 엉거주춤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 단계까지만 규제하는 잠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성석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영세농의 擔保能力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농지를 사게 되면 구입한 농지가 담보가 되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농가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융자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정부측이나 연구원에서 깊이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中農層 이하를 주대상으로 하며, 중농층 이상은 해당이 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순위가 높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또 農地管理委員會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충분한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종대 선생님이 말씀하신 영세농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척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도기적인 상태이므로, 이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참고 넘기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로서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종훈 선생님이 適正料率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지역 같으면, 말씀을 들어보니 논의 경우 35%가 적정한 수준이 아니냐고 하셨읍니다.

그런데 각 지역별로 토지의 需要, 供給이 전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각 도별, 전국 평균치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農地管理委員會에서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農地改良組合長님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농지매입자금 말씀은 다른 분들도 많이 거론하셨읍니다.

김제지역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3정보 상한을 완화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 여기서는 農地購入資金 말씀이 주로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지역이 自作農層이 가장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건실한 농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로서는 지역에 따라 논의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구입자금에 관한 의견말씀은 저희들이 돌아가는 대로 최대한 능력껏 노력을 해보겠읍니다.

相續制에 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독일등 유럽 각국이나 일본이 一子相續制를 法制化하려고 해도 결국 못하고 있읍니다.

分割相續制를 하면 농지가 자꾸 분할되어 영세화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소유의 기본법은 民法입니다. 民法이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一子相續制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농지매입자금입니다. 형제가 많을 경우 한명이 농지를 일괄 상속하고 다른 형제들 한테는 정부가 싼 이자의 융자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융자로써 一子相續制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農地買入資金이 법제화가 되어야만 一子相續制가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이 자금조치로 이것을 해 나가려는 것이 지금 기본구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오임환 선생님께서는 自作農이시면서도 요율에 관해서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읍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실제 料率은 전국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랜시일이 지나면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꺼번에 요율을 정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심할 것이며, 현실에 맞도록 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구상입니다.

그리고 김동배 선생님도 역시 농지매입자금에 관해 여러가지 염려를 해 주셨고, 직접 관련은 안되지만 農產物 價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읍니다. 農產物 價格이 제대로 되려면, 제생각으로는 농협이 민주화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것은, 재배면적의 진폭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급한대로 수입을 해서 메꾸겠다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적정면적을 재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전국 수요량이 얼마고, 우리군 어느면에서는 얼마만큼만 심자고 서로 타협해 나가는 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농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협은 지금까지 下向式이었읍니다. 앞으로 점점 민주화되어 나가고, 서로 부락간 재배면적을 타협해 나가고 豊凶의 경우 정부가 農產物價格安定基金으로 조절해 나간다면, 가격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農產物價格 安定問題도 결국 農村民主化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農協이 民主化되어야 하고, 農地管理委員會가 민주적으로 실행되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 농업정책은 제도적인 기초가 안되면 움직여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농협의 김용해 조합장님께서도 교육등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시골에서 어렵게 대학까지 공부시켰어도, 서울에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농업은 가족제도가 연속되어야만 농지가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건실한 농촌의 젊은 역군을 키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 농토를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 국가를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시려는 사명감이,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넘은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시영 선생님이 農地管理委員會 示範地區를 3개면에 실시하기보다는 각도에서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실은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농지과장님이 그 자금을 대 줘야 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십시오.

신택호 선생님께서는 땅의 地力을 무척 걱정하셨읍니다. 지금 金肥,農藥을 많이 써서는 우리 먹는 음식이 큰일 입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결국 지력을 안정시키고 堆肥를 내야 하는데, 賃貸借法의 중요한 것의 하나가 최소한의 賃貸期間을 보장하여 땅의 지력증진에 노력하도록 하는 데도 있읍니다.

김영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農地管理委員會 실시에 있어서, 農家의 定義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농가로 할 건인가 하는 것은, 여러가지 형태가 다양하므로 앞으로 세부적인 施行令으로 나갈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農外就業을 하더라도 그동안 계속 농사를 지어 왔고 농토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분을 農家로 전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평 안되는 농토만 갖고 매달려 있어 봤자 소득올릴 길이 없읍니다. 農外所得이 올라야 합니다. 일본 농가가 잘 사는 것은 農外所得이 80%나 되기 때문입니다. 대만이 65%, 우리나라는 35%입니다. 앞으로 農外所得을 권장하기 위해서도 비농업에 종사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는 農家의 定義속에 넣어서 보호하려고 합니다.

농촌에 살면 되도록 보호하겠다는 것이 국가의 대전제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대학의 김후근 교수님이 획일적으로 賃借率을 30%로 규제는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심사숙고 하겠읍니다. 또 한가지 기반조성이 넓게 잘 되어 있는 김제지역의 경우는 定額制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 왔었읍니다.

그러니까 논 한마지기에 쌀 한가마나, 두가마 이런 식으로 정하지 무슨 料率로 하느냐는 말씀이 많았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水利基盤이 안정되어 매년 일정량이 생산될 때 定額制가 필요하지, 이런 山谷은 기상에 따라 收量이 바뀌기 때문에 定額制 보다는 定率制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定額制나 定率制는 획일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農地管理委員會에서 정하실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리고 끝으로 農地購入資金이 오히려 좀 여유있는 분에게 돌아가서 富益富 貧益貧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신 말씀은 기우라고 여겨집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중농이하로, 땅이 너무나 적다든지 하는 경우에 자금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의 제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일단은 법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그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화의하고 타협해서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입

니다. 농민을 위한 농촌이라는 것은 농민 스스로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율농촌이라는 것 역시 농민이 주체로, 정부는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農地制度의 기초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司 會 : 마지막으로 농수산부 농지과장님으로부터 농지행정에 관한 말씀을 듣겠읍니다.

權正鉉(農水產部 農地課長) :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대부분 가장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농민의 收容能力과 적극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는 購入資金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뒷바침이 필요하겠지만 이 두 가지가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農政은,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모든 국민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農地制度도 농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收容能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農地管理委員會가 운영의 주체가 되고 그 기능이 정상화되어야만 이 법이 잘 운영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정부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만을 정하고, 各邑·面管理委員會에서 스스로 정하고, 분쟁이 났을 경우 조정과 화해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즉, 賃貸借關係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投機性 부재지주로 하여금 농지를 못사게 하는 것 역시 주민 스스로 관리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힘으로는, 세세히 간섭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農地管理委員會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읍니다.

그 다음 두번째, 農地購入資金의 規模와 融資對象은 農水產部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그러나 현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한계상황이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상황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시한번 토론에 참가하신 여러분과 공청회 준비에 애쓰신 상주군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司 會 : 그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진지하게 발표하시고 토론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주지구 농지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전부 마치겠읍니다.

Ⅲ. 全南 求禮郡 座談會

가. 開催日時 및 場所

日　時 : 1986. 9.24　오후 1 시

場　所 : 郡廳 會議室

나. 討論參加者 및 參席者

資料說明 :	全敬植	(韓國農村經濟硏究院)
討論者		
〈團　體〉	한영덕	(농지개량조합장)
	서선봉	(단위농협장)
〈自作農〉	권우식	(광의면 지천리)
	박영무	(토지면 오미리 27)
	이세호	(용방면 중방리 223)
	이강주	(산동면 내산리 654)
	장영일	(마산면 광평리 337)
〈賃借農〉	고상선	(마산면 냉천리 511)
	박사암	(산동면 계천리)
	오경열	(간전면 수평리)
	장춘호	(문척면 월전리 661)
	정희일	(구례읍 봉서리)
〈賃貸人〉	김규채	(구례읍 봉남리 250)
	류형선	(토지면 오미리 27)
	최기호	(광의면 온당리)

〈參席者〉 李官範 (農水產部 農漁村開發局長)
신채우 (全羅南道 農林局長)
金明東 (求禮郡 郡守)
최태범 (求禮郡 產業課長)

다. 討議內容

全敬植(韓國農村經濟硏究院) :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農地制度改善에 관한 主題發表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資料說明 省略)

全敬植 : 먼저 지금까지의 資料說明 內容 가운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질문해 주시고,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선봉(단위농협장) : 제가 먼저 질문하겠읍니다. 農地購入資金支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토는 농민이 경작할 수 있도록, 영농의 위협을 막고 또는 이농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인 對策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따라서 이왕 정부에서 案을 잡고 있으므로 50% 補助에다 50% 融資, 2년 거치 18년 상환에 이율 5%인 저리자금을 바라고 싶습니다. 만일 국가의 재정상 보조가 허락치 않을 경우에는 저리자금인 3.5% 이율로 융자해 주기 바랍니다.

만일 융자가 될 경우 그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의문이고, 또 高齡貧貸農이나 非農民이 일시적으로 매각을 하여, 농지 가격의 下落이 초래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경식 : 지금 말씀하신 농지구입자금에 대해서는, 보조는 國家財政上 어렵고 저리융자는 가능합니다. 지금 계획은 2년 거치 18년 상환, 연리는 5% 정도입니다.

그 대상자는 농촌에 남아 농사를 짓겠다는, 농토가 협소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해드릴 것입니다.

정희일(임차농) : 구례읍에 사는 정희일입니다. 저는 賃借農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일년간을 계약해서 임차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다보니 地力增進을 위한 퇴비를 못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賃借期間을 3년이나 5년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경식 : 그래서 저희 案에는 임차기간을 윤작이나 원예작물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상을 원칙으로 삼고, 3년이상 되어 쌍방간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임차를 해 나가도록 정하고 있읍니다.

김규채(임대인) : 구례읍에 사는 김규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地主의 입장에서 볼 때, 임차농이 퇴분도 넣지 않는 등 地力增進에 게을리하는데 그에 대한 法的措置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경식 : 地力增進이나 임차인에 대한 制裁方法을 말씀하셨는데,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文書契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문서로 계약에는 계약조항에 모두 자세히 나와 있읍니다.

김규채 : 임차료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李官範(農水產部 農漁村開發局長) :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賃借料를 너무 과하게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강하게만 정하면, 實效性이 없고 副作用이 생기지 않을까 하여 획일적으로 강력하게 정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해당사자끼리의 충분한 토의를 거쳐 合議하고 그것을 農地管理委員會를 거쳐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지켜 줄 것입니다.

고상선(임차농) : 임대차관리법안의 근본이 賃借農을 보호해 준다는 원칙은 좋습니다. 그런데 구례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령 저처럼 오이를 재배한 농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이는 한번 재배하면 윤작을 합니다. 비단 구례 지방뿐만 아니라 광산·남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 많으니까 논을 임차하려고 애쓰는데 賃貸料가 낮아지면 논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임차농을 보호한다는 법원칙은 좋지만 實質的으로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정부측에서는 이런 문제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李官範: 그래서 임차료에 대해서는 대략 두 가지 방법으로 構想을 하고 있읍니다.

上限을 정하는 방법으로 그 이상을 받지 말도록 하는 것과, 上下限의 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안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벼농사는 上限制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원예, 비닐하우스는 어느 基準을 정해서 융통성이 있도록 하려고 구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作目에 따라서 상한제 또는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최태범(산업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국장님도 上限線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보고 있읍니다. 실은 농지제도개선 좌담회를 한다고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資料를 입수했는데, 좋은 자료가 많이 나왔읍니다.

저희 구례는 크게 네 가지로 임대, 임차를 하고 있읍니다. 저도 4년이상 산업과장을 하면서 처음 느꼈읍니다만, 맨 먼저 하우스 재배 농가가 임차를 하는 경우 200평당 평균 벼 6가마를 받았어요.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많이 나와야 200평당 9가마 또는 8가마 나오는데 6가마를 받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봅니다. 두번째는 뭇갈림 제도라는 것입니다. 100짐 수확이 되면 50짐씩 딱 갈라 버립니다. 그것도 耕作者가 管理費를 부담하므로 지주가 63.5%의 소득을 취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세번째로 구례지방에는 선제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쌀을 도지로 미리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평야지, 중간지, 산간지, 읍면별로 類型이 다릅니다. 산간으로 갈수록 적게 받고 읍면지역에는 많이 받고, 심지어 많이 받는 곳은 평야지대에는 쌀을 3가마씩 받아요. 다음은 또 3분병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2/3는 지주가 가져가고, 1/3은 소작인 차지인데, 지주가 2/3 가져가는 대신 비료값이나 농약대, 관리비 일부를 지주가 부담하고, 세금도 農地稅나 農事改良費는 지주가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작은 구례에서도 산간지, 중간지, 평야지로 나뉘어 가지각색의 임차율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上限線과 下限線을 미리 정해야지 그렇지 않고 시·군 조례로 위임하게 되면 임대차관리법 제도 자체의 정신을 살려 나가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경식: 上限線의 범위내에서, 각 지역의 與件이라든가 재배 작물,일반 미맥 등에 따라 그 범위내에서 정할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일년 정도를 試驗期間으로 두어 실제로 農管委에서 실행해 보고, 다시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 제일 어려운 것이 賃貸料率이나 上下限線 문제인데요. 그것은 적어도 생산고를 감안하고, 이 자리에서 계수상의 공식 등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형선(임대인): 아까 영세농 이야기가 나왔는데 논 1단보나 2단보 가진 사람이 농촌에서 살기 힘들어 도회로 나가 먹고 사는데, 즉 왔다 갔다 하는 농촌거주 영세지주들에 대해서 면단위 農地委員會에서 조정할 수 있는 대책 또는 방법이 있읍니까? 우리같은 零細 在村地主에게는 농사가 오히려 소홀히 되어서 단보당 수량이 낮아질 것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전경식: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안을 작성하는 가운데, 農家나 農地에 관한 定義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지입법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하나 그것 갖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農地管理委員會를 두겠다고 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農民이냐 不在地主냐 하는 것은 관해서는 알 수 없읍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고장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전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농관위의 責任과 權限을 명확히 해서, 만약 농관위가 부정이 있을 경우 가차없이 엄한 벌을 주려고 합니다. 또 관의 간섭없이 自律的으로 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 농지를 농민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不在地主의 정의와 農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무척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혹은 장사하는 사람이 농사를 약간 지으면, 이는 公務員(상인)이냐, 農民이냐 구분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식 : 위에서 말씀하신 것은 兼業農家라고 할 수 있읍니다. 농가냐 농가가 아니냐 하는 판정은 결국 農地管理委員會의 심의에 맡길 수 밖에 없읍니다. 부재지주 여부도 마찬가지로 農管委에서 판단하도록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 법의 초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점차 補完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가 자본주의 經濟原則을 무시하면서는 이 법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 예를 들면 공무원이 왜 농업을 못하고 왜 겸직을 못합니까. 그것을 하면서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건 自由民主主義의 가장 기본의 하나인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 標本調査를 해서 임차료율의 기준을 정한다 했는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 다를텐데 기준을 정하는 일 자체가 무의미한 것 같고, 또 아까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구례지방에서 네가지 형태의 임차료가 나왔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억지로 막아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경식 : 이 법은 가급적이면 大統領命으로 하려고 많이 애썼읍니다. 왜냐

하면 법을 하나 改正하려면 국회에 올라가야 되고 무척 복잡합니다.

가급적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尊重하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農地問題를 방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와서 이 지방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닙니까.

: 해마다 賃借農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농민에게 댓가가 안나오기 때문에, 즉 生産費가 안나오기 때문에 離農現象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읍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많은 농작물에 피해가 왔읍니다. 그 가운데 어떤 논 서너마지기 짓는 사람이 실농을 하고 금년의 생계를 위해서 서울로 갔읍니다.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정부가 재정이 허락되는 한 농민에게 생산비를 보장해서 농민에게 농사를 짓겠끔 해줬으면 합니다.

전경식 : 물론 임대차관리법은 정부가 농민을 保護하고자 하는데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에게 불리한 법률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차농이 느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 보니까 相續이 제일 많고, 다음이 離農 등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근교의 投機性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도시 주변 뿐만 아니라 차차 농촌에 침투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근본적으로 농촌이 흔들리고 맙니다. 따라서 지금 손을 대야 합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읍니다.

한영덕(農地改良組合長)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농지제도의 耕者有田의 원칙에는 찬성합니다. 농지구입자금은 그 금리를, 물가를 3%로 억제하니까, 그에 비슷한 3.5%로 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또 小作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방 직후에도 3·7제였읍니다. 따라서 임차료율은 그것보다 낮은 30%이하가 되어야지 그래야만 우리 농

촌이 나아지고, 이 농지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경식 :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연리 5%, 2년거치 18년상환으로 매년 賃貸料 정도만 상환하면 된다는 결론이 났읍니다. 계산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농수산부에서 나온 農家經濟調査에 의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李官範 : 대개 지금 현재 임차료 기준이 그 지역에서 정해지면, 그 임차료 수준으로 10년 정도 갚아 나가면 거의 자기 논이 되며,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 좀 낸다고 해도 잔금은 거의 부담이 안될 것이며, 구체적인 숫자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構想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아까 건의하신 대로 利子率을 3%로 한다든지 償還期間도 30년으로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10년 정도는 불가피하게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는 거의 부담이 약하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먼저 이 제도가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천이 될지 안될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특히 不在地主가 아닌 층, 임대농에 대해서 그들이 이 제도에 호응을 하고 그대로 나갈 것인가 하는, 임대농의 반응에 대해 임차농이 불안해 하고 있읍니다. 즉 서로 불안해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었으면 참 좋겠읍니다만 副作用이 있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 저희 부락의 경우 42호가 살고 있는데 대부분 자녀들은 객지로 나가 거의 老弱者들이 경작을 하고 있읍니다. 농사를 네 마지기 지을 경우 두 마지기는 임대를 하고 두 마지기는 경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생길 경우, 임차가격이 내릴 경우, 노약자들이 네 마지기를 다 지으려고 하지 임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걱정이 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거의 자기논 자기가 짓지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거

의 60%이상이 賃借農인데 이런 경우 零細農家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 아까 資金支援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고, 또 그에 대한 실천사항에도 여러가지 말씀이 나왔읍니다만, 저희들이 농민들의 여론이나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 이 案에 대해서는 歡迎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과거의 영농자금이 배려된다 했을 때, 그때의 신문 보도로는 수억의 영농자금이 배정되어 농가당 20만원 꼴이 된다고 했으나 실제 농가에 배당된 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2,3만원에 불과했읍니다. 이런 점을 들어볼 때 과연 이번의 이 제도가 改善되어, 실제로 구례군 각 면 단위의 단 한두 사람이라도 지원자금을 받게 된다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즉 구례군 전체에 2,3명 정도로 자금지원이 적게 나왔을 경우,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그에 대한 기대감이 어긋나지는 않을까 인가 걱정이 되어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 농촌을 돕겠다면 제 생각으로는 耕地整理가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저희 마을은 산간마을이기 때문에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사람이 3천평입니다. 농촌을 돕는다면, 앞으로 機械化가 될 것이므로 경지정리에 많은 投資를 한다면 굉장히 일손이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 일손 문제가 제일 난감합니다.

李官範: 논밭 겨우 몇 마지기 짓는 사람이 賃借料率이 낮아지면 賃貸人이 직접 농사를 지어 그나마 임차인이 지을 땅이 없어지지 않을까 염려의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부분적으로나마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읍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委託經營이란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임차제도는 빌려가면 가을에 임차료를 3할정도 내라 하는 것이지만, 이 위탁경영은 모내기 해 주는데 얼마, 수확하는데 얼마다 하여 부분적으로 일을 都給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老齡層이 농사지을 경우, 일부의 작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위탁경영방식을 구상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방향제시만 하고,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은 많이 제외했읍니다. 또 무리한 것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고려하겠읍니다.

: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 정부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것이 큰 損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農者가 농사를 지어야지, 委託해서 남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가꿔 주겠읍니까. 그저 임대료 그 이상만 조금 나오면 그 사람(원래 임차인)에게 그대로 주어가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례 실제 상황은 경지정리가 잘 안되어, 기계로 할만한 논이 얼마되지 않읍니다. 실제로 보면 경지정리가 잘 안되어서 인력으로 하는 논이 더 많습니다.

최태범 : 아니 상황이 달라요. 현실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 4년을 산업과장을 했는데 나주있을 때는 새마을과장을 했읍니다만 거기서 보니까, 말로는 기계화 영농을 서로 해 달라고 했는데 막상 기계화 영농단을 책정하려 하니까 나서는 사람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겨우 한 두 군데로 명맥을 유지했읍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져서 마산면에 耕地整理가 좀 되고 나니까 작년부터 機械化 營農團을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기계화 영농단을 하려면 郡經費가 천만원씩 듭니다. 다섯 군데면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특별히 5군데를 책정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또 모자랍니다. 금년 군 예산으로 신청은 7군데인데, 다섯지역 밖에 못하며, 또 이번에 정부가 소규모 영농단 계획을 발표한 것과 함께 이것도 주문이 쇄도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기계화 영농에 委託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두드러진 경향이며, 특히 잘 나타나는 것이 광의면입니다. 광의면 온당리는 의례히 기계화 영농단에 맡겨서 하지, 남에게 농사를 맡기면 성의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구례군은 영세한 군입니다. 군 경비

가 모자라고, 경지정리가 된 곳은 기계화 영농을 서로 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논만 평면적으로 잘 골라 놓으면 평당 80*kg*, 85*kg* 할 수 있고, 다작을 할 수 있읍니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 기계로 하는 것이 有利합니다. 이곳은 기계화 못해서 일을 못할 형편인 곳도 있읍니다. 참고로 알아 주십시오.

최태범 : 農地制度 立法에 관해서는 환영합니다. 施行面에서 다소 하자가 생겨도 그것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건의 한 마디 하겠읍니다. 農地購入資金支援에서 실세지가를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구례군에서도 上畓은 200평당 250만원 하는가 하면, 산중의 下畓은 30만원 짜리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논 한 마지기에 1백만원씩 融資해 준다고 하면 250만원 짜리는 살 수가 없고, 그 사람에게는 주어봤자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농지가격의 實勢를 고려해서 신축성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경식 :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座談會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 산업과장님, 담당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討議內容을 참고로 하여 앞으로 더 좋은 農地制度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읍니다.

Ⅳ. 慶南 昌寧郡 座談會

가. 開催日時 및 場所

日　時：1986. 9. 25.

場　所：郡廳 會議室

나. 討論參加者 및 參席者

資料說明：　全敬植　（韓國農村經濟硏究院）

討論者

〈團　體〉	金熙一	（農地改良組合長）
	金俸基	（單位農協長）
	金宗植	（單位農協長）
〈自作農〉	曺庭輝	（昌寧邑）
	楊鎭洛	（遊漁面）
	陳台洪	（大池面）
	金載哲	（大池面）
	李完鍾	（梨房面）
	成炳榮	（高岩面）
	尹赫東	（吉谷面）
〈賃借農〉	盧伯鉉	（梨房面）
	金光憲	（南旨邑）
	金東琪	（南旨邑）
	朴龍薰	（大合面）
	辛東植	（南旨邑）
〈賃貸人〉	朴三喜	（桂城面）

	신 무	(桂 城 面)
	盧春錫	(梨 房 面)
〈參加者〉	權正鉉	(農水產部 農地課長)
	여주환	(慶尙南道 農林局長)
	박창기	(昌寧郡 郡守)
	이용부	(昌寧郡 農產課長)

다. 討議內容

全敬植 (韓國農村經濟硏究院)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창녕군에 와서 農地制度改善에 관한 座談會를 열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진지한 討論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우선 여러분의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資料說明 省略)

曺庭輝 (自作農)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農村經濟硏究院에서 마련한 試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농지구입자금 대부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임대차, 농지매매 등을 里洞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읍면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楊鎭洛 (自作農) : 창녕군 광산리에 사는 양진락입니다. 농지제도개선에 관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왔읍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볼 때는, 크게 나누어서 여러가지 부족된 점이 많은 듯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農組의 組合費를 격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기준이 35킬로그람인데 대폭 낮추어 20킬로그람 정도로 해 줬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격도 事前豫示가 되어야 겠읍니다.

그리고 농촌의 의료보험혜택이 속히 이룩됐으면 하고, 농지구입자금의 금리도 인하시켜야 하겠읍니다. 정부도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우리 농민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보다 나은 정부차원의 보조를 바랍니다.

全敬植：지금 말씀하신 農組 組合費 減免이라든지, 租稅賦課金의 減額이 선행되어야만 농민이 農地를 購入할 수 있는 자금이 確保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읍니다.

陳台洪(自作農)：저희가 사는 곳은 낙동강 유역인 사발포를 중심으로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도 賃借人과 賃貸人의 갈등이 심한 곳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지금부터 약 20년전에 포를 개간하여 80정보라는 대농경지를 이루었읍니다만, 그 농경지가 아직까지 耕者有田의 原則에 의해 농민에게 소유권이 없고, 학교재단법인인 東亞大學에서 소유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임대계약서를 보면 언제 耕作權이 박탈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의욕이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참작해 주십시오.

司 會: 말씀 감사합니다. 開墾地의 임대차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참고하겠읍니다. 다음분 말씀하십시오.

金俸基(單位農協長)：창녕군 상서리에 사는 金俸基입니다. 저는 農地上限線 廢止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현재 농지 상한선을 3정보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민에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정보로 상한선을 두면 능력이 있어도 농토를 구입하지 않고 자금이 도시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고, 특히 기계화 영농을 정부가 권장하느니 만큼, 상한선 폐지를 원칙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政府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全敬植: 지금 말씀은 농지 상한선을 폐지해 달라는 말씀인데, 농지제도에서 농지상한선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연구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년동안 연구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 무(賃貸人)：農地購入資金支援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 이자율을 보니까 2년 거치 18년 상환에 연리 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년

거치 20년 상환에 연리 3%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규모가 5년동안 1조원으로 된 것을 3년 동안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對象者 選定에 있어서도, 청장년으로 제한하지 말고 광범위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敬植: 지금 말씀하신 농지구입비 문제에서 이자율을 낮추고 자금을 늘려 달라고 하셨는데, 여하간 좋은 말씀으로 듣겠읍니다.

朴三喜(賃貸人): 계성 신당에 사는 박삼희입니다. 農村經濟硏究院에서 오셨다니까, 농지제도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셨겠읍니다만, 요즘 농촌에 農工團地가 조성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아닌 농촌, 즉 接道區域이라든가 아니면 絕對農地, 相對農地로 인해서 농촌에 공장이 오고 싶어도 못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공장을 유치하는 방법, 그것도 농지제도 개선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촌의 공장유치를 위해서 절대농지라든지 상대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全敬植: 지금 박선생님의 말씀은 농촌지역의 공장유치를 위해서 농지전용을 좀 완화해 달라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朴三喜: 그런데 사실은 農工團地 규정만 했지, 일반지역에 工場誘致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도변, 도로변에 接道區域이라 해 놓고 이 접도구역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언제 얼마만큼 커졌는지도 몰라요. 이 접도구역에서는 그 명목하에 사실은 자기 개인의 집도 못 짓고 있읍니다. 그러니 접도구역도, 도로가 확정되고 나면 그길로 끝나서 법이 해제되어야 하며, 또 공장이 들어선다면 절대농지든 상대농지든 상관없이 어떤 공장이 들어오든 絕對 緩和되어야 합니다.

金熙一(農地改良組合長) : 부재지주에 대한 委託營農을 일체 불허하겠다는 시안인데, 농촌에는 물론 부재지주에 의한 위탁영농도 있읍니다만, 그것은 지역에 따라 千差萬別입니다.

사실은 고향을 그리워 하는 사람은, 만부득이 하여 객지에 나가 살다가 일년에 한두 번이라도 고향을 찾는 것인데, 그 영농마저 끊어버린다면, 고향을 아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즉 고향을 찾기가 어려워 집니다. 그것을 위탁영농이라 해서 무조건 전부 規制한다면 토지 한 평도 없는 고향에 가서 뭐하느냐 하는 식의, 이런 농촌 분위기도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司 會 :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농지제도개선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大贊成인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權正鉉(農水產部 農地課長) : 말씀을 들어보니까, 耕者有田의 原則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한 稅制, 農地購入資金支援, 賃貸借法 이 세가지를 종합한 종합대책은 원칙적으로 좋다고 하신 것 같읍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농지구입자금은 그 규모가 좀 적고, 임대차규제는 너무 처음부터 과격하게 하지 말고 현실에 적당하게끔 하길 바란다는 말씀들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땅값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農地改革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오해를 푸는 방향으로 좀더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全敬植 : 農村經濟硏究院의 농지제도 개선안은 임대인의 소유권도 침해하지 않고, 또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차료를 엄청나게 깍아 내리는 것도 아니며, 농민이 농지를 구입해서 耕者有田의 原則으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 시안에는 찬성하나, 농지구입자금 규모를 적극적으로 크게 지원해야, 그러한 땅값에 대한 오해도 불식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는 식으로 먼저 이 시안을 찬성하는 것을 전제로 그 보안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哲（自作農）：機械營農을 할 수 있어야 農地購入이 가능한 데, 첫째 耕地整理가 안되었읍니다. 고속도로변에는 약 80%가 경지정리가 다 되어 있지만 그 나머지는 경지정리가 거의 안되어 있읍니다. 그것부터 먼저 해 놓아야 합니다. 현재 마을에는 戶當 平均 1,200평도 안되는데 1,200평 이상 더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젊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1,200평에서 일년에 나오는 조수익이 120～14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으로 일년동안 농가가 생활을 하려니, 도움이 안되고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소득이 많이 나오는 畜産部門을 하려고 애쓰고 있읍니다. 그러니 소값이 안정이 안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읍니다. 그러니 농사는 짓기가 편리하도록 해 놓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어느정도 이득이 될 것이고 농토도 購入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차 경지정리를 한 곳은 이차 경지정리로 900평을 1,000평으로 늘리든지, 완전하게 농토가 경지정리가 된 후에 해도 늦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도 농토를 2,000～3,000평 짓는데, 남의 논까지 耕作을 하고 있읍니다만, 쌀농사 보리농사로는 땅을 늘려도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소득층이라면 얻으려 하겠지만, 사실상 농민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읍니다. 지금 농가의 대부분이 호당 부채가 2백～3백만원인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빚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오히려 힘들게 땅을 늘이는 것보다 임차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니 耕地整理를 철저히 하여 농촌의 與件을 造成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先決問題입니다.

企業農을 하려면 농촌에 새마을 공장이 들어서든지, 농촌인구나, 농민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지금 수준에서도 1인당 평균 5～6백평으로 사는데 그것은 공장의 한 달 십만원 월급장이 수준도 안됩니다. 工場이 많이 생기고 耕地整理가 되면, 문제가 解決될 것입니다.

成炳榮（自作農）：농수산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과거에 소로 농사를 지을 때는 사실 農路, 用水路가 밟혀도 피해가 적었지만, 지금은 트랙터·경운기 등 농기계로 농사를 짓는데, 이는 사정없이 밟아 피해

가 큽니다. 이것은 耕地整理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지정리를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소 대신 기계가 들어가면서 남의 농사를 다 망칩니다. 이것은 살인까지 가는 싸움이 됩니다.

농촌의 농민은 농사를 지으면서 수익만 보려는 것이 아니고, 작물이 자라는 재미를 보는 것도 있는데, 농토가 그렇게 되니까,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논으로 농사를 짓기도 하는데, 경지정리는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비싼 돈으로 기계를 사도 쓸 데가 없읍니다. 따라서 用水開發, 경지정리 없이는 농사가 안됩니다.

農地制度改善은 정부가 참 연구,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그것은 이왕 미뤄진 김에 뒤로 하고, 우선은 농토개발에 더 힘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權正鉉：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다들 막연히 耕地整理·農業用水 問題를 말씀하셨는데, 농수산부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부 예산의 대부분이 農業基盤造成事業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農村經濟硏究院의 농지제도 연구에서는, 기계화를 하려면 경지정리가 되어야 하고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경지정리도 하면서 규모확대의 이 두가지 방법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편으로 耕作權을 보호해 주고, 또 임차료가 경쟁에 의해 자꾸 올라가므로 그 適正水準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돈 20%, 정부 돈 80%, 그렇게 해서 정부 돈 80%를 갚아 나가려면 대개 2년 정도 거치해 주면 그동안 쌀값이 오르거든요.

한 20년정도 기간을 해주면 처음에는 100만원씩 갚아 들어간다해도, 첫해는 백만원이 커보여도 한 2년쯤뒤 원금 갚을 때쯤 되면, 쌀값이 오르니까, 그러면 7년, 8년후에는 백만원은 좀 줄어들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계산해 보니까, 지금 남의 수 주는 것, 심지어 50%정도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만 갖고서도 갚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계산을 해보아야겠지만, 원칙은 남의 땅 농사로 수 주는 것보다는 한 20년동안 갚아 나가면 그것이 내땅 되는 것 아닙니까

臺灣에서도 土地改革할 때 대략 수 주는 수준으로 金利를 정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도 융자조건을 대강 그런 방향으로 정해보자. 하지만 100% 다 줄 수는 없고, 자기돈 20%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工場地帶, 農地轉用 얘기가 나왔는데, 농지전용 역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것이 막 사방에서 공장짓는다고 농지전용해 달라고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어디 한 군데로 모아 집단적으로 단지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공장 저 공장 전국 방방곡곡에 헤어져 뿔뿔히 짓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공장이 들어오면 논값이 올라서 좋으실 것 같기도 하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절대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公害施設 하겠다고 철통같이 약속을 해놓고도, 環境廳에서 엄격히 관리를 해도,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보면, 들판을 버려놓읍니다. 그리고 그 근방을 다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農事試驗場이 있는데 그 農事試驗場 물 바로 옆에 工業團地를 만들겠다고 해서 시비 거리가 된 것도 있읍니다. 물론 와서 농지전용해 달라는 사람의 사정을 다 들어보면 안해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농토가 집, 공장 등으로 자꾸 침식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겸업농이 기계화가 되어야 하니까 兩極化現象이 빚어졌답니다. 공장이 들어오니까 논을 다른 사람에게 賃貸시키고,농촌에 있으면서 탈농화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전에는 생산성이 1정보 짓는 사람이나 두 마지기 짓는 사람이나 비슷했는데 요즘은 기계화가 되어,生産性隔差가 심해져서,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일정규모까지는 생산성이 더 좋아지니까 남의 논을 빌어서 규모를 확대하지, 팔려고 하지 않읍니다. 그곳은 노동자라도 농지를 가진 노동자가 부자노동자입니다.

우리도 경지정리, 규모확대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하루빨리 제도적인 기반을 整備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하는데 천만원 주는 것이 낫지 농지구입 하는데 천만원 주는 것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구조를 개선하려면, 결국 농지제도를 改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차츰 차츰 制度基盤만 만들어 놓으면, 지금 갑작스럽게 엄청난 지원을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결국 基

盤造成이 될 것입니다.

朴三喜 : 농지제도개선 이 자체가 도시사람들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농촌사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農地制度改善策을 내놓고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농촌이 앞으로 잘 살려면, 아무리 농사를 지어서도 그 損益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5년동안에 일조원으로 농지구입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농지가 도대체 얼마인데 농지구입자금 일조원을 그것도 5년동안 나누어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신당의 논 한 평이 일만원인데 생산성은 높습니다. 그곳에 논 한 마지기에 400만원 주고 사서 5% 이자주고, 18년동안 상환할 능력 없읍니다.

農工團地를 농토의 어느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국토가운데 농지를 많이 보유하겠다는 욕구가 있겠지만, 농촌 잘살기 위한 농지제도 개선을 하려면, 공해공해 하시지만, 도시에도 공해문제는 있고 농촌에도 공해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시건 농촌이건 環境廳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농촌에도 공장이 생김으로써 진짜 이제는 地主勞動者가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農閑期에는 특작할 사람은 특작하고, 공장 나갈 사람은 공장 나가고, 또 임대할 것은 임대하며, 농지는 上限線을 두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농촌을 좀 즐겁게 하고, 젊게 해야 합니다.

요즘 營農後繼者들 실제 資金 받아서 그 자금으로 특수 하우스 하고, 소 먹이고, 과수원 해서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읍니다.

이제 그 영농후계자에게 농촌에 정착하겠다면 더욱 더 밀어줘야 합니다. 실패를 하든 어쨌든…

그리고 농촌을 젊게 하자, 젊게 하려면 機械化하고, 현 60% 수준의 耕地整理를 좀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 요즘 경운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농사짓는데 그 利用度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그 가격은 지금 현재 160~180만원 합

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3차사업으로 해서 세계 속의 한국이 되었다지만, 일차산업이 먼저 기반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뜻입니다.

生産性 向上도 문제지만, 우선 농촌에다 좀더 投資를 해서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陳台洪 : 농촌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농촌에 消費風潮가 무척 짙습니다. 그 요인중의 하나가 TV를 보면 너무 화려하여 相對的 貧困을 느끼게 되어 자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는 죽어라 일해도 빚도 못 갚고, 특히나 농촌 부녀자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 2～3천원 벌이라도 있으면 서로가 하려고 하며, 일자리가 없어서 못합니다. 특히 가을철이 지나고 나면 더욱 심해집니다. 농촌에도 TV등 문화시설이 다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육문제 등 文化的 惠澤의 결핍을 느낍니다.

결국 대체적으로 말하면, 농촌에는 여러가지 社會的인 問題가 산적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權正鉉 : 지금 農村問題가 굉장히 어려운데, 관련시책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농지제도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 말씀인데, 제 얘기는 다들 어려운 문제를 다 놔두고 이것 하나 갖고 앉아서 이야기해보았자 해결이 안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왕 여기 모이신 취지를 상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 서울의 공청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말하자면 농지제도 문제도 所得政策, 農産物價格政策, 基盤造成政策이라든지 醫療保險이라든지 농촌과 관련된 시책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지 그것 하나만 갖고는 안된다는 언론인의 지적도 있었읍니다. 물론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듣는 것도 도움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또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상의하고자 하려는 것은, 우선 범위를 좀 좁혀서 農地制度에 관해서 기탄없이 의논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朴昌基(郡守) :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사실상 農業問題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에 産業化 過程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農村工業 問題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물론 크게 말하면 農地制度와도 간접적인 관련이 있읍니다. 우리 관내에도 農工團地가 지금 예비 지정되어 진행되고 있읍니다만, 이 공장도 농지기능에 재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신청된 것이 18개인데 그 중에서 환경청에 합격된 공장이 14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공장은 4~5개면 되는데 14개가 합격했다고 하는 것은, 농지에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공해 없는 공장이라고 확인된 것이며 그 뒤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성을 검토하여 거기서 합격된 것은 2개입니다.

결국, 앞으로 농촌에 들어오는 공장은 우선 環境汚染이 없어야 되지만, 기업성이 착실하여 그 지역의 많은 遊休人力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공장이 10년 20년이상 항구적으로 가동된다는 것이 보장이 될 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장이 드물고, 또 공장이 誘致된다 해도 세계경쟁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계화되어 인력을 많이 안씁니다.

아까 토지규제 문제, 絕對農地, 相對農地 規制가 여러분의 산업활동에 제한이 된다 하더라도, 백년대계를 볼 때는 그것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는 어렵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 建議를 해서 緩和를 시키겠읍니다만, 가급적이면 規制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제인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자기 개인의 이해보다는 郡 全體의 입장을 代表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權正鉉 : 賃借를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논을 빌어서 농사를 지을 경우, 자신의 勞賃 정도는 빠진다고 말씀하시는 분과, 어떤 분은 하도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남의 논을 빌어서 하는 것은 사실상 보리농사까지 해도 노임조차 안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임차하는 분의

입장이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형편이 어떤지를 事實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金載哲 : 저는 2,000평의 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00평의 땅을 한 농장 안에 붙어 있어서 빌어쓰고 있읍니다.

900평은 200평에 400근(약 2섬)을 주고, 한 곳에는 175근을 줍니다. 이것은 제가 特作을 하기 위해서 빌린 것인데, 사실은 대개 특작이 所得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만 19년째 하는데 남의 돈을 빌어서 해보니까 收支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리한 사람은 예산을 세워 결산을 맞추어 보지만, 보통 농사짓는 사람은 粗收益으로 이야기 합니다. 예를 들면 150평짜리 하우스 한 동에 대해, 그에 들어가는 것은 대충 자기가 노동을 안할 경우 120만원, 자기가 노력을 하면 약 80만원이 들어 갑니다. 결과적으로 平作時 한 동에 150만원 나옵니다. 그 기간은 보통 7개월입니다. 참외, 토마토, 오이, 딸기 등 안하는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그들은 임시는 돈이 나오니까 돈을 잘 씁니다. 제가 지금 그곳에서 한 10년 계를 모아보니까 負債가 무척 많습니다.

한 번은 各邑面에서 자료를 내라 해서 했는데, 제가 經營費로 들어가는 자료를 다 갖고 갔읍니다. 한 동에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섭섭하거든 수정해 보라고 해보니 수정할 곳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남의 농지 갖고 하는 경우 수곡이 보통 가을에 남의 논을 빌어 보리 수를 주는 곳은 평당 300원을 줍니다. 겨울 한철을 하는 것 치고는 그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일년에 하우스하는 사람들의 보통 수익이 어떻다고 해도 절대로 남지 않습니다. 제가 임차를 해서 작년에는 400근을 주었는데, 언젠가는 한번 失農을 했었읍니다. 일년에 投資한 비용이 780만원이 들어 갔는데 실농을 하고 하니까, 그 사이사이에 조금씩 나오는 것은 물건 같지도 않고, 전부 雜費가 되어 780만원이 전부 그대로 빚이 됩니다. 빚이 되고 나니 單協에서는 연체가 되고 그 다음에 농사를 부칠 수 없는 실정이 됩니다. 임차를

해 보니까 벼농사를 짓더라도 지금 최고 신품종으로 하면 900평에 아마 120만원이 나올 겁니다. 120만원 중에서 비료값, 약값, 모심는 것 전부 들어가고 나면 한 60～70만원이 남습니다.

남의 논을 빌어서 한 것의 경우 양도를 제하고 나서 보니까, 열다섯 마지기 지어 140만원을 얻었읍니다. 쌀이 한창 비쌀때인데도, 열다섯 마지기에 140만원을 번다는 것은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운영이 되지 않는 셈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이 거의 대농이신 듯한데, 사실은 2,000평 이하로 짓는 경우는 농사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계산하지 않는 셈입니다. 거름도 자기 손으로 만들고 전부 자기 손으로 하는 노력의 댓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곡이 200평에 50% 주어서는 안되고, 30% 줘서도 현재 안맞읍니다. 제 생각에 20%이상 주어서는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구역 두 구역 지어서는 안되고 3,000평 이상 지어야 그래도 자기와 가족이 쓸 비용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제도 자체는 참 좋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賃貸借率입니다. 정부에서 適正水準을 정해서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임대 짓는 사람이 생활유지가 되도록, 劃一的으로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全敬植 : 이제 좀 本 主題와 關聯된 깊이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분 말씀해 주십시오.

金光憲(賃借農) : 충남 大田에서 딸기 농사를 하려고 내려 왔읍니다.

남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논 좀 있는 걸 대전에다 그냥 두고 거의 필요한 資材만 갖고 왔읍니다. 그래서 첫해 와보니까 딸기농사를 몇집 안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둘이 계획을 하고 내려왔는데, 이왕 할 바에 많이 하고자 했읍니다.

우선은 둘이서 10동씩 했읍니다. 10동 하니까 다른 분들이 놀래요. 그분들이 할 때는 많이 해야 2동 아니면 3동 하더군요. 저희들이 10동을 계

획하면 200평까지 한 동을 짓습니다. 그러면 한 2,000평 되지요. 금년에 4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데 처음 2년동안은 참 좋았어요. 그때 저희들이 벼농사를 안 지으니까 지주가 논을 늦게 비워 주더군요. 땅이 어느 늦은 시기인 12월 15일날 정식으로 시작했는데 딸기시세는 좋았지만 저희가 投資한 金額도 안나올 만큼 거의 失農을 했읍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는 조금 낫게 농사를 지었는데, 11동을 해서 한 동에 약 150만원의 수입을 보았읍니다.

그렇게 되면 열 동에 천오백만원인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약 천만원이 投資됐읍니다. 소소한 것은 따지지도 않더라도, 그러면 오백만원의 수입이 되지요. 남지에서는 거의가 시설채소 농민이 남의 논을 빌어서 하는 형편인데 南旨는 賃貸料가 비쌉니다. 평당 3근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안 주면 얻을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통일계통으로 배상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일반벼로 하면 거의 100% 다 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약비, 보증금 등 다 따지면 한 구역에 약 17 ~ 18만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저도 거의 그와 비슷합니다. 저의 경우, 딸기를 해서 늦벼를 심으면 시기적으로 손해가 많기 때문에 早生種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 제가 1,600평을 조생종을 했는데 9월 2일에 일찍 수확을 해서, 나락을 정미소에 내보니 160만원 정도 나왔읍니다. 1,600평이면, 지난 해로 봐서 주인에게 주는 것이 평당 약 천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160만원 나왔다면 그것을 거의 다 주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농사지으려고 投資한 돈을 계산하면, 3 ~ 40만원을 내 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 돈으로 내 농사를 지으면 負擔이 적고, 첫째 지주에게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잘 못 지어도 큰 부담이 없는데, 남의 땅인 경우 한 해만 잘못 지어도 거의 도망가야 할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제가 제대로 다 했읍니다. 내년도 時勢가 문제겠지요. 그렇다고 딸기 값이 전처럼 1 *kg*에 몇만원씩 하던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지난 해 매스컴에서 저희들이 딸

기 수확도 하기 전에, 7～8개 들어가는 딸기 한 상자에 만원에 거래가 됐다고 報道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수확후 겨우 2,400원에 판매가 됐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너무 誇張된 보도를 하는데, 그런 것이 生産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싸다니까 시장에서도 사실상 판매가 잘 안될 것입니다.

南旨의 경우 임대료를 적게 준다면 얻지를 못합니다. 저같은 경우 사정을 해서 얻어야 합니다.

金東琪(賃借農) :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읍니다. 같이 남지읍에 사는 김동기입니다. 사실상 남지읍의 賃貸借 現況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施設園藝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농지 경우도 두 근을 안주고는 남의 논을 얻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두 근을 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을 해서 남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기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大面積이 필요해서, 남의 논도 3,000평 짓습니다. 제 논과 합하면 약 8천평 되지요.

왜냐면 기계를 몇백만원 주고 샀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해서라도 본전을 빼야 되지요. 그래서 600평을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읍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몇년전에는 조금 나았읍니다. 왜냐하면 통일계통을 심어 매상을 하니까 평당 농사가 잘된 논은 600평에서 2,400근까지 나와서 조금 所得이 있었는데, 요즘은 一般系 아니고는 정부에서도 무제한 통일벼 매상을 안받아 준다는 얘기도 있고, 또 地主들은 받아들일 때 전에는 現金으로 지불해도 됐는데 요즘은 꼭 벼, 나락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일반벼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벼로 평년작이 됐다고 볼 때 한 1,800근, 작년 가격수준으로 600평에 59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經費, 비료값, 모내기, 인부대, 기타 등등 해서 12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대료를 39만2천원을 줍니다. 그러면 59만원 수입에서 임대료,投資金額을 제하고 나니까,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1,800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만8천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왕 농사짓는 김에 規模가 커야 收支 타산이 맞습니다. 남지에서는 그래서 임대차 문제가 큽니다.

全敬植 : 지금 세 근 나는데 두 근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金東琪 : 네, 그렇죠. 남지는 대개 다 그렇습니다. 원예, 원예 하는데, 원예해서 망한 사람이 반도 넘습니다.

楊鎭洛 : 遊漁地區에서 賃貸借 契約을 한 사람 중에서 실패를 한 사람입니다. 이곳은 綜合開發 이후에 면적이 넓어졌읍니다. 대지주가 외지에 있는 분이 많은데 주로 3·7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적은 것은 2·8제도 합니다. 그것도 좋은 논으로서 남지같은 시설원예를 하는 곳은 비슷합니다. 3·7제 하는 사람은 대농으로서 면적이 많은 경우가 3·7제로 합니다.

여기는 첫째 기계를 구입하고, 水稅는 나중에 주인 반 임차인 반, 또 장기채상환은 주인이 전체 다 내고 하는 식인데, 주인이 힘이 없어요. 처음에 耕地整理를 하고 나면, 임차인은 자신이 트랙터를 사서 논을 골랐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으니 주인이 좀 봐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해도 경지정리가 안되어 잘 안골라집니다. 지주측 입장은 수는 賃貸借 契約대로 시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작황은 누구도 모르니까, 수세를 기준으로 해서 農水產部에서 특별조치부과금을 기준으로 하고, 또 한가지 행정에서 부여하는 등급부과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대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농민들이 오해를 합니다. 면에서 셈하는 등급하고 농민들이 생각하는 등급과는 정반대입니다. 소작인은 어떤 악용을 할 수 있는가 하면, 農組에서 하는 것은 보기에 좀 싸보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면 작황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 혜택을 보고, 조금씩 혜택을 봐도, 그 소작인과 계약은 해마다 하되, 토지를 주인이 맘대로 절단을 못합니다.

어떤 경우든 지주보다 소작인이 권리가 셉니다.

금년 경우 예를 들어 대목리에서 어떤 사람이 4·6제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農地制度가 개선된다는 말을 듣고는 그전의 계약을 무시하고 3·7제로 주겠다는 억지를 부렸다는 일도 있었는데 앞으로 농정에도 문제가 많을 듯합니다.

농사짓는 사람도 자기가 노동력이 부족해서 필요로 인해 한 해는 남 주었다가 다음에는 자기가 부치는 수도 있고 합니다.

陳台洪 : 在村地主하고 不在地主하고 임대료가 달라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부재지주는 좀 싸고, 재촌지주는 거의 반반씩 갈라먹기 식입니다. 特殊作하는 곳은 거의 평균 2근 내지 3근인 실정입니다.

盧春錫(賃貸人) : 정부에서 農漁村開發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신경을 쓰시고, 이것도 앞으로의 제도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농지제도개선문제, 이것 하나로써는 농촌이 발전할 수 없다고 앞에서도 많이 강조하셨읍니다. 제가 보는 견지로도 여러가지 복합되는 문제가 따를 것으로 여겨집니다.

임대차계약 같은 것도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고, 지주도 不在地主, 在村地主가 있는데, 부재지주도 아주 많은 평수를 갖고 있는 분은 정부에서 제재를 해 주시고, 시골에서 거주하다가 할 수 없이 이농한 소규모지주는 부재지주라고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현재 제도가 정부에서 융자를 해서 시골에 정착할 수 있는 분들에게 하나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 준다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나 지금 현재 農村實情을 볼 때 대대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줘서 큰 힘이 돼야지, 이런 소규모의 자금으로는 혜택을 못 보고, 더 負擔을 안겨줄 우려가 있읍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협빚, 私債 등 봄부터 各種 資金이 여러가지 이름으로 나오고 있읍니다.

영농자금부터 학자금까지 이름이 다양한 자금이 많읍니다. 계속 이름을 바꾸니까, 우선은 급하니까 막 당겨쓰다가 가을 償還期가 되면 사실상 하

나를 받고 하나를 폐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어느 돈이라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되는대로 써야 합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농토 하나라도 장만할 여건이 되도록 밀어주시고, 더 부채가 증가 안하고 빚을 탈피하고 농어촌에서 定着하도록 최대한 정부차원에서 상세한 계산을 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全敬植 : 실제 농사를 지으시면서 어려운 점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盧伯鉉 (賃借農) : 우리 지방은 주로 농사짓는데 대한 긍지를 갖고 있읍니다. 우리도 수확해서 반반씩 갈라먹기를 합니다. 50 %는 地主, 50 %는 小作人으로 합니다.

全敬植 : 보리농사는 어떻습니까?

盧伯鉉 : 가을 것은 농사짓는 사람이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金肥하고 人件費 따지면 나락농사로는 적자를 보지만, 보리농사로써 이것을 갚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임대차라는 것은 지역따라 다릅니다. 어느 지역에는 토지를 그냥 묵혀서 부칠 사람이 없는가 하면, 아주 질이 좋고 特殊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된 곳은 전체 농사를 다하면서 賃貸를 주는 곳도 있고, 보리농사는 소작인이 지어먹고 나락만 심어 나누는 식도 있읍니다.

그 地域과 特性에 따라 여러가지로 다양합니다. 지금 賃貸借料率을 政府에서 정한다 해도, 정부에서 그것을 시행하기에는 무척 힘이 들 것입니다.

全敬植 : 이모작의 경우는 보리농사를 지어 소작인이 먹고 나락을 반씩 가르는데, 일모작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曺庭輝 : 일모작은 대개 안부치려고 합니다.

일모작 같은 경우는 반 주고 부치려는 사람은 거의 없읍니다. 그런데 벼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수확을 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일모작은 勞動力이 한가할 때 일모작을 심고, 이모작은 보리수확을 함과

동시에 모를 내야 하므로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일모작을 꺼려하고 남의 논을 갈라먹게 됩니다.

솔직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의 논을 지으면 반반 아니라 10말을 줘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금비는 되도록 안쓰려고 창녕군에서는 손수 퇴비를 생산하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해도 제 농사가 한 3천평 남의 농사를 5～6백평 짓는데, 그것도 내논 옆에 있다보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짓는 것이지 솔직히 收支關係가 절대적으로 안맞습니다.

앞의 어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工場이라도 들어서면 3천원 벌이라도 그것을 하지 좌우간 농사는 안지을 겁니다.

김종식(單位農協長) : 계성면에 사는 김종식입니다.

農家負債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참고가 됐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저희 조합은 약체조합입니다. 예산이 약 8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전 조합원이 빌어쓰고 있는 각종 대출금은 약 20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농촌실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農地制度改善이 만약 된다면, 실제 빌려쓰려는 소작인도, 빌려주는 지주에게도 맞지 않으며 또 金利도 안 나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제도가 改善된다면 農地價格이 大幅 하락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司 會 : 주로 하락하는 요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金宗植 : 요인은 도시에 있는 지주가 받아갈 수(임대료)가 利子가 안되니까 팔아서 다른 곳에 投資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농지가격이 大幅 下落할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최대한 농지구입자금을 많이 빌려 주신다면 하락할 이 기회를 이용해서 농촌의 소작인들이 다분히 얼마만큼의 농지라도 確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辛東植(賃借農) : 남지에 있는 辛東植입니다.

비닐하우스 온실을 보면 김해의 경우 보온을 안하고 해동을 해 가지고집을 지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남지같은 경우는 한겨울에 안에 연료를 주입해서 保溫을 하고 있읍니다. 남지가 하우스시장에 대해서 약 30년 됐는데, 제가 남지에 온지는 한 15년 됩니다.

처음에 남지 옥산 동네에서 하우스를 했는데 그때는 비닐이 없어서 문종이에다 기름을 묻혀서 태양열을 받아서 했읍니다. 그것이 발전이 되어, 그 당시는 옥산동네 15세대 정도가 하우스를 했는데 지금은 한 700세대 됩니다. 그래서 現地共販을 남지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시도를 했읍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지금도 남지는 공판운영을 하고 있읍니다. 대도시에서 商人들이 직접와서 사가는데, 하루의 賣上高가 많이 오를 때는 3,4천만원이 됩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타지에서는 南旨가 하우스를 해서 돈을 잘 번다고 하고, 또 봄이 되면 관광객이 하루에 버스 10, 15대가 옵니다. 중앙회에서 슬라이드로 남지의 현지공판을 선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읍니다.

저도 남지에서 하우스를 600평 하고 있읍니다. 실제 면적은 약 300평밖에 안됩니다. 저의 總所得額은 600만원 되고, 總投資는 약34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임차료가 59만원, 연료비가 120만원, 농약비가 한 3~4만원, 자재대가 120만원, 순수한 노력비는 사실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純收益은 약 60만원 되지만, 사실은 이것이 전가족이 추운 겨울에 손을 불어가며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댓가입니다.

그런데 外形으로는 타지에서는 南旨가 돈을 잘 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內容的으로는 큰 돈벌이가 안됩니다. 저도 單協에 부채가 약 300만원 있읍니다. 남이 하는 것을 보는 것하고 실제로 해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박창기(郡守) : 行政을 담당하는 立場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농지를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기존의 부채 때문에 취득과정에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밀고 나가겠지만, 과도적인 방법으로서 南旨같은 特殊

地域을 즉 기후라든가, 교통, 유통시스템의 조건으로 봐서 유리한 곳을 정부에서 뒷받침해 주고 집단적으로 매수를 해서 채무, 채권을 확정했으면 합니다. 농민들에게 줄 경우, 우리가 주택개량자금을 비롯한 각종 행정자금을 주어 봤으나 償還過程에서 곤란한 점이 많이 생깁니다.

농지구입자금 역시 나중에 回收時 문제가 생길 수 있읍니다. 그래서 남지같은 특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군청에서 집단적으로 買收하여 거기서 성실하게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임차료의 부담과 악성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영농 패턴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말씀드립니다.

地域的으로 임차료를 결정할 때도 여러가지 副作用이 나올 수도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관에서 直接 買收하고 管理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全敬植: 시간이 많이 지났읍니다. 오늘 군수님, 농업단체대표, 창녕군의 농민대표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農地制度改善에 관해 기탄없는 이야기를 나눈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耕者有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農地制度를 개선하는데 있어서 여러분의 의견이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좌담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 농산과장님, 담당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V. 忠北 陰城郡 座談會

가. 開催日時 및 場所

日 時 : 1986. 9. 29. 오후 3 시

場 所 : 陰城郡廳 會議室

나. 討論參加者 및 參席者

資料說明 : 金聖昊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委員)

討論者

〈團 體〉 조정구 (농지개량조합장)

최운성 (단위농협장)

〈自作農〉 김시향 (음성읍 감우리)

고삼식 (원남면 마송리)

박동규 (맹동면 용촌리)

이천구 (삼성면 청룡리)

김기옥 (무극면 송곡리)

〈賃借農〉 박기술 (음성읍 사정리)

김봉호 (금왕읍 정생리)

김정환 (대소면 태생리)

권오유 (삼성면 양덕리)

〈賃貸人〉 남상긍 (음성읍 신천리)

송기태 (감곡면 원당리)

〈參席者〉 김중수 (陰城郡 副郡守)

정태춘 (陰城郡 農產課長)

다. 討議內容

司會(정태춘 陰城郡 農産課長) : 먼저 金聖昊 위원의 資料說明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태(임대인) : 農地購入資金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小作農은 貧農인데 정부에서 農地購入資金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땅을 사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제가 實例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읍의 營農後繼者 가운데 한 분이 땅을 사려고 했었는데, 조합의 대출을 받으려면 連帶保證人 2名을 세우고, 登記文書를 필요로 했읍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貧農으로서는 땅을 소유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 방법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땅을 담보로 連帶保證없이 대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삼식(자작농) : 農地制度改善을 정부가 뒤늦게나마 시행하려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제 주신 자료의 13페이지, 비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取得稅와 登錄稅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그 引上率이 어느정도 까지입니까?

그리고 또 자금이 2년거치 18년 분할상환이고 맨 끝부분에 遞增償還이라고 나왔는데, 遞增償還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금리장사하는 식이 되는것 같습니다. 저도 79년도에 주택개량을 했는데, 주택개량자금의 상환방식이 거치기간은 같은데 分割償還입니다. 그런데 完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약 300만원을 빌었는데, 20년동안 갚는다면 900만원을 내는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농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농민을 상대로 돈장사를 하는 것이 됩니다. 2년거치 18년 분할상환이 농민에게 수긍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농지구입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 중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는 사람이 없도록 사실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부재지주의 땅이 40만정보라는데, 농민이 그걸 다 구입하려면, 제 계산

으로 약 7조원이 드는데, 지원자금 1조원으로는 부재지주의 땅을 농민이 다 구입하는 데는 13년이 걸립니다.

농정은 지속적이어야지 일시적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農地管理委員會의 위원은 법적인 제도를 강화해서 위원이 책임감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임차료 지불관계가 임대인과의 직접적인 관계이긴 하나 정부가 개입하여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과도기에는 관에서의 어느 정도의 조정이 되어야 하며, 결국 제도보다는 정부의 의지와 운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천구 (자작농) : 지금까지 농지제도개선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농민과 부재지주가 별 피해가 없는 중간선을 택해서 법안을 구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농민이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읍니다. 근본적으로 농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농지를 소유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소득이 보장되겠지만, 현재 農地價格과 농산물 생산에 의한 소득을 비교할 때 銀行金利도 나오지 않는 소득을 농민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몇천억원의 자금을 農地購入資金으로 농민에게 投資를 한다해도 그 자금을 받는 농민은 불과 몇%도 안될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전국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6%에 지나지 않는 國有農地와 현재 林野로 되어 있으면서 경지로 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도시의 대기업이 각 지방에서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런 것이 농민의 소유가 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에는 별 이의가 없으나, 다만 농민이 좀더 잘 살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기옥 (자작농) :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잘 들어 이해가 되었읍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부재지주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제 생각으로는 아주 잘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법이 시행될 때, 그 지역의 農地管理委員會의 위원들이 얼마만큼 양심적으로 잘 해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 같읍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

되어 시행된다면, 農地委員會의 委員은 자질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동규(자작농) : 賃借料率에 관한 김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賃借料率이 畓 30%, 田 20%인데 그 기준을 앞으로의 기준에 의해서 정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으로 기준을 정했는지 궁금합니다.

고삼식 : 87년도에 農地購入資金 1천억원을 지원하고, 購入限度坪數가 농민 한 사람당 1,500평이라는데, 사실 全國平均 農地價格이 논의 경우 7천원정도, 밭의 경우 6,000원 정도로 나왔읍니다. 그런데 사실 평균적인 것은 좋지만, 지역적인 탄력성이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융자금액은 획일적인 것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입니다.

최운성(단위농협장) : 우리나라의 농촌에 대한 지금까지의 지원정책은 그야말로 농민들이 바라고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했다고 봅니다.

늦은 감이 있긴 하나, 이제서라도 우리 농촌경제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購入資金 金利 5%, 2년거치 18년 상환은 농민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농민들은 도저히 영농비나, 水稅, 農地稅, 元金償還, 利子負擔이 커서, 그야말로 그림의 떡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왕 농촌을 위해서 정부가 대결단을 내린다면, 農地購入資金을 無利子로 농민에게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농민이 부담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無利子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래서 참으로 농민을 위하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司 會 :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김위원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읍니다.

金聖昊（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委員）：이 고장 여러분들의 말씀을 앞으로의 정책에 기초자료로 반영하겠읍니다.

아까 송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담보문제는 농지 자체가 담보로 될 것이고 지금 중앙에서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원남면의 고선생님은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자금문제가 거론되었읍니다만, 솔직히 자금문제는 농수산부에서 구상된 것입니다. 앞으로 수정이 되겠고, 실정에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세군데를 다녔는데, 김제쪽에서는 오히려 農地購入資金에 대해서 여론이 있었읍니다만, 自作農層이 많은 상주지역에서는 상당히 여론이 많았읍니다. 그쪽 지역에서는 여론이 利子를 2.5%로 하길 바랬고 여기 조합장님은 무이자를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다른 지역을 더 돌아보고 나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와 지원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역에 따라 다 다릅니다. 분할상환문제는 계속 추적조사를 해 보겠읍니다.

그리고 기금 1조원은 한도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말할 때 그런 것이 앞으로 5년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 기금은 옥수수 등의 사료의 農產物輸入課稅 賦課金입니다. 부과금은 앞으로 계속 발생될 것이나 몇년까지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5년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農民年金制가 國民年金制의 일환으로 실시되면 기금은 우리의 예상외로 상당한 재원이 발생될 수 있읍니다.

그리고 收益性問題, 價格問題는 여기서 제가 답변할 수는 없으나, 원칙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쌀값은 밑진다 해도 정부가 끊임없이 끌어올려 왔읍니다. 기복이 심한데 있읍니다. 그 기복이 왜 많은가 하면 재배면적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파동은 재배면적이 70%를 좌우합니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읍·면단위의 단위협동조합이 자기지역의 적정면적을 정합니다. 그래서 過剩生產도 없고 過不足도 없읍니다. 이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앞으로 단협의 민주·자주가 되어 상향식 조합이 되어야만 농민도 단결이 되어 價格問題도 해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農地管理委員會에 관한 것인데, 어떤 분들은 대만이나 일본이나 잘 되지 우리가 잘 되겠느냐고 하시는데 저로서는 속이 터집니다. 우리 농촌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農地管理委員會입니다. 그리고 농촌은 농민의 농촌이라야 합니다. 거기서 자주력이 발생해야만 힘도 생기고 융자조건이 어떻다 발언권도 생기지,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데 톤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농촌도 농민의 농촌이 되어, 그분들의 발언권이 커져야 된다고 믿으며 따라서 農地管理委員會에 가장 애착을 갖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느냐 하셨지만 사실은 정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農地管理委員會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賃借期間이 陰性的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읍니다.

법적으로는 처벌규칙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일선의 농민 여러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국가의 법은 결국 큰 테두리안일 뿐, 구체적인 것은 농민 여러분이 自律的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형제간끼리 빌리는 것은 아마 막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김제에서 一子相續制를 해야만 영세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많이 나왔읍니다.

그런데 民法으로는 一子相續制를 할 수 없읍니다. 民法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一子相續制를 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영세농 발생을 어떻게 막느냐, 즉 아버지가 대지주일 때 자식대에도 대농을 어떻게 존속시키는가는 農地購入資金과 相續制가 어떻게 결부해 나가느냐는 문제로서 이 분야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까 이천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2.6%는 國有地 말씀 아닙니까.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農地改革의 전제조건의 하나로써 國有地를 다 불하하고 매각을 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은 국유지에 전혀 손을 안 댔읍니다. 건설부쪽에서는 국유지가 많아 공사에 좋다고 해서 매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농수산부 쪽에서는 최근에야 이 문제가 거론되어, 5

년내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재산, 행정재산이건 잡종재산이건 그 실태조사가 최근에야 전국적으로 되었읍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에 속하는 것은 현재 경작인에게 불하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며 앞으로 계속 검토하려고 합니다.

송곡리에서 오신 김기옥 선생님께서 많은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農地管理委員會의 역할에서 앞으로 결정적인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구상으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15~20명 가량 모일텐데, 한 두명은 거짓을 할 수 있지만 20명 모두가 거짓말 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박선생님이 말씀하신 賃借料基準은 여기서 料率을 말하기 쉬워도, 사실은 生産費도 전부 따져서 말하는 숫자입니다. 지금 임차농측에서는 가족노동력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노는 노동력이니 비싼 임차료나마 경작하는 것이 유리하여 빌려쓰는 것이라고 분석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경제상태에 따라 무척 다르겠읍니다만, 임차료 기준이라는 것은 비료값, 농약값 전부 다 따져서 어느 수준이 되든지, 생산비까지 받아먹는 임차료는 있을 수 없읍니다. 이런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논의 경우 30% 수준까지는 괜찮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는, 지금 농촌의 가진 분도 조금 양보하고, 빌리는 분도 시세에 합당하게, 서로 국민화합으로 나아가야 하지, 그렇지 않고는 이 농지제도 백번해도 안됩니다. 서로 화합해서 농촌의 올바른 질서를 확립해야겠다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움터야만 농촌이 바로 될 것이 아니고, 가격문제, 부채, 기계문제 등이 많습니다만, 이 여러가지 중에서 가장 소유제도를, 그중 하나로써 農地制度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고삼식 : 저희 농민들의 욕심 같지만, 방위세마냥 목적법을 해서 時限法을 만들어서라도 농민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읍니다.

金聖昊 : 모든 정책은 제도가 확립되어야만 항구적이고 지속성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地方自治制가 되면, 농촌의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남상긍(임대인) : 소이면 조합장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農地購入資金의 無利子 지원을 요망합니다. 지원을 해준다 해도 이자를 주고 나면 상환능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金聖昊 : 일단은 賃借地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땅 빌리신 분은 임차료 낼것 아닙니까? 그 임차료가 농지가 상환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그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임차료 대신에 5%의 이자와 상환금을 내는 셈입니다.

남상긍 :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임대료 수준은 零細賃貸農의 생계보장이 전제되어야 하고, 賃貸地 回收의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金聖昊 : 토론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이번 座談會 준비에 애써주신 음성군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司 會 : 이상으로 좌담회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Ⅵ. 忠南 禮山郡 座談會

가. 開催日時 및 場所

日 時: 1986. 9.29. 오후 3 시.

場 所: 郡廳 會議室

나. 討論參加者 및 參席者

資料說明: 全敬植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討 論 者

<團 體>	김선규	(농지개량조합장)
	이근용	(단위농협장)
<自作農>	정민영	(예산읍 창소리)
	강석민	(예산읍 창소리)
	김세환	(삽교읍 상하 1 리)
	이형주	(오가면 좌방 1 리)
	김진완	(오가면 원평 1 리)
<賃借農>	안병준	(삽교읍 방아리)
	최명식	(신양면 신양 2 리)
	김영식	(덕산면 사동리)
	김성배	(고덕면 몽곡 1 리)
	권오현	(응봉면 중곡리)
<賃貸人>	박병하	(예산읍 신례원리)
	신동설	(신양면 대덕리)
<參加者>	權正鉉	(農水產部 農地課長)
	정춘희	(忠淸南道 農地課長)
	朴勝瑄	(禮山郡 郡守)
	愼鏞彦	(禮山郡 農產課長)

다. 討議內容

全敬植 (韓國農村經濟研究院) : 역사적으로 유서깊은 예산군에서 군수님, 농민단체장, 농민대표여러분을 모시고 農地制度改善에 관한 좌담회를 갖게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改善案은 저희 研究院에서 그동안 연구해온 것에 기초로 하여 지난번 서울공청회 때의 여론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 案에 대한 여러분들의 진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資料說明은 省略).

정민영 (자작농) : 먼저 농촌을 걱정하시는 農政當局, 農村經濟研究院에서 바쁘신데 저희 고장을 찾아주시고 여기 오신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작농이기 때문에 그간 신문에 농지제도 개선에 관한기사가 오르내렸읍니다만, 주의깊게 읽어보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오늘 군수님으로부터 참석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 이 자리에 참석했읍니다. 느낀바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農村問題를 걱정한 나머지 이런 배려를 해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만시지탄을 금치 못합니다. 늦었어요. 좀더 일찍 이런 걱정을 했더라면,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을 시기가 도달했다고 봅니다. 거기 수반해서 나누어주신 제도 개선안 내용을 어제 저녁에 읽어보니 아주 잘되어 있어요. 꼭 필요한 계기라고 찬성합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農村所得이 都市所得에 비하여 상당히 뒤지고 있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적에, 이 賃借農問題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농촌문제 전반을 논할 때 지엽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농토가 도시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느냐, 이것을 생각해보면 농촌소득이 낮아서 일년 농사를 지어서 수입되는 것을 갖고 생활을 하다 보니 돈이 모자라니까, 자꾸 땅을 팔아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농사를 짓다가 수지가 안맞아서 탈농촌을 하여 도시로 나간사람 등등으로 말미암아 농토가 자꾸 도시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土地改革을 한번 실시했을 때, 그때 당시 정부에서 전

부 농민손으로 들어오도록 배려를 해줬는데, 다시 지금 30%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참 놀랠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根本問題를 해결하려면, 농산물의 價格保障制度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것만 가지고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일년동안 어느 작물을 택해 수십만원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서 서울로 차를 대절해 싣고가서 보니까 市場時勢가 낮아서 오히려 운임을 물어주고 내버리고 오는 경우가 있읍니다. 작년에 저희 부락에서 쪽파가 그런 사태를 빚어, 쪽파를 다시 실어다가 지방 형무소나 군부대에 그냥 희사한 일이 있었읍니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안정이 안되고 가격제도가 보장이 안되어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정부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아무리 농촌을 잘 살게 하고 싶어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제 임차농이 논을 사고자 할 경우, 정부에서 土地購入資金을 대주시겠다고 되어있는데 그 이율이 2년거치 18년 상환으로 연리 5%라고 하셨는데, 이 5%란 이자는 굉장히 싼 이자지요. 농협이자가 14.5%, 지금 영농자금 이자가 8%인데 비하면 굉장히 싼 이자인데, 거기다 더 내려서 5%로 해준다는데 대해 고맙기는 한이 없으나, 이 5% 내고는 농사가 채산이 안맞읍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서 계산해보니까 그저 3%선으로 대부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의 賃借料 지불하는 선이 되겠읍니다. 3% 이상인 5%로 한다면, 지금 현재의 임차율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이런점을 배려해 주시고, 또한 零細農家를 保護하겠다는 취지하에서 이 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농이 무단히 권리침해를 당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래서 이 점은 상호 원만한 타협을 해가지고 또 본인들끼리 안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유관기관에서 중간에 나오셔서 국민의 基本權, 基本資産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용히 넘어 갔으면 하는것이 제 소망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지금 강력히 추진하신다고 할적에, 정부의 豫算도 얼마나 확보됐는지 모르겠읍니다만, 토지를 사고자 하는 수 많은 농민에게 모

두 대부해 주실 돈도 없을테고, 오히려 저는 조용히 걱정을 했어요. 지금 꼭 논밭을 팔아야 될 입장에 있는데, 도시분들이 와서 사지 않으면 농촌분들이 사야되는데, 농촌에서 논을 살만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논을 사는게 아니라 都市에다가 投資를 합니다. 결국 그 논을 사고자 하는 아주 零細農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논을 사야할 입장인데 이런 분들은 논을 살 실력이 됩니까, 또 자금을 정부에서 대출을 줘서 논을 산다하더라도 그분들이 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땅값밖에 떨어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농촌의 발전이 오히려 저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 봤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용 (단위농협장) : 이번 試案으로 마련한 농지제도 개선안은, 사실 농민에게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라하여 환영하는 바 입니다.

또 기접수된 문안에 대해 제가 직접 검토를 해봤읍니다. 그랬더니 정말 참 농촌의 실정을 깊이있게 다룬 시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느꼈읍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시지탄이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농민을 보호한다는 그 뜻이, 깊이 있는 법안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농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데는 상당한 뒷받침이 될 법안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저는 세가지 측면을 놓고 생각해 봤읍니다.

저는, 명색이 組合長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농민계층하고 대화가 되고 또 시간이 있으면 농사문제 상담에 응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이 지역은 상당히 평온한 지역입니다. 저희는 사실 아까 30%가 賃借農이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읍니다. 사실 이 지역은 農地問題, 賃借問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본 일도 없고, 나름대로 농민들이 자기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점에 도달하지는 않았읍니다. 다만, 저는 이것을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지는 반드시 農民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물론 원칙이죠. 이것은 헌법에도 보장된 일입니다. 다만, 施行이 잘 안되고 있죠. 그러면 왜 농민소유가 안되느냐 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하고 있읍니다.

하나는 농지가 産業化, 都市化로 인해 점차 침식이 되고 있다. 그 침식되는 과정을 통해서 농지가 投機對象이 되어 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읍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농업에 대한 收益性을 보장해 주는 것이 선행되야, 우리 욕심으로 생각할적에 임차, 임대농 이것보다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가격이 우선 보장이 돼야 하는것이 先決問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지가 자꾸 점차 도시인의 수중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 투기를 막지 못하는데서 오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민들이 사실 농지에 대하여 큰 애착심이 없읍니다. 농지를 주어도 농사 안 짓읍니다.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實例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융자관계도 이미 지적이 됐지만, 또 규제관계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저는 1950년도 農地改革을 체험한 세대의 한사람 입니다. 그때 지나친 强制性을 띤 법에 의해 시행이 되어, 많은 착오가 된 것이 문제가 되어 사실 그 후에 다시 또 환원이 됐죠. 그런것을 볼 때 오늘의 시안이 지나치게 規制가 선행된다면, 농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이 오히려 농민에게不利益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불행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나친 규제는 사실 삼가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농민들이,특히 남의 논 몇마지기 짓고있는 영세농들이 그 농토마저 뺏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우마저 갖고 있읍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규제가 선행돼서는 안되겠다, 또 반드시 지역간의 劃一的方法에 의해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읍니다. 예산지역은 투기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을 투기지역과 똑같은 양상으로 묶어 놓는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사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안을 공청회고 뭐고 그대로 시행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읍니다. 또 법이라는 것이 항상 공청회만 듣다보면 문제가 야기되고 해서 사실 그 내용을 엄격히 검토해 볼 적에는 그 시안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이 지역간의 調整問題, 이것은 사실 投機를 목적으로 해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은 20%도 좋고,

10 %도 좋고, 임차료에 대한 큰 관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만 해주면 되고, 자신의 名義도 그냥 지속만 해주면 된다는 이런 정도의 사람도 얼마든지 있읍니다.

여기도 서울사람이 약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所得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소득을 목표로 투자할수가 없죠. 그만한 소득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차 투기의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은 도시사람의 투기의 손으로 넘어갔고, 전혀 순수하게 농사만을 지을 땅으로 여겨지는 곳은 도시사람 손으로 넘어가지 않읍니다. 갈수가 없지요. 오히려 賣買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양상을 볼때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대로, 왜 도시사람들이 농촌에 침입하느냐, 이것을 강력한 법의 제재, 또는 법이 뒷받침해서 막아주어야 농민이 의욕을 갖고 살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개선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사상누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투기대상이 되어있는 지역, 이 농지에 대해서는 무슨방법을 써서라도, 정부가 强制性을 띠어서라도 보호해 줘야 하고, 농민의 손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농민이 부자가 돼서는 안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농민도 좀 부자가 되어야지, 투기붐이 일어 농지가 몇배씩 오른다면 농민도 부자가 되어야지, 농민은 항상 좋은 조건의 좋은 위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도시사람에게 빼앗기는 식으로 이렇게 억울하게만 농민이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간에 완전히 규제하여 도시투기 지역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하여 막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사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 봤읍니다. 지금 논 한 평에 대해 粗收益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니까 보편적으로 8백원대로 보입니다.

그러면 경비를 제하고 보면 純收益이 얼마나 될 것인가? 약 50 %로봐서 (사실 50 %도 안되지만) 인건비, 비료대, 약대 대충 들어가는 것을 따져보니 논 한평에 400원정도의 순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비교적 좋은 곳의 논 한평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만원이라해도,순수익 400원으로 만원짜리 땅을 사려면 상환할때까지 적어도 25년이 걸립니다.

정말 뭔가 잘못됐읍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아까 지적한 대로 農家所得增大, 소득의 保障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농산물의 收益性이 낮은거죠. 여담 같읍니다만, 저는 사실 정부수립후 물가가 안정되는 데에는 농산물이 큰 역할을 했다. 즉, 정부에 농민이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분도 계시지만 매일 같이 물가동향을 체크하는 것이 30여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농산물이 19개 품목이라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거의 경제안정, 물가안정, 한자리 숫자는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기여를 한 농민에게 이러한 대접이 진작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특히 농토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농업에 대한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生産意慾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權正鉉 (農水産部 農地課長) : 조합장님의 지당하신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부모님이 지리산 밑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저도 서울에 있으니까, 다들 이처럼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는 이런 입장이 아닐까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서 이정도라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농촌이고 도시고 할것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만, 불화, 폭발할것 같은 감정은 억제를 해 주시고, 이것이 農政全般에 관한 討議가 되어서는 저희 목적과는 상관이 멀어집니다.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유통문제도 생산구조부터 시작해서 시장구조적 문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균형적으로 발전해야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너무 끝없는 얘기보다는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해 주십시요.

김세환 (자작농) : 정부에서 농촌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셔서 저희 농민의 사기가 지금 한창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더구나 農地制度改善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계기가

됐는데 지금 마이너스 농사를 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案은 임차농을 自作農으로 이끄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보완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농지는 지력증진이 첫째인데 임차를 하다보면, 3년이상이라고 하셨는데 3년 갖고서는 도저히 안되는것 같읍니다.

3년동안에 어떻게 지력증진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가에 의문이 가고 이것을 더 보완해 가자면 5년이상, 10년이상으로 이끌어 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임대를 하는 땅 임자가 5년이나 10년동안에 임대를 해서, 그 안에 자기가 도저히 땅을 유지못하여 賣買를 한다고 할 때, 우리 賃借農에게 장기저리자금으로 해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읍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읍의 정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연리 3%정도로 해서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신다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읍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기업체가 마이너스경제일 경우 특별자금을 지원하듯이, 농촌에 묻혀 농사짓는 사람에게도 특별지원자금을 수립해 주셔서 우리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다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83년도에 복합영농을 이끌다가 도입 소를 들여왔읍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구입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畜産資金을 저희가 직접 손댔던 바, 실패를 보았읍니다. 이 뒷받침을 政府가 해주셨다면, 저희에게도 특별지원자금을 주었더라면 현재까지 어려움이 그대로 이끌 수 있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지구입자금도 연리 3%나,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特別資金으로 막아 주신다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나 해서 한말씀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식 : 지금 말씀하신 賃借期間에 대하여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요. 여러분의 資料에는 3년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앞으로 임대차는, 구두계약으로 서로 일년동안 신의가 가는 사람끼리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文書

化를 전제로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임차기간은 최소한 3년으로서로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갱신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또 한가지, 기간을 장기간 했을 때의 폐단도 있읍니다. 부작용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임대차의 性質에 따라서 자꾸 연작을 기피하니까, 하우스의 경우 1년하고 딴 곳으로 옮겨다녀야 하거던요. 그것은 임차인의입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가지 임차형태에 따라 각각 입니다. 그러니까 原則을 최소한 3년이상으로 한다는 것이지 3년까지로 끝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러분의 말씀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상당히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農地購入資金인데 이 자금이라는 것이 국가재정을 감안해서 이뤄질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과거의 영농자금은 주로 사실상 나눠먹기식의 자금방출이었읍니다. 그런데 이번 농지기금은 꼭 필요한 사람, 꼭 그 융자를 받아 自立農家로 육성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일년에 단 한사람이라도 상관없이 그러한 사람을 정해야 겠다는 의욕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에는 도저히 국가적으로는 못따라 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뿐아니라 선진국가에서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위 段階的인 發展을 해나가기 위해서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우리가 꼭 뒤를 밀어줘야 한다는 확신이 섰을때 이것을 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금의 한도액은 가급적 정하지 말고, 또 이자율에 대하여 5%는 너무 과하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이자도 안받고 그냥 융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또 일단 回收되어서 다른 사람한테로 갈 자금입니다. 지나치게 거치기간이 길거나 장기화 됐을 때는 資金回轉이 잘 안돼요. 따라서 그런면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5%로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 그건 앞으로 정책당국에서 어떻게 해결하실지 저희는 모르겠읍니다. 다만, 5%로 정한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2년거치 18년상환으로 연리 5%의 근거는 현재 임대료를 30%로볼 때 (보통작물입니다.) 지금 내고 있는 임차료만큼 20년후에 그만큼 내가면 자꾸 원금에서 제해나가니까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잡은 것인데, 그건 여러가지 계산방법, 각자 여건에 따라 또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못을 박아서 말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닌데 다만, 그정도로 생각해 봤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다각도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주 (자작농) : 농지과장하고 硏究院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다 보니까 한시간 이상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다보니 저희들이 말씀드릴 시간이 없읍니다. 요즘 農水産部에서 농가에 베푸는 시책을 하나하나 지상을 통해 들어볼적에 조금 입맛이 당깁니다. 전만해도 농수산부라면 이것이 經濟企劃院을 위해서 일하는 곳인지, 農民을 위해 일하는 곳인지 모를 정도였읍니다. 뭐 참깨를 들여온다, 고추를 들여온다, 소뼈다귀를 들여온다. 이래가지고 農村을 그야말로 어렵게 만들어 졌었읍니다. 그런데 요전번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조금 구미가 당긴다는 것입니다. 주정원료인 보리를 사 들여올 수 있는데, 우리 農家所得을 위해서보리를 국내에서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강력히 하실적에 참 고마운 분이고, 정말 농민을 위하는 장관님이라고 생각했읍니다. 그런 때에 마침 농민을 위한 賃貸借法이 나온다니 과연 앞으로 농촌에 대한 관이 달라 지는 것이 아니냐 하여 참 고맙게 생각했읍니다.

우리가 해방전에 우리 농민들이 못살았다, 굶주렸다, 헐벗었다 하는 것이 왜 그랬읍니까? 小作農하다 보니까 농가소득이 없어서 못살고 못먹고 못입었읍니다. 小作料 내고 나면 남은 것이 없었읍니다. 그당시 소작이 전체 농지의 60%였답니다. 그런데 통계 나온것을 보니까 임차농지가 70년까지는 17.8%, 80년대에 와서 22%가 됐답니다. 그러면 不在地主까지 합하면 얼마냐? 80년도부터 85년년사이의 5년동안에 임차농지가 10%이상이나 늘어납니다. 그전의 10년동안에는 3.2% 밖에 안 늘어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10년 지나면 얼마나 더 늘겠읍니까! 10년 지나면 20%, 20년이 지나면 40%가 됩니다. 현재보다 70% 이상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위험입니다. 진작 다뤄졌어야 할 문제입니다. 만일 그냥 둔다면 현재도 어려운 우리의 농가살

림이 더욱 어려운 처지가 될 것입니다. 農地制度를 개선해서 賃借料를 조정하고 또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融資惠澤을 주어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나간다니 참으로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될 줄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전에 정민영씨도 말씀을 하셨고 몇분이 말했지만, 농가에서 經濟力이 없기 때문에 주택융자로 집 지어주고도 현재까지 상환하지 못한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읍니다. 또 논을 사 가지고,농가소득이 없다보니 상환할 능력이 안되면 그것을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좀 더 낮춰주고 농가의 소득을 올려주면, 논을팔지도 않읍니다. 오히려 농지를 더 사려고 하지 원체 어려우니까 자꾸 내놓는 것입니다. 농지과장님이 그런 것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말씀하시지 말라고 했지만, 농가를 어렵지 않게하는 방법,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農產物輸入을 덜하고, 농가에서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농수산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농가에서도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資源이 있는데 농수산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눈을 뜨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전에도 農民代表가 가서 그런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읍니다만, 그 얘기는 전혀 지상에서 보도되지 않았읍니다. 안타깝게 생각했읍니다. 우리나라 논이나 밭이나 모두 밀이 잘됩니다. 品種更新을 해서 조기수확할 수 있게 개량을 해서 해보자 이겁니다. 보리씨 현재 농가에 없읍니다. 수지가 안맞다 보니까 씨앗까지 안줘서, 농가가 지금 가려면 새로 씨를 농가에 공급해줘야 합니다. 밀씨 없읍니다. 목화씨는 찾아볼 수도 없읍니다.

우리나라 토지에서 목화, 밀이 안되냐 하면 다 잘됩니다. 그건 모두가 농가의 所得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재 미작을 위주로 하는 논에서 다른 이모작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논 안팔아 먹읍니다. 왜 팝니까, 수지 맞는데. 그 施策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저도 깜짝 놀랐읍니다.

80년도에 21%였던 賃借地가 85년에 30.5%가 되었다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토지가 넘어간 것입니까! 수지가 안맞으니까 자꾸 넘어가

는 거요. 앞으로 10년후, 20년후면 다 넘어갑니다. 왜정때하고 똑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되겠고, 농가소득원을 찾는데도 당국에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번 장관님 말씀 하신대로, 보리도 우리나라에서 갈고, 또 밀도 갈고, 목화도 갈고하여 소득을 높여야 합니다.

왜 전부 수입해서 씁니까! 또 이렇게 농가소득을 올려야만,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땅을 산다해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기회에 農村經濟硏究院에서도 농가의 所得增大方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경제가 허락하는 한, 토지구입자금도 무모하게 아무나 막 주지말고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킬 농가를 엄중히 선정해 주시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전반적으로 잘살 수 있는 방안, 더 좀 연구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관심있게 하나 봤읍니다. 바나나를 7월달부터 과일 안 나올 때 대만서 수입을 하고, 그대신 우리나라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것을 듣고, 그러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신동설 (임대인) : 신동설입니다. 저는 임대인의 한사람입니다. 그동안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農業政策面에 잘살 수 있는 방안을 여러가지제시해서 저는 거기에는 언급하지 않고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시안은 부재지주의 농지를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토없는 농민에게 주겠다는 것으로, 우선 부재지주도 크게 나누어 在村地主와 원거리 不在地主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은 원거리의 부재지주가 투기하고 있는 것은 적고, 단지 부락에서 이웃끼리의 재촌지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시안을 보면 임차료를 30%선으로 한다든가 대략 시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지방여론을 수렴해서 듣건데는 30%선이라면지주의 입장에서는 100% 소득을 못낼망정 소작을 주지 못할 형편이 아닌

가 하는 여론입니다. 제 자신도 농토를 답 9,000평 가지고 있고, 그중 6,000평은 임대를 하고 있읍니다. 자작은 약 3,000평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원래부터 농군이 아닙니다. 공무원 생활 20년하다가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있읍니다. 제가 고향에 처음 내려온 10년전에는 농사를 전부 지었읍니다. 의욕적으로 해봤으나 경제적 타산도 맞지않고 勞動力도 점점 없어져서 임대를 하고, 지금은 3,000평만을 직접 짓고 있읍니다.

저뿐 아니라 몇몇 재촌지주의 여론을 들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를 받고는 임대를 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규제를 강력히 한다고 이뤄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예산군만 하더라도 예산읍내는 도시근교의 전답보다 비싼곳도 있고 논보다도 밭의 값이 비싼데, 서로 유용도가 다르고, 또 산간지대는 적합치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임차료의 30%선도 논에 다르고 밭에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작목별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것을 農地委員會에서 장악한다는데, 농지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위치가 될지, 어떠한 권한을 부여할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농지관리위원회가 해결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具體的인 硏究가 있어야 큰 부작용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책적인 면보다 제가 인근에서 보고 들은대로 말씀 드렸읍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준 (임차농) : 삽교읍 안병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임차농의 대표로서 참석했읍니다. 그래서 신선생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이랄까, 순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機械化營農을 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사회자가 소개한대로 논 2만 2천평을 경작하고 있는데 제 논은 만평입니다. 그런데 값비싼 기계를 3천여만원어치 들여놓고 보니, 제 논만 지어서는 수지가 도저히 맞지도 않고 품팔러 다녀도 힘에 부치어 어렵고, 사실상 저는 위탁영농을 시도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논 임자(지주들)가 기계를 쓰지 않읍니다.

왜냐하면 모심고 전부 갈고 썰어주고, 일절 벼베기까지 하면 대강 기계

운영비가 5～6만원이면 경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농촌에 그런대로 경운기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용을 안해요. 그래서 제가 기계를 1년 묵히며 연구한 나머지, 지금 현재 임차농을 하게 됐읍니다. 사실은 임차농이 아닌 委託營農을 하려는 것인데 임차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깜짝 놀래시겠지만, 어떤사람은 모은행을 하며 모심어 주고 소독 2번 하는것 까지 경영비로 3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재값을 빼고 말하자면 품값으로 3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도 이것을 시도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했읍니다. 사실상 기계를 가지고 만여평을 운영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기계값을 못 갚읍니다. 정부에서 기계를 그냥 주면 모를까. 기계 3천만원을 주고 들여놓고 아무리 기계품 팔아 봤자 200만원 정도 벌지, 천만원 못 법니다. 여러분, 농사 지으셔서 다 잘 아시지만 80㎏짜리 농사 잘 지으면 네가마가 나오지 않읍니까? 두가마 주고 나면 두가마 남는 것은 사실은 경영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국에서 저와 같이 하는 사람이 많읍니다.

저는 앞으로 기계화의 물결에 따라서 전적으로 농촌에 절대로 자기가 농사를 안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짓겠읍니까? 농사 어려워서 안 짓읍니다. 기계가 앞으로 많이 보급되고 나면, 건방진것 같지만 지금의 이 임차농 문제는 소소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계화의 물결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임차농이 아니라 委託營農을 가능한 보급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걱정되는 것은 위탁영농을 하려고 하면, 危險負擔이 되니까 안 맡깁니다. 농사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불안한지, 經營費만 받는다고 하면 안 맡깁니다. 그러나 쌀을 두가마 준다고 하면 저에게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기계화가 됨으로써 재촌지주도 絕對的으로 농사를 자기가 안지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委託營農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점을 좀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좀 수렴하시고 그 이상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권정현 : 두가마는 선불입니까, 후불입니까?

안병준 : 추수후에 줍니다. 제 얘기는 機械化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30%를 賃借料로 정한다면, 이면에 內容的으로 陰性化되므로 하나마나 입니다.

권정현 : 그래서 우리가 「농지제도개선 방안」의 12 Page를 보면, "재촌지주는 위탁영농 및 타인을 고용하여 영농허용"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도시 부재지주는 안되고, 재촌지주는 위탁영농을 허용합니다.

이근용 : 아까 삽교에서 오신 분처럼 저도 委託營農을 하고 있읍니다. 機械를 잔뜩사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동네 사람들이 200평당 한가마씩을 받고 논을 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상당히 머리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를 뺏기지 않을까, 자산들이 직접 지을려고 하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됩니다. 地域的으로 예산읍의 실정을 봐도 15년전부터 계속 200평당 한가마씩 받고 있어요. 저도 한가마씩 받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정이니까 지역별로 調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식 : 이 법이 제정되면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전혀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십시요. 재촌지주와 부재지주의 구분, 또 재촌지주의 성격등은 施行令을 만들 때 더 연구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박병하 (임대인) : 투기지역 때문에 농촌지역까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히 땅값이 떨어지는 문제를 고려해 주십시요. 林野같은 농토도 그래도 축산한다고 서울투기꾼이 와서 만졌기 때문에 평당 5천원, 만원 하는 것이지, 우리 농사꾼이 짓는다면 2, 3백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이 문제는 投機地域이 아닌 지역, 농촌에는 법이 필요 없읍니다. 경우로 다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법이 만들어 져서 오히려 농촌에 피

해가 있다고 봅니다. 걱정됩니다. 이것 한말씀 더 드렸읍니다.

죄송합니다.

: 충남 서산에서 땅을 임차해서 과수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약 8만평의 과수원을 연 5천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1억원 정도의 營農費를 들여서 농사를 하고 있읍니다. 저의 고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차인이 지금 바라는 것을 쭉 들었읍니다만 자기 것이 없어서 남의 땅을 임차하는 사람은 사실상 약자이고 빈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석상에서 자기 의사표시를 할 능력이 변변치가 못합니다. 여기서 가만히 분위기를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데, 저는 이 試案을 신문에서 보고 좋아서 혼자 박수를 쳤읍니다. 이제 정말로 약자를 위해서도 국가의 보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읍니다. 제가 임차하는예를 들면,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임대주는 사람은 전혀 관여를 안한다. 그리고 임대료는 先納해야 된다. 그리고 조건부로 재산평가액의 10%이상 임차료를 해 가지고는 이것을 일차, 이차, 삼차에 걸쳐서 입찰을 시켜서 제일 많은 사람에게 토지를 임대시키고 다른 조건을 최대한 악조건으로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차해서 농사를 3년간 지어본 결과 적자를 봤읍니다. 그래도 저는 그것을 계속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해주긴 해야 하는데 많이만 임대받으면 좋고, 그리고 천재지변과는 상관없이 계약서를 만들어 버립니다.

국가에서는 법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 법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이 법이 공포되기전 미리 계약체결을 해 버려야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미리 돈을 받고 계약체결을 하려는 이런 상황에서 심히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구제할 만한 법이 전혀 없읍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國家所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임차법이 빨리 조치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큰 면적을 하는 나는 물론, 나보다 적은 열마지기, 다섯마지기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말 주변도 별로 없으며, 그들을 위해서도 農村經濟硏究院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민 (자작농) : 예산읍에 사는 강석민입니다. 제가 사실 농수산부 담당관님과 농촌경제연구원 어른들을 모신 자리에서 제 심정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읍니다만 시간관계상 요점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賃借에서 부터 賃貸까지 하고 있읍니다. 저는 임차에 기반을 두고 지금은 조금 살만하다고 평가되나, 그러나 도시에 비하면 월등 영세하며 농촌에서는 중농으로 평가를 합니다. 제가 농사짓기 시작한지는 불과 10년 남짓 합니다. 저도 촌에서 소득이 원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처음 기반을 닦은것이 農協토지를 갖고 발판을 얻었어요.

그때 제가 동네 이장을 했읍니다. 제가 원체 땅이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어서 2년동안 거기서 재미를 봤읍니다. 그러자 그것이 경쟁입찰이 되어 제가 돈이 없어 사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또 다른 토지를 임차했읍니다. 그래서 賃借料가 지금 서산에서 오신분이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 의견입니다만, 저도 100평에 쌀이 90 *kg* 한가마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 제 나름대로 여유가있다고 여겨져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 주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임대료를 많이 주고도 고맙게 생각하느냐, 반문하실지 모르겠읍니다. 그 지역의 土地所有가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사실상사정을 해서 얻어야 했고, 주는 입장에서도 원체 어렵고 근면하니까 이것이 나해서 살아 보라는 인정을 베풀어서 제가 토지를 얻어 농사를 짓게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년간 지어서 번 돈으로 토지를 구입했어요.

이런 사례가 두 건 있읍니다만 그래서 오늘날 제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료는 여러가지로 말씀이 계셨지만,법으로 一律的으로 묶는 것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 같고, 저희지역 주민들도 그렇읍니다. 저희 동네는 임대농보다 임차농이 많읍니다.

그분들도 사실상 임차료를 낮춰 준다면 얼핏 좋아 하겠읍니다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임차를 일정하게 묶어 놓으면, 임대농이 그것만 받고는 안되겠으니 땅을 내 놓으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당장 설 자리가 없읍니다. 그런 처지에 있고하니 임차료의 일정 규정량은 더 연구해서 규정짓

는 것이 좋겠읍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나왔읍니다만,우리 농촌의 임차지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收支가 안맞아 땅을 파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어떤 토지가 만약 천만원을 받는다면, 천만원을 은행에 넣으면 10 % 이자로 계산해서 일년에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죽도록 농사를 지으면 50만원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 노골적으로 앞으로는 돈이 있어도 토지 구입을 안합니다. 왜, 농지 구입하면 일만하지 소득이 없어요. 그것을 農協에다 넣으면 가만히 있어도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있는데 왜 또 땅을 삽니까! 제가 먹고 살 것만 갖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改善方案을 보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도시 부재지주에게 財産稅를 현재에서 25배까지 가중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땅을 팔 것이 아니냐, 하는 강제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의 문제점이 다분히 있읍니다. 지금 농민들은 제일 천대를 받고 있는데, 그런대로 농촌에서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땅마지기나 있는 사람들로서 자기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있읍니다. 지금 농촌은 술렁거립니다. 50년대와 같은 토지개혁이 아니냐 해서 실제로 지주중 땅을 내놓은 사람도 있읍니다. 미리 겁을 먹은거죠. 지금 땅값이 괜찮을 때 팔아 버리자, 이렇게 한 두사람이 내놓는 것이 군중심리로 번지면 솔직히 아까 누가 지적했듯이 현재 저희 지역 논 값이 한 평에 9천원에서 만원선인데 이럴때는 단돈 5천원도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도시 부재지주를 일시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고, 부재지주도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읍니다. 投機性不在地主가 있고, 老後性不在地主도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하다가 퇴직금 기천만원 갖고 땅을 사 놓으면, 사기당할 위험없이 밥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서 農事經驗이 없으니까 그것을 임대해 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문제가 됩니다. 서울이나 천안사람이 예산에 연고가 있어 이곳의 땅을 사면 이들도 법적으로 부재지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시행과정에서 고도의 技術을 필요로하여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선 일차적으로는 투기성 부재지주는 규제를 해도 좋으나, 저소득층, 중간소득층, 노후대책성 부재지주 이런분들은 확고하게 법적으로 제외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심리적 동요가 없도록 해 주십시요.

그래서 이 법의 전체적인 것은 찬성하나, 施行過程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권정현 : 제가 우려를 해서 처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첫째, 토지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그 다음은 세금도 내년 후 내년에 25배로 매기는게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말씀 드렸었읍니다.

그 다음은 임차료 규제도 劃一的으로 몇%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 하실까봐 처음부터 그걸 우려하여 이미 말씀드린 바와같이, 장기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해서 일시에 정리하는 방법, 또 장기적으로 정책목표를 세워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저것도 하지말고 내버려 두자 하는 식이 지금까지 農地改革 이후로 이 모양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마치 예를들어 일단 운동장을 만들어야 운동을 할 것이 아닙니까! 경기 규칙이 나쁘다고 운동장을 못 만들면 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서 일단 단계적으로 가둬놓고, 장기적으로 경제질서의 歪曲現象이 안 벌어지게끔 차근차근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너무 과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정민영 :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案의 9 Page 상단에 있는 융자대상자에 관해서 입니다. 융자대상자를 새마을指導者, 營農後繼者로 해 놨는데, 실제 새마을지도자나 영농후계자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분 보다는 실제 노동력은 있고 참 잘 살려고 노력하나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짓는 이런 어려운 사람을 支援해주는 것이 우선이라 여겨집니다.

전경식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表現上의 문제이지 반드시 영농후계자나 새마을지도자로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빨리 지적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지금 정부나 연구원의 관심사가 農地管理委員會 問題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은 위원회가 제대로 안되면 여러가지로 난장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촌을 지금 얕봐서는 안됩니다. 관에서 간섭을 가급적 안하고 자기고장은 자기네가 주동이 되어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물론 强化해야 되겠고 權限도 주어져야 되겠고 또 적어도 자기문제는 자치적으로 화합의 입장에서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문제라든가 기타 분쟁조정문제도 재판까지 가더라도 농지관리위원회의 결정이 그대로 판결에 반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혹자는 농촌의 면 단위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할지 모르나 제가 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읍니다. 나는 확신을 갖고 있고, 또한 이것을 하더라도 몇개 면을 지정해서 試驗期間을 둔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완해서 農村經濟硏究院, 農水產部에서 주장하건 좌우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硏究結果 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陰性小作制, 陰性賃貸借, 이것이 형성될 것이다. 이것을 제일 우려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상당한 불이익이 올 것입니다. 일단 이 법이 확정되면, 만약 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가차없는 처벌을 고려하고 있읍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아니 그렇게 돼서는 안되고 법이 확정되면 준법정신을 앙양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무지막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농촌에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읍니다. 이제는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조금 더 말씀해 주십시요. 임대차 하시는 분들 중 발언안하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요.

김성배 (임차농) : 고덕에서 온 김성배 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별로 말씀드릴 것이 없읍니다. 그런데 단, 제가 참석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 남 부끄러울만큼 小農을 하고 또, 예산

군에서도 아주 소농가, 제일 영세농가로 알고 있읍니다. 저는 저같은 零細農家를 위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사실 아까 안병준씨께서도 기계화영농 말씀하신것도 좋은 말씀이고, 토지구입자금에 대해서도 연리 3% 아니면 2년거치 18년상환,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 고덕면은전체적으로 정확히는 모르지만, 영세농가가 20%정도 차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 단협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상 앞으로 土地購入資金을 대출할 때 2년거치 18년 상환으로 농민에게 구입자금을 줄 때, 어떤 방향으로 그 대처를 할 것이며, 아니면 또 그 액수가 클 경우 재산이 없으면 무엇을 담보로 해야 하는지,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사실상 임대를 주는 사람중에는 임차농을 하고 있는 사람이 빚이 많아서 받지 못할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영세농가들은 기계를 구입할 자금을 받을 능력도 없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상환이던 30년 상환이던간에 구입자금을 줄 때 어려운 농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영농을 한다고 했을 때도, 몇 백만원 하는 것을 連帶保證없이 그냥 주지는 않읍니다. 그리고 연대보증하는 사람도 재산이 없으면 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출받을 때 제일 곤란한 것이 영세농가의 경우입니다. 제가 알기는 고덕의 경우, 금리가 인하됐던 어쨌던간에 표면적으로는 잘사는 마을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단협에 負債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단협에 부채가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권정현 : 대상자 선정은 우리가 아직 構成段階이므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주요 기준하에서 선정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대출문제는 땅이 있으니까 다른 담보는 필요 없으며, 金利의 償還期間問題도, 이것이 20년 부담이 높으면, 금리를 5%로 해도 이것을 30년으로 하면 해마다 갚는 것이 적고, 또 遞增式으로 하면 한 3년거치로 하면 쌀값은 해마다 갚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만, 조금씩이라도 쌀값은 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년에 백만원씩 갚는 것과 3년후, 10년후 백만원 갚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

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환기간은 여러가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앞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 말씀해 주십시요.

김영식 (임차농) : 덕산사는 김영식입니다. 덕산으로 말하자면 수덕사, 수인사가 있는 고장으로 觀光地帶입니다. 거기에는 덕산온천의 농토 일부라던지 사동리를 중심으로 거의 90 %는 다 팔리고, 신촌리 시장리 80 %는 거의 다 팔렸읍니다. 그것은 지방에서 산 것이 아니라 서울,대전, 온양, 예산에서 까지 와서 산 사람도 있읍니다. 그곳은 논금이 상당하다 보니까, 다섯마지기만 팔아도 서울로 가서 집사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의 學費로 쓰는 사람도 있읍니다. 개중의 충의사앞, 덕산온천 주위 사동이라던지, 여기는 남의 농사짓는 사람이 약 50 % 됩니다. 그래서 3～4동네가 가을 추경기때만 되면 고통입니다. 이럴때 農地制度改善이 된다니까 土地分配가 되는 줄 알고 땅 산 사람이 당장 겁을 먹어 집을 사서 자기가 짓겠다는 사람도 나섭니다.

또 추수는 200평 한마지기에 도조는 처음에 70 *kg*으로 정하고 지금은 80 *kg* 주는 사람이 많아요. 개중에는 제일 비싸다는 것이 90 *kg*입니다.

면 산업계에서 계장이나 이하 직원들은 추수가 끝났으니 짚을 피고 가을갈이를 치라고 하는데 논을 떼이다 보니까 논 갈이를 안하게 됩니다.

경운기, 소 동원도 나오지 않읍니다. 그러니까 면서기들이 추운데 장갑을 끼고 부분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만 짓고 농사 떼일 것을 무엇때문에 가을갈이를 치느냐, 그러니까 퇴비를 안하여 논이 酸性化되어 가을에는 벼가 목도열병에 걸리고 죽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래서 지금도 덕산온천 주위라던지 삽교땅들은 자갈, 모래로 산성화되어 있읍니다. 심지어 면직원들이 나와서 동원을 하려고 해도 안되고, 그래서 산성화되어 퇴비를 내지 못하고 그냥 지어 먹고, 또 그냥 짓고 하는 식입니다.

권오현 (임차농) : 응봉면의 권오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말씀 참 고

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制度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집은 응봉이지만 현재 신안면에서 果樹園 10,000평을 도지얻어 3년 동안 契約을 하고, 올해 첫 농사를 지었읍니다.

제가 농사를 짓다보니 아직까지는 과수가 논에 비해서 경기가 좋습니다.

이런 제도가 신문에 나고 하니까 주위에서 도지하는 사람도 걱정을 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 서울에 있는 분들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과수원 소유자들은 작년만해도 이곳에 내려오면 큰소리를 빵빵치고 했는데, 이것이 시행되리란 발표가 있은 후로는 상당히 고분고분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민층에서는 상당히 좋지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좋은 硏究를 해 주십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賃貸借契約을 할 때 꼭 委員會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저는 이미 3년동안 1,550만원을 先拂로 지불했읍니다. 이전에는 1,000만원 이었읍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하면 아직까지 과수업이 흑자경영이기 때문이라 서로 경쟁이 돼서 입니다. 사실 3년동안에 50% 올랐다는 결론이죠. 저도 남의 상태를 보고 손해볼 것 같지는 않아서 결정하여 과수농사를 짓읍니다만, 3년동안에 50%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오른거죠!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주고 저는 농사를 짓고, 또 앞으로 농지세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쪽을 보면 1,550만원을 받으면 그에 대한 所得稅는 일원도 내지 않고 땀도 안 흘리는 셈 입니다. 앞으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많이 연구좀 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과수경기가 약간 좋다보니까 선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과수농사를 짓다보면 여름에 장마피해, 태풍피해, 병충해피해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농사를 失敗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가을에 농사짓고 나서 임차료를 지불하다보면, 농사가 잘 안되었으니 봄의 결정에서 몇%좀 깍자고 임차인이 지주측에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주측에서는 봄에 계약한 것 보다 많이 못 받을까봐 서서히 先拂制度가 시행되어 지금은 거의 다 선불지급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대료를 선불로 지불하다보니, 저도 1,550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또 농약비, 인건비 등 쓰다

보니, 돈이 많으면 아예 임차를 하지 않겠지만, 제가 남의 돈 사채를 빌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경영의 惡化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름도 조금 덜 주게되고 地力增進도 저해하여 많은 경영 악화가 됩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논농사는 기업투자가 별로 없으나 과수원의 경우는 大規模 企業投資가 많이 있어서 저희같은 소규모 과수업은 위축감을 느낍니다. 제가 응봉집에 3천평이 있어 만삼천평을 경영하지만 나는 언제 저런 많은 돈을 갖고큰 과수원을 운영하나 위축감이 상당합니다. 그런 대기업들의 현재 갖고 있는 농장을 좀 억제해 주시고 앞으로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런것도 점차적으로 농민 손에 의해서 과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農地委員 선정에 있어서 동네내에서 덕망있고 그런분들은 대개 부농축에 속한 분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임차하는 사람, 빈농의 사정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입장에 설 수 있는 위원 선정을 좀 연구해 주십시요. 그리고 농지구입의 경우, 지금 地價下落을 걱정하시고 하는데, 시골 땅값이 내려가면 사실 재산면에서는 농민들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렇지만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역시 농민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골에서 몇천평, 몇 만평 갖고있는 분이 걱정을 하고 있지, 저같이 소규모 갖고있는 사람은 이것이 機會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또 하나의 반가운 생각으로 기대가 큽니다. 땅값이 약간 주춤했을 때 내가 논 한마지기라도 더 사고 싶고, 과수원땅 한평이라도 더 늘리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토지구입자금 配定問題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고 싶읍니다.

시간이 없는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옆분이 말씀하셨고 단협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없는 사람이 농협에서 돈을 얻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협에서 100만원, 200만원, 일반 대출을 얻으려 해도 사실 요즘에는 도장 찍어 주기를 상당히 꺼려해요. 그런데 1,500 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은 서민측에서는 부담스럽고, 배정문제에 있어서도 서민이면 優先權을 주지 않읍니다. 아까 거기 초안에서도 나왔지만 아직 예정이겠지요. 새마을지도자나 영농후계자 이렇게 못을 박는 것 보다는 현재

임차를 하고 있는 의욕적인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그 사람이 임차하지 않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짓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더 할 말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그치겠읍니다.

최명식 (임차농) : 신양군에 사는 최명식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온 이유는 零細農家로서 무척 일손이 바쁜데 2시반쯤 올려고 했는데 콤바인이 고장나는 바람에 닦지도 못하고 달려 왔읍니다. 저도 신양면에서 남의 논 4,000평을 짓고 있는데, 저는 50%씩 타작하고 있읍니다. 저도 기계로 농사짓는 사람인데, 영세하기로는 뭐라 할 말이 없읍니다. 그리고 제가 새마을지도자를 한 6년하고 있어 배울 점은 많은데, 제가 일이 바쁘면 회의에 참석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 다음에 참석하기도 민망스럽고 · · · · · . 그러다보니 부모님께서는 벌어 먹기도 힘든데 새마을지도자는 왜 하느냐고 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재미있고 동네를 위해서 계속하고 있읍니다. 기계하고 시달리다 보면 피곤이 쌓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제가 기계를 작년에 약 2천만원 정도 들였읍니다. 콤바인, 트랙터 등 그런데 기계를 가져다 쓰고난 뒤 담보가 필요하다고 하니 제가 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할 수 없이 이장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장님 땅을 담보로 했어요. 한푼한푼 벌어서 지금 예금을 하고 있읍니다. 零細農家로서는 擔保, 땅 없이도 기계를 구입할 수 있으면 합니다.

김진완 (자작농) : 농민 후계자로서 농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러한 법안을 만들고 제안을 하게 된 것이 농민이 농토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던 이 시안의 주인공은 농민들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耕作함에있어 우선 所得이 保障돼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의 안정, 농산물가격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농산물의 選別輸入과 一貫性있는 정책수립, 아울러 統計등에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우리 농민들도 소득을 높히려면 경제원칙에 의해 수요와 공급에 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올려야 겠읍니다. 그러한 균형을 위해서는 농업의 專業化 내지는 機械化, 지역 특성 그렇잖으면 작목의 다양화를 이루어 규모를 확대하고 그렇게 하여 우리 소득이 높아질 때, 앞으로 먼 장래에 이러한 농지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 (농지개량조합장) :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座談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제시해 주신 賃借料, 農地管理委員會에 대한 여러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읍니다. 오히려실무적으로 당사자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깊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차료의 결정에 自律性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농촌은 농촌대로의 인심이 있기 때문에 그 농촌인심을 反해서 · 어떤 정책이 수립됐을 경우 엄청난 소동이 일어날 경우,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농가 인구가 지금 23～25%라고 하지만 전체 국민의 80%가 뿌리는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농촌에 관련된 문제는 엄청난 반응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農村問題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며 자율적인 측면에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어디까지나 零細農民을 위해서 보장이 되고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농지관리위원회 機能에 있어서는 되도록 强制的인 기능을 줄여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농촌도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농촌도 自律的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권오현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構成 해 나가는데 있어 영세농가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닌 쌍방에 中立的인 위원으로 구성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요즘 인구증가 억제책으로 아들 딸 구별없이하나 낳기하고 있는데, 15년이나 20년후 소위 2천년대에 가서 농촌도 외아들, 도시도 외아들 상태의 사회가 구성됐을 때 과연 누가 농촌을 지킬

것인가, 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농촌에 남게 하겠는지 염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농촌개발시설이 90년대에 이루어져야, 독신자들도 과감하게 기계영농을 할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또 독신영농자에 대한 문제가 고려돼야 될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말해 주로 오늘 賃借農에 대한 얘기가 됐읍니다만 도시근교는 농산물의 생산보다는 지가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업주들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그 지역은 임대영농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읍니다. 때문에 賃借農과 委託農이 잘 연결되어 어떤 무리없이 이루어져야만이 農村開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몇가지 생각나는 바를 말씀드렸읍니다.

이근용 :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 개선안 중에서 稅制改善, 특히 증여세의 개선을 환영합니다. 91년까지 시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恒久的으로 종속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세제상의 山林地, 草地의 공제면적은 문제입니다. 현행 공제면적 정도라면 영세농이 아니라 대농이거나 대규모 지주입니다. 단지 농지의 공제면적은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朴勝瑄 (군수) :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농지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농정 전반에 걸쳐 진지하고 자세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가인구의 老齡化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노령화의 정도는 심각한 편이며, 이로 인해 유휴농지가 발생하거나 농지가 粗放的으로 이용되는 등 손이 많이 생기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 농촌에는 계층간의 소득격차는 크지 않지만 절대빈곤층이 존재 합니다. 이들에 대한 對策도 수반되어야 農村內部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동안 농민여러분의 의견 잘 들었읍니다.

전경식 :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읍니다. 진지한 토론이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 농민단체대표, 농민대표 여러분의 의견이 농지제도 개선 나아가 농촌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좌담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 농지과장님, 산업행정 계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Ⅶ. 江原 洪川郡 座談會

가. 開催日時 및 場所

日 時: 1986. 9.30. 오후1시.

場 所: 洪川郡廳 會議室

나. 討論參加者 및 參席者

資料說明:	金聖昊	(韓國農村經濟硏究院 硏究委員)
討 論 者		
<團 體>	龍範重	(農地改良組合長)
	李鍾鎬	(單位農協長)
<自作農>	閔丙星	(홍천읍 신장대 2리)
	金洙明	(화촌면 구성포 1리)
	史榮漢	(서석면 어촌 1리)
	金東源	(서면 반곡리)
	李奎洪	(북방면 소매곡리)
<賃借農>	李春宰	(화촌면 성산 2리)
	康文栢	(서석면 생곡 1리)
	金鍾殷	(남면 양덕원 1리)
	朴性達	(북방면 상화계리)
	幸興根	(내면 자은 2리)
<賃貸人>	李淳起	(홍천읍 결운 1리)
	宋永燮	(화촌면 외삼포리)
	龍鎬璇	(남면 시동 3리)
<參席者>	이중근	(江原道 農地課長)
	김이도	(江原道 農政課長)
	하교진	(洪川郡 郡守)
	이경환	(洪川郡 産業課長)

다. 討議內容

司會(이경환, 洪川郡 産業課長) : 지금까지 경청하신 農地制度改善案에 대한 金聖昊 研究委員의 資料說明에서 의문점이나 보완점,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십시요.

閔丙星(自作農) : 우선 의문나는 점을 질문하고, 그리고 나서 보완점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農地改革法에 의하면 農地所有上限線이 3정보인데 실제로 경작을 하다보니 機械化營農이 되면서 9천평 이상은 능력이 있어도 사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서 경작하는 사례가 있읍니다. 이런 것도 법의 저촉을 받으므로, 상한선을 늘리는 방안이 없는지요?

그리고 또, 농민에게 농지를 양도 혹은 상속하면 세금을 변제해 주는 기간을 87년부터 91년 12월 30일로 못을 박아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농지를 사실상 어떻게 갖게 되었건, 특히나 노력을 해서 소득이 된 것을 자기 형편에 의해서 이농했다든지 한 경우, 농지가격이 하락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임대료에 대해 전국적인 평균치 말고, 지역별로 農地管理委員會가 관장을 한다는데, 사실상 그 관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겠는지요? 그 다음에 이 법의 기본핵심은 경자유전의 원칙인 듯한데 정부가 5% 이자에 2년거치 18년 분할상환한다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임대료를 내는 것을 그대로 내어도 20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내 놓는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지요. 이런 점들이 의문이 되어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金聖昊(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委員) : 우선 3정보 상한은 이렇습니다. 農地改革法에 의해 3정보 이상 못 갖는다는 법적 금지조항은 사실과 틀립니다. 改革法의 3정보라는 것은 농지개혁 당시 分配上限입니다.

3정보 이상인 농지는 정부가 매수하고, 3정보 이하 농가에게만 정부가

분배하겠다는 것이지 所有上限이 아닙니다. 현재 그렇게 알려져 왔는데 이것은 分配上限이지 所有上限이 아닙니다.

제가 1974년경에 農水産部 農地局의 地政課長을 했을 때, 3정보 이상 가진분들을 농지개혁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고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더니, 농지개혁법은 時限法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현재의 3정보 상한이라는 것은 뭐냐, 農地改革法 施行規則 제52조를 보면 농지매매를 증명할 때 농지 매입자는 몇 정보를 소유했느냐고 적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것을 막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벌은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3정보 상한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사지 그 규제때문에 못사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년 전에 1,500호를 조사를 해 보았더니, 農地所有 上限制 때문에 땅을 못산다고 답변한 분이 0.5%였읍니다. 그런데 3정보 상한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가. 3정보 이상 농가가 많아져야 농업이 발전하는데 1967년에 3정보 상한농가가 4만1천호 였읍니다. 농지개혁 당시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였으나, 1967년까지 계속 3정보 상한 농가가 증가 되었읍니다. 1967년까지 계속 3정보 상한 농가호수가 증가된 것은 농촌에 머슴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하층노동력의 값이 쌌읍니다. 그러니까 대농이 머슴데리고, 값싼 노동력에 의해 대규모로 경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증가되었던것입니다. 그런데 67년부터 농촌노동력이 빠져 나가니까 머슴이 제일 먼저 빠져 나갔읍니다. 그리고 하층 농가가 빠져 나가니까, 품값이 올라가서 대농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자꾸 자기 가족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경작규모로 줄어들었읍니다. 그래서 작년도 현재 3정보 이상인 농가가 2만5천호로 줄어

어느 사회, 어느 국가건간에 이 대농층이 자꾸 발전해야 농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농이 기계를 사면, 기계값에 눌려서 나중에 땅 팔아 먹고, 이래서 자꾸 줄어들고 줄어들고 하는 것이 농촌의 가장 어려운 점 입니다. 기계·부채 등이 그렇기 때문에 3정보 상한의 엉거주춤한 규제를 한다지만, 또 확 풀어 놓아 봤자 현실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별것도 없고, 도시 등지에서 그럼 대농만 살기냐 하는 악감정만

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에 손을 대지 않았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공개적으로 3정보 상한을 철폐한다고 해도 그만이고 안해도 그만인 상태인데 이걸 폐지한다고 안하는 이유는 서로 어렵게 사는 분도 많이 있으므로 화합을 깨뜨릴까봐 안하는 것이지 앞으로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면 3정보 상한문제는 저절로 해소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랬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지가 하락에 관한 것인데, 종래의 논값과 쌀값이 같이 움직일 때 임차료율을 낮추면, 임차율을 이자로 나누면 지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쌀값과 논값이 차이가 나 있고, 논값은 도로, 교통, 도시화, 공업화 등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賃借料率이 낮아졌다고 해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읍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면, 여태까지 도시사람들이 샀던 수요가 끊어지면 그만큼은 農地購入 需要가 줄고, 농가에서의 구매능력이 별로 없어서 농지가가 떨어진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올라가지 않고 정체상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農地購入資金을 지원하고, 앞으로 조금씩 살 농가가 생기면 다시 올라가지, 이것이 푹 떨어져서 망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읍니다. 대만의 경우를 보면, 地權均等主義라고 해서 장개석씨가 대만으로 와서 農地改革을 하는데 제일 먼저 土地價格을 조사시켰답니다. 그런데 과거 명나라, 청나라가 망할 때면 농토값이 무척 뛰었답니다. 자꾸 오르니까, 돈 있는 사람은 자꾸 땅을 사지요. 이래서 지주측이 자꾸 땅을 사니까, 세금 포탈해서 국가재정이 고갈되어 왕조가 쓰러지고, 쓰러지고 해서, 장개석總統이 제일차 한 것이 地權均等主義입니다. 이것은 매년 땅 값을 고시해서, 그 이듬해 땅값이 올라간 만큼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제도적인 장치로 해서 土地價格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地價가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읍니다. 대만의 경우 재벌이 안 생기는 것은 원체 地價를 통제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도 땅값은 공정가격 말고 뒷거래로 매매된답니다. 중국사람들은 일단 둘이 매매하고 나면 죽어도 입밖에 내지를 않아서 법으로도 어떻게 규제할 수 없답니다. 그러므로 地價의 停滯現狀은 일시적으로 단기간에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건설부 조사통계만 해도 오히려 農地價格이 都市價格보다 상승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읍니다. 아마 地價가 걱정은 되시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것은 못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느정도 제도적인 장치를 하느냐 하셨지만, 실제로 제도적인 장치는 불가능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까지 아시는 분들끼리 얘기하는 것이지 정부에서 제아무리 제도적으로 해도 실제로는 얼마 받았는지 따질래야 따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農地制度는 점차 농민의 자율성에 의해 안정되어 나가는 것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찾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금지원이 계속될 것이냐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농민 年金制度, 農漁村開發基金 투자액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옥수수 고장이라서 얘기하기 무엇합니다만, 콩, 옥수수, 밀은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료용으로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일단 輸入賦課金을 붙여서, 발생되는 것을 기금으로 해서 農地購入資金으로 하겠다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부과금을 내면, 輸入農產物 價格이 높아져서, 국내 농산물 생산가격도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정부예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과금과 앞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도세와 상속세 면제를 시한부로, 즉 87년부터 91년 12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못을 박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알아본 후에 선생님께 서신으로 답변드리겠읍니다.

龍範重（農地改良組合長）：農地購入資金 융자에 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융자조건은 年利 5%에 2년거치 18년상환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항상 적자를 본다고 알고 있읍니다. 지난번 농지개혁에서 분배농지를 받았다가 다시 판 경우가 많았었는데, 현재 賃借料水準으로 상환을 했을 때, 나중에 과연 그와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지원조건을 좀더

낮춰서 연리 5%를 조금 더 낮추든지, 상환기간을 좀 더 연장했으면 좋겠읍니다. 기왕에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이러한 제도가 마련된다고 했을 경우 아직까지 농토를 장만 못하고 있는 농민이 마음놓고 농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비농민의 경우, 상속이든 능력에 의한 농지구입이든간에 많은 농지도 아니고 겨우 일년정도 가족의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농토를 마련했는데, 그 사람에게도 획일적으로 重課稅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먼저 저희에게 배부해 주신 책자, 10페이지를 보면, 농사짓는 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귀절이 있읍니다. 이 경우 비농민이 농사짓는 농민에게 증여했을 경우에도 상속세나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는지,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金聖昊: 맨 처음 융자조건은, 여기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5%가 높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돌아가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행 농업관계 이자율에서 가장 낮은 것이 5%이니까 일단 그렇게 했는데, 이 관계는 아마 經濟企劃院하고 타협을 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연금에서 農地購入資金이 나가는데 25년 상환, 이자는 2.5% 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읍니다.

그리고 비농가의 경우, 식량조달 등의 말씀을 하셨지만,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을 둔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조세관계는 내무부하고 상당히 타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아닌 분이 농사짓는 분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 관계는 아직 논의가 안되고 있읍니다. 나중에 다시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해 보겠읍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근의 논·밭값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 지가가 논은 평당 8천원 정도, 밭은 그와 비슷하거나 약간 비싸다는 대답)

지금 農地購入資金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대도시 주변처럼 몇만 원씩 올라간 곳은 지원할 수가 없읍니다. 그런 지역은 이미 정부가 손 쓸 단계를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당 1만원 이하의 지역정도 돼야만 정부가 지원도 하고 농민들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입자금이 전국적으로 나간다지만, 이런 지역들을 제하고 나면, 홍천같은 지역은 괜찮을 것입니다.

金洙明(自作農):이번에 마련된 안은 상당히 노력을 하시고 자료를 수집하여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30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바랐던 것도 그런 내용의 것인데 제도상으로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행상 농민의 자세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자세라는 것은 실제 이 문제와는 직접 관련이 안되겠지만서도, 우선 남의 논을 부치다가 열 마지기를 산다면 평당 8천원씩 1,500평이니까 그것은 엄청난 돈 입니다. 그것을 2년 거치 18년 상환을 한다 하더라도 논만 있으면 농사 짓는것이 아니라 농기계도 사야되고 그 값도 무척 비싸니까 부담이 팽장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지역의 농가는 호당 평균 25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논을 샀다고 하더라도 그 누적된 부채를 생각한다면 감당못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농촌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농민은 못자리 하나만 잘못돼도 일년 농사를 망칩니다. 또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災害補償도 못받고, 또 서울에서 돈받고 여름에 비지땀 한번안 흘려 보고 잘 먹는 사람들에 비해 본다면 그 댓가라는 것은 농촌사람들이 회의를 느낄 정도입니다. 실지 농촌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해소시켜서 복지농촌을 일으키려면, 이 제안이 세부적으로 까지 좋은 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金聖昊:負債問題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관청이나, 국회의원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이제 농민 스스로가 얘기하고 중앙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게 할 힘이 있었으면 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農業委員會가 市町村별로 있는데, 그 위에 縣農業委員會가 있고 중앙에는 農業會議所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같은 것

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서 200만 농민의 힘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의 기초가 農地管理委員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정상화되면 자연적으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농민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정상적인 루트가 돼야 합니다. 아까 農產物價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쌀값의 경우 정부가 보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양파, 마늘, 고추 등은 수입에 의해 엉망입니다. 이 가격은 기복이 심하다는데 문제가 있읍니다. 왜 이렇게 기복이 심하냐 하면 면적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입니다. 기복이 발생하는 원인의 70%가 栽培面積 때문입니다. 일본이나 대만같은 경우처럼 適正面積이 할당되어 適量을 생산해야만 價格安定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農協이 민주화돼야 합니다. 下向式이 아니라 上向式으로 되어 농민의 농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농협이 上向式組織으로 되어야만 價格問題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첫 출발점으로 農地管理委員會를 삼았으면 합니다. 어느 나라건, 민 스스로의 자율권과 발언권이 있어야만 진실한 農村이 될 것입니다.

宋永燮(賃貸人) : 農地制度를 개선한다니까 소작을 하는 분이나 땅을 빌려준 사람이나 賃借料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읍니다.

우선 남의 논을 빌려서 농사짓는 분들은 賃借地를 회수당할 것을 염려하고 있읍니다. 땅을 빌려 준 분들의 경우 이 지역에는 대지주는 없고 그저 3천평 이내가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분들도 불가항력적으로 임대하고 있지 그것을 계획적으로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읍니다. 賃貸農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3,000평 이상의 賃貸者에 대해서만 賃借料 上限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賃借料의 경우 이곳에서는 賃貸者가 農地稅, 水稅, 財產稅 등을 부담하고 50%의 小作料를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賃借料 上限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農地管理委員會가 조정하는지, 아니면 완전히 地域農地管理委員會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金聖昊 : 나누어 드린 資料에서 30%라 한 경우 農地稅라는 것은 원래

所得稅이므로 경작자가 내는 것이 법률상 원칙입니다. 그런데 관행상 지주가 부담하고 있는거죠. 그리고 水稅도 원래 경작비용으로 경작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가지 耕地整理나 農業用水開發도 開發費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 비용은 지주측이 내는 것이고, 순전히 물비용은 경작하는 분이 내는 것입니다. 구태여 법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農地稅, 水稅는 경작인이 부담하는 원칙하에서 30%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賃借料의 上限線 관계는 확실한 방침이 안되어 있읍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標準小作料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의 것은 그 지역 農業委員會에서 자주 설득을 하여 거의 80%가 표준치 이내이고, 나이 많으신 賃貸者에게는 조금 높여 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소작료를 가을에 냅니까?

宋永燮 : 가을에 타작해서 그 타작마당에서 반씩 나눕니다.

金聖昊 : 그런데 호남지역에서는 한 필지 1,200평에서 평균 쌀 25가마 나는데 임차료가 많은 곳은 13가마 였읍니다. 필지별로 수확량이 많건 작건 定額으로 봄철에 냅니다. 그것을 先賭只制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자를 따져보면 거의 수확량의 60% 가까이 되지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전부 다릅니다.

宋永燮 : 그러니까 재량권을 시군 단위로 주는 게 좋을 것 같읍니다. 그런데 만약 상한선으로 제한을 한다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 지금 50%씩 반반씩 나누어도, 논 한마지기 150평, 가격이 평당 8천원씩 하면 120만원입니다. 한마지기 120만원에서 일 년에 쌀 한가마가 제게 돌아옵니다. 쌀 1가마에 7만원 하면, 연리 약 6% 못되는 정도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연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주에게 돌아가는데서 상환한다 했는데 소소한 면적을 이웃간에 빌리고 하다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金聖昊 : 맞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일정한 적은 면적이내는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이 지역 실정은 어떻고 다른 지역 실정은 어떤지, 이런 경우에는 賃借地의 몇 %까지 해당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겠읍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자질구레한 것까지 전부 다 할 수는 없읍니다.

辛興根 (賃借農) : 저희 지역은 特用作物을 하기 때문에 답의 경우, 50%라 해도 잘 부치지 않읍니다. 논면적도 적지만 임차해서 짓는 사람이 별로 없고, 밭에 대해서만 음성적으로 상당히 비싼 賃借料를 내고 경작하고 있읍니다. 밭 가격은 많이 가야 평당 5천원 정도인데 임차료는 연간, 비싼 것이 평당 600원, 싼것이 300원 입니다. 작물은 주로 高冷地 菜蔬입니다. 고냉지야채와 감자가 주재배작물인데 대개 지방사람들은 임차료가 비싸니까 임차하기 힘들고 대도시 사람들이 천여만원씩 투자를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일기관계가 나쁘면 상당히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자는 관리부족으로 망가졌다고 합니다. 이 법이 제도화 되면 賃借人이 自然災害라는 것에 대해 변명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려는지요?

金聖昊 : 自然災害는 거의가 저절로 나타나지 않읍니까. 氣象災害니까.

辛興根 : 글쎄요. 일기관계로 망쳐진 것은 천재지변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高冷地 菜蔬는 30도 이상 약간 뜨겁고, 낮에 잠깐 비가 몇번와도 깡그리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그렇게 되면 서로 시비가 나서 곤란하지요.

金聖昊 : 災害保險 제도가 실시되면 아주 구체적인 실시요령이 따로 나올 겁니다. 또 만들어야 되고 지금 그 관계는 作物災害保險이라고, 강원

도에서는 지금 양양군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지금 水稻作 중심으로 한창 조사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減免措置에 관해서는 상세한 요령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高冷地 菜蔬같은 경우, 도시 사람이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賃貸借 規制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 사람들이 와서 빌릴 경우에는 가급적 많이 받을수록 농민에게 이익인데 그것까지 낮춰야 되는지 어떨지 고민입니다. 도시 근교에서는 깻잎의 경우도, 경동시장 장사꾼들이 와서 재배한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이 많으니까 일반 농가보다도 두배, 세배로 뽑아 간답니다. 그런데 임차료도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읍니다. 그러한 것을 전면 규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辛興根 : 그러한 것이 규제된다면 당분간은 손해가 될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는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많은 분들이 와서 투자해서 농사를 많이 지으면, 생산량이 대폭 늘어나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임대를 주는 분들은 돈 몇푼 더 받으니까 得이 될지 모르나, 전체적인 농민은 大量生産으로 값이 하락되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金聖昊 :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젖소도 재벌들이 다 키워서 그렇게 되었고, 養豚이 그렇고 養鷄는 옛날에 벌써 그렇게 되었읍니다. 이제 特用作物까지 도시사람에게 빼앗기면, 농민들은 소득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금지시키면, 부락민들 내에서 생산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辛興根 : 부락주민들이 자기 능력에 맞게 하면 값이 올라가지요.

金聖昊 : 그래서 農地管理委員會에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단결해서 하고, 그렇게 생각되는 곳이 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特殊地域, 高冷地地域은 원칙적으로 契約栽培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契約

栽培를 하도록 정부에서 추진하면 농가들이 호응해서 장사꾼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럼, 契約栽培로 유도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辛興根 : 현재도 農安基金으로 계약 재배하는 곳이 있읍니다. 그런데 야채값이 폭등하면, 서울 시민들이 사먹기 힘들다며 경작자들을 들들 볶고, 지금같이 폭락하면 그것은 모른 체하고, 농사를 실패해도 각종 자금은 短期資金이라서 독촉을 하고 해서 상당히 고통이 심합니다. 그 短期資金에도 농사가 지역적으로 실패를 했으면, 우선 이자만 받고 연기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金聖昊 : 네, 오늘 장사꾼이 와서 하는 것은 앞으로 금지시키고, 이것을 契約栽培로 전환시킨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지요. 오늘 중요한 결론 하나 얻었읍니다.

李淳起 (賃貸人) : 정부에서 農地購入資金을 지원해 준다는데 한 가구당 얼마까지 살 수 있는 자금을 주시려는지 궁금합니다.

金聖昊 : 이 관계는 앞으로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읍니다. 이 관계의 세칙을 제정하려면 利子率, 償還年限, 지역별로 상환地價를 어디까지 메길 것인지,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연구될 것입니다.

李鍾鎬 (單位農協長) : 현재 농촌이라도 강원지방은 호남지역과 모든 농사 체제가 다릅니다.

그래서 賃借料問題는 물론 母法으로 국가의 기본이 있어야 되지만 지역적인 실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 地價로 평당 8천원씩해서 천평을 사기 위해 약 천만원을 융자받으면 연리 5%니까 년간 50만원의 이자를 20년간 물어야 됩니다. 천 평에서 잘 되어야 쌀 12가마 나옵니다. 농기계 값도 무척 비싸고, 그밖에 영농비 또한 부담이 큰데상환이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농촌의 실정은, 융자해 주려야 한

도가 300만원인데, 거의 다 그것을 넘고 있고, 한 10%선이나 融資限度額 이내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합뿐 아니라, 강원도내 실정이 다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중장기자금 다 쳐서 농촌이라고 교육 안시킵니까? 애들 학비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농지를 연차적으로 밀어줘서 산다고 해도, 몇년 안가서 또 딴곳으로 가게 됩니다. 8·15해방 후 農地改革을 했지만,몇년 안가서 다시 또 되돌아 가기도 했읍니다. 지역적인 것으로 법의 기준을 할 수는 없지만, 우선은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남쪽지방은 이모작을 하면서도, 논에도 시설채소해서 계속 나오지만 시설비가 안들어 가니까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지만 37도이북 이쪽은 그런 여력이 없고 단모작으로 놀아도 겨울에 할 것이 없읍니다. 지금 정부에서 많이 해주려고 애쓰지만, 農工團地가 여기에 들어와서 農外所得을 올려야만 강원 이북이 사는데, 農工地區가 이 강원지방에 옵니까, 잘 안들어 옵니다. 문제는 지금 이것이 시급한 것이지, 내가 볼적에 農地制度改善이라는 것은 이 홍천지역으로서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또 한가지 임차료를 母法으로 30%, 20%로 해 놓는다면, 당장 가까운 이웃을 보더라도, 소규모로 갖고 있는 임차지마저 다 떼입니다. 그렇다면 영세한 그 사람들은 무척 곤란합니다.

金聖昊 : 기계값 때문에 호되게 당하는 것이 평야지대입니다. 그곳에서는 10정보 갖고 계신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땅을 모두 경작하려면 4천만원 정도의 농기계를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농기계값의 부담 때문에 지금 김제지역의 大農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읍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농기계 가격이 과거 일본에 비하면 엄청나게 싼 것입니다. 지금 농기계 공장들이 대부분 도산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회계사 데려다 경리를 해 봤더니, 부채가 엄청나요. 다른 자동차 수출 등으로 그 손해를 메꿔 가요. 그런데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에 농기계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1965년 이후, 상한선 폐지할 때

입니다. 60년도에 일본 농가가 부채가 제일 많았읍니다. 그 당시 어느 정도인가 하면, 流動資産에 대한 負債比率이 제일 많았던 것이 19.5%였읍니다. 지금 우리는 100%가 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입니다. 만일 농가가 기업처럼 수표를 뗀다면, 모두 不渡手票 입니다. 실제가 이렇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실은 새마을 운동 때문에 집 짓느라고 얻은 것과 기계값 때문입니다. 일본 농가가 빚을 갚을 수 있었던 것은 農外所得 덕분입니다. 農外所得이 농가소득의 80%로서, 일본농가가 잘 사는 것은 농사 지어서가 아니라 農外所得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일본 농가는 中農層이 제일 소득이 낮습니다. 大農은 5~10정보의 農業所得으로 零細農은 아예 農外所得으로 돌아버리고, 중농은 자꾸 몰락해 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農外所得이 없거든요. 겨우 35%입니다. 대만이 65%입니다. 일본이 80%, 공장의 40%가 서울지역, 약 30%가 부산, 포항 일대, 그 나머지가 농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너무 급히 성장하려고 하다가 도시에만 공장을 세우고 농촌에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 관계에 관한 논문을 제가 1971년에 썼읍니다. 農外所得이 아니면 농촌이 살 길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정부조치로 취해진 것이 農漁村綜合對策입니다.

지금부터 産業體制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이 조치를 취하려면 1972년 유신헌법 만들 그 당시에, 공업의 지방분산을 시켰어야 했읍니다. 그래야 농촌도 살 수 있었지 않은가, 그러니까 농기계 문제는 한국경제 전체와 관련됩니다. 지금의 공업성장은 농어촌의 값싼 노동력 덕분입니다. 그럼 농촌에서 빼앗아간 만큼 기계를 줘야하는데, 기계를 줄 수 없게 된 것은 한국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 겁니다.

龍鎬璇(賃貸人) : 零細農家의 戶主 또는 일을 하던 사람이 입영이나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自作農家가 賃貸農이 되었을 경우 稅制規制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金聖昊 : 원칙적으로 농사짓다가 그곳에서 그대로 사시면, 아무 규제가 없도록, 저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읍니다.

龍鎬璇 : 네,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준공공재산이라 할까, 씨족별로 位土가 있읍니다. 그런것은 어떻게 됩니까?

金聖昊 : 지금 位土문제가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읍니다. 位土에 관해서는 農地改革 당시 一基當 200평씩 해서 정식으로 허가된 면적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이후 조사해 보니까, 재벌들이 몇 정보씩 갖고 있고 하는데, 位土는 아마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조상한테 면목이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것도 제한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龍鎬璇 : 여기와 좀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강원도는 대부분이 영세농가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에서는 일년내 농사를 지어도 셈을 하면 땅값이 안나온다고 옛날부터 그랬읍니다. 그래서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 가냐면, 대부분이 山이나 또는 家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도시사람들이 와서 말뚝을 박고 소기르고 해서 겨울에 나무하러 갈데도 없읍니다. 이런점도 아울러서 농가부흥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입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金聖昊 : 山에 대해서는 제가 재작년부터 조사를 했읍니다. 횡성군 1개면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5개면을 조사했더니, 횡성군의 그 면은 엄청난 산골인데도, 부락부근에 있는 산지는 거의 40%가 서울사람 것이었읍니다. 이 山地問題가 심각한 것입니다. 서울, 경기도 山地는 거의 다 넘어갔고, 이제 강원도 충청북도 쪽으로 오고 있는데 농지제도개선이 되고나면, 다음 단계는 山地입니다. 山地問題는 어떻게든 손을 대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李春宰 (賃借農) : 賃貸契約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겠읍니다.

어떤 토지에 대해 登記名義者가 따로 있고, 실제 토지주인, 말하자면 투자한 사람이 따로 있고, 또 그 토지에 대한 管理人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런 토지의 경우 누구와 賃貸契約을 해야 하는지요?

金聖昊 : 법적으로 하면, 登記名義者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읍니까?

李春宰 : 네, 간혹 있읍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서 외관상 잘 안 나타납니다.

金聖昊 :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에는 정부관리가 끼어들 수 없읍니다. 부락자체내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것 때문에 실제로 3개면을, 시범지구로 해서 실제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은; 실제 마을 분들 모셔놓고 이럴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법적으로 따져서 어떻게 될 것이냐, 따져서 연구하면 좋은 자료가 되겠읍니다.

司 會 : 장시간 감사합니다. 마치겠읍니다.

Ⅷ. 京畿 廣州郡 座談會

가. 開催日時 및 場所

日 時 : 1986. 9.30. 오후 1시.

場 所 : 郡廳 會議室

나. 討論參加者 및 參席者

資料說明 : 金敬植 (韓國農村經濟硏究院)

討論 者

<團 體>	이의천	(농지개량조합장)
	허광회	(단위농협장)
<自作農>	박광진	(광주읍 장지리 385)
	이종욱	(초월면 대쌍령리 230)
	배응석	(오포면 능평리 152-13)
	박한신	(실촌면 건업리 153)
<賃貸人>	강영희	(성남시 은행 2동 125)
	최병환	(서부면 감일 3리 376)
	최천기	(동부읍 망월리 381)
<賃借農>	서정국	(도척면 유정 1리 536)
	임철식	(퇴촌면 광동리 331-1)
	송영완	(서부면 감일 3리 351)
	최관준	(동부읍 미사리 439)
	심형래	(남종면 금천 1리 510)
	유지훈	(중부면 상선곡리 496)
<參加者>	權正鉉	(農水産部 農地課長)
	홍종대	(京畿道 農政課長)
	최덕곤	(廣州郡 副郡守)
	이영찬	(廣州郡 産業課長)

다. 討議內容

全敬植（韓國農村經濟研究院）：농지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토의를 갖게 되어 반갑습니다. 토의는 농지제도에 초점을 맞춰서 중복을 피해주시기 바랍니다.(資料說明 省略).

박광진（자작농）：광주 장지리의 박광진입니다. 저희는 동네 전체가 논농사를 짓고 있읍니다. 農地購入資金 融資에 대해 말씀드리겠읍니다. 요즈음 저희 동네 땅 한평 賣買價格은, 평당 32,000원선입니다. 그런데 支援計劃을 보니까 아주 거리가 먼 것 같읍니다.

權正鉉（農水產部 農地課長）：지가문제보다 農地管理委員會나 賃貸借關係에 관한 문제등을 말씀해 주십시요.

박광진：저희는 賃借料가 낮으며 不在地主가 동네에 많은데, 선의적인 지주이며, 그것이 모두 기계화영농단에 흡수하여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본요율만 계산을 하게 되니까 수확량의 20%정도가 되어, 그에 대해서는 저희 주위에는 별 문제가 없읍니다.

즉, 개인이 소작하는 경우는 없고, 高率小作料에 관심이 없고, 땅값 올라가는데 관심이 있읍니다. 저희 동네는 그래도 不在地主가 제일 적은 동네고,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고 離農을 한 경우가 있는데, 기계화영농단에서 모내기부터 계속 영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차료로 따진다면 20～25% 수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서로 이의가 없읍니다.

임철식（임차농）：퇴촌면에서 온 임철식입니다.

지금 임차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대개 投機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임차료를 많이 받지 않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재지주자의 定義가 어떻게 되는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서울근교지방이므로 천호동과 신양은 서로 붙어 있는데, 천호동은 서울이고 신양은 광주입니다. 천호동에 사는 지주가 시장에 와서 농사짓는다 할 때 그것도 부재지주로 인정하는지요?

權正鉉 : 不在地主라는 것은 자기 농토가 있는데 외지에서 살면서, 자기의 노는 땅을 그곳의 사람에게 임차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주는 경우, 농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 직업이 엄연히 따로 있고 또 무직이거나 어쨌던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로 부재지주라는 槪念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완전한 부재지주가 있고, 또 재촌지주도 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 농촌에 살면서 高齡化의 경우도 농사를 못 짓는 在村地主도 있읍니다. 이들은 농민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在村地主로 稱하고 있고, 완전히 농사와 관계없이 농토를 갖고 있으며 남에게 빌려주는 사람은 완전한 부재지주로 봅니다. 이렇게 확실한 槪念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법이 제정되면 확정되겠으나 제가 말씀드린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임철식 :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는 서울근교가 돼서 땅값이 좀 高價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만약에 공부를 좀 하겠다고 해서 대학을 보낼 경우 사실상 농촌형편으로는 대학을 보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만원에서 만오천원하던 땅들이 별안간 삼만원이나 사만원으로 올랐을 때, 그것을 팔아서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충분한 것이 되었읍니다. 만약 농어민들끼리 거래한다면 그런 가격이 形成되지 않읍니다. 都市民들이 사야만 결국 일종의 投機겠지만, 고가로 판매하여 자녀를 교육시키고 서울가서 전세방이라도 얻어 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都市近郊의 염려를 좀 해주셨는지요?

權正鉉 : 선생님 말씀하신걸 정리해 보면, 땅 갖고 있는 것을 都市民들에게 팔아야만 자녀의 遊學教育도 시킬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파는거야 별 문제지만, 다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입니다. 1950년의 農地改革이 실시되어, 국가에서 땅을 買收하여 지주에게는 지가증권을 교부하고, 농민들에게는 매년상환자금을 받아서, 그래서 농지개혁으로 인해 92%가 자작화됐읍니다. 그러다가 차츰 도시민에게 팔고 해서, 지금 19%의 부재지주 소유농지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憲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농지는 농민이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원칙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읍니다. 따라서 지금 다만, 그 농지를 耕者有田의 원칙으로 유도해 나가고 또 稅制機能에 의해서 다소 부재지주를 줄여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차차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지에 投機가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규제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농사가 수지가 맞지 않는데, 게다가 논임자에게 50~60% 주고 나면 뭐가 남읍니까? 자기의 노동댓가도 못 받는 이러한 불공평한 임대차를 改善해 나가고 가급적이면 농민의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데 이 목적이 있읍니다. 다만 도시민에게 팔아야만 논값이 오른다는식의 논법은 좀 곤란할 것 같읍니다.

全敬植: 정부에서 投機를 규제하여 농민들끼리만 사고팔게 해 놓으면 농민은 돈이 없으니까 땅값이 내리는 것이 문제다. 이말씀 아닙니까? 투기하는 분이 農地專用의 利得을 노려, 즉 농지가 공장부지라던가 다른 것으로 전용이 될 경우의 利得을 노려서 일단 사놓고, 전용되기 전까지 공짜 비슷하게 임차하다가,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이 들어서면, 전용을 해서 열배씩 다섯배씩하여 팔자를 고친 것이 말하자면 과거의 우리 현실이었읍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課題입니다.

여하튼 도시근교의 땅이 전부 도시민에게 넘어가는 사유가 이것인데 産業化過程에 따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 부재지주의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재지주와 재촌지주의 한계는 뭐냐! 그것을 획일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農地管理委員會에서 審議하는 것입니다.

심형래(임차농) : 부재지주에 한해서는 토지를 購入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남종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벽지입니다. 저도 농사에 종사하고 있지만, 組合에 200만원 이상씩 빚을 지고 있는데, 농협에서 농자금을 내다 쓴것입니다. 그러나 일년농사 짓는게 비용을 다 빼면 50만원 밖에 안남읍니다. 100만원 내다가 농사짓는데 영농자금으로 쓰고 또 학자금 마련으로 얼마 내다보면, 농가수지로는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읍니다. 그래서 토지를 내놨어도 부락주위에는 토지를 살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組合費도 연체이자 때문에 몇년씩 끌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읍니다. 자료를 보니까 땅은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읍니다. 광주군에서는 저희가 제일 貧村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저도 부채가 좀 있는데 부채를 갚을 도리가 없읍니다. 땅이라도 누가사야 부채를 갚을텐데 땅을 누가 사지 않읍니다.

全敬植 : 지금 땅값이 얼마쯤합니까?

심형래 : 대개는 만원정도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동네는 팔당댐을 막음으로써 전부 수몰이 됐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전에다 물다가 지금은 건설부에 하천부지使用料를 내고 있읍니다. 그것도 등급이 있는데, 저의 경우 밭은 평당 100원 약간 못되고, 논은 110원정도 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도시근교는 혜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전에 땅을 판것도 아니고, 댐이 됨으로써 저희가 보상을 받고 한전에다 판 것인데, 그걸 되돌려서 불하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全敬植 : 저희도 조사해 보니까, 한전 땅 관계는 법적으로 소위 공수위나 만수위안에 든 것은 技術的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외의 필요없는 것은 다 처분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아마 선생님 땅은 만수위에 들어가서 처분이 안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技術的인 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직접 한전에 물어보십시요. 한전에서도 소위 비업무용토지는 갖고 있어 봤자 세금만 내기 때문에 처분해야 됩니다.

서정국 (임차농) : 도척에 사는 서정국입니다.

저희면은 광주 맨 끝에 있고 3개군에 접경하고 있는데 좀 오지라고 할 수 있읍니다. 저희도 賃借農이 많이 있는데, 보통 임차료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5대5 정도입니다. 그것은 요즘에 機械營農을 하는 관계로 일손이 남아돌아, 남의 농토라도 많이 경영하면 그만큼 所得이 있기 때문에 남의 논을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논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50%선이라도 남의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국민1인당 所得이 금년도 2천5백달러, 6차5개년계획이 끝나는 90년도에 3천8백달러로 잡고 있는 걸로 아는데, 농촌의 현실정으로 봐서는 90년대 3천8백달러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階層間, 地域間, 都農間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원칙에 의해서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必須的으로 制定되어야 할 것인데요 不在地主의 경우 임차율을 30%로 정하고, 在村地主에 한해서는 이 법을 일원화하지 말고 二元化하여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임차료를 결정하도록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읍니다. 그 이유는 재촌지주에게 똑같이 임차료를 적용할 경우, 재촌지주로서는 임대하지를 않고 땅을 묵히던가 스스로 농사를 지을겁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서 나오는 所得은 감소되고, 또 남의 토지를 임차하는 사람도 어차피 농사를 짓는데 임차를 못하니까 소득이 쌍방간에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임차료관계는 재촌지주와 부재지주는 엄연히 이원화해서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그리고 부재지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래야 하겠읍니다.

과거에는 부재지주에 대해서 농지를 구입못하게 했는데도, 그러면 그 부락의 농지위원장의 도장을 받아서 면장의 확인을 거쳐서 農地賣買證明을 했는데, 솔직한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어떤 규제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었읍니다. 이장 술값이나 좀주고, 이렇게 매매증명을 하여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도 외지사람이 농지를 사게 되니까 자연히 농지값이 비싸지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기를 抑制하기 위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면단위로 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읍니다.

全敬植 : 말씀하신 요지가 임대료에 있어서 不在地主와 在村地主의 차이를 두어, 부재지주는 규제를 하되 재촌지주의 임대지에 대해서는 상호간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자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에 임차인도 임대인도 농업단체관계되는 분도 참여하여, 자기 면내의 향토의 土地問題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인지 아닌지는 거기 살고 있는 마을사람이 알 수 있지 어떻게 알겠읍니까? 그래서 일단 심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허위증명을 했을 경우는 처벌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자기고장문제를 자기네끼리 해결해 나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그 기준은 정하지만 진폭은 있읍니다. 어디까지 딱 얼마다라고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정하되 여건에 따라 融通性이 있을 겁니다.

재촌지주에 대한 임대료는 그 적정선은 있으되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토의하여 決定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입니다.

權正鉉 : 정확한 지적을 하셨읍니다만, 재촌지주에 대해서는 지금의 慣行처럼 하되 획일적으로 30%로 할 수 없읍니다. 부재지주와 재촌지주에 대한 임대차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구해 낸것이 재촌지주는 그 이름을 임대차대신 전면위탁, 전면도급, 즉 委託營農은 해도 좋다고 생각했읍니다. 이래서 사실상 이원화는 시키되, 형식적으로는 재촌지주는 위탁영농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부재지주는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래서 재촌지주에게는 고용을 해도 좋고, 위탁영농 즉 部分委託, 全面委託을 시켜도 좋다고 허용하나, 부재지주는 남을 雇傭하거나 위탁영농을 하는 사람은 처벌하기로 구상을 했읍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상한데 대하여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박한신 (자작농) : 실촌면 건업리에 사는 박한신입니다.

저희 광주군은 2개읍 8개리로 되어 있는데, 산간지역이 더 많습니다. 營農後繼者가 농지를 구입하는데 혜택을 못준다. 도시근교이므로 제외된다 하셨는데, 광주군 퇴촌면은 산간지방입니다. 산골짜기에 농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운기, 리어카조차도 못들어가서 거의 10년, 20년이 지나도 묵혀 그대로 지목상 전임이 되어 내려왔읍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세금은 해마다 土地登錄을 하는 관계로 세금을 더 내게되고 그런것을 도시인들이 더 많이 찾는데, 이것을 부재지주라 해서 못사게 하고 이럴 경우 청문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지원금 혜택도 안되고, 도시근교라고 서울사람에게 땅을 팔지도 못하게 묶어 놓으면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權正鉉 : 저희가 전국의 농지값 평균을 내봤는데, 논의 경우 중답인 것은 7천원선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 농촌에 와서 보니 거의가 만원선에 육박했읍니다.

물론 7천원, 5천원 짜리도 있으나 적어도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

는 지대라면 만원이 적정합니다. 그래서 농지값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면 현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엄선하는 바에 따라서, 투기대상지역도 아니고 땅값도 안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박선생님 말씀대로 支援對象이 되지요 그러나 땅값이 3만원, 4만원하는 것은 벌써 농지로서의 기능을 일탈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한 오지에, 물론 도시근교이긴 하지만, 지리적으로 봐서 純農業地帶이며 땅값도 전국 평균수준이라면 融資對象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모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땅 한평이 3, 4만원 한다는 것은 농사짓겠다는 땅값이 아닙니다. 농민들이 그 땅을 어떻게 사서 농사를 짓읍니까? 이자도 안될 거예요. 그런 비싼 땅값을 농지구입자금으로 融資해 보았자 농민들 그 자체는 물론 그 땅에 농사를 짓겠지만, 농사를 짓기 위함보다는 投機目的일 수 밖에 없읍니다.

박한신 : 글쎄, 그건 전체적으로 보셔서 그런 것이고, 산골짜기에는 기계를 사용할 수도 없고, 거기에 유기질 비료를 낼 수도 없고 곡식을 심어야 소득이 되지도 않읍니다. 그래서 자연히 20, 30년씩 묵히게 됩니다. 그런데도 地目上 전유지다 해서 계속 해마다 정부에서 면에서 조정해서 등급을 정해 세금을 부과시키면 그런 땅은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거던요.

權正鉉 : 그러니까 그 땅은 농토로써 경작이 불가능합니까?

박한신 : 그렇죠. 농지의 價値를 잃은 땅입니다.

全敬植 : 농지의 가치보다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땅이겠군요. 地積法에 그게 있읍니다. 그런 땅은 농지라 할 수 없는 특수한 예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재촌지주라 할지라도 규제를 받으면 농토를 회수할 것이 아니냐. 그럼 우선 경작을 불성실하게 하여 결국 수확도 줄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農地保全法律이 만약 기준 수확량에 미달하는 경작을 했을 경우 그것은 시장, 군수가 代理耕作者를 지정할 수 있읍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가 강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손실경작은 규제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주가 마음대로 땅을 회수할 수 없을 겁니다.

더구나 임대차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賃貸期間을 3년이상으로 피차간에 아무런 의의가 없을 경우, 갱신해 나가도록 보장하고 있읍니다. 지주의 回收問題도 그 해결방안으로 조치를 강구해 가고 있읍니다.

박한신 : 제 얘기는 결국 말하자면 20년, 30년 묵혀봤자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 것, 도시사람이나 와서 사야 되는데 정부가 그 제도를 마련해 놓으면 결국 생계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權正鉉 : 여하튼 이자리에서 特殊한 실정, 都市近郊의 실정을 다 듣고 가서 말씀하신 것을 정부에 전달하고 연구하여 對策을 講究할 것입니다.

심형래 :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했읍니다만, 저희 남종지역은 1개리가 20 못되는 곳이 많읍니다. 또 지원금 문제에 있어서도 광주군이 서울近郊라 해도 산간벽지도 많읍니다.

제 負債가 200만원 정도인데 300만원이 넘으면, 또다시 營農資金이니 일반자금이니 얻을 수도 없읍니다. 그래서 한번 부채를 지으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읍니다. 더구나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문화수준에 따라가자니 消費支出이 무척 많습니다. 다 자기형편에 맞춰야 되는데 모든걸 쳐다보고 따라가자니 잔뜩 빚만지고 막막합니다.

權正鉉 : 네, 알겠읍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농촌에 대한 종합적인 對策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綜合對策을 세우

고 있읍니다. 지금 저희가 의논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문제입니다. 투기성지역에 融資까지 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고, 선생님 지역이 기계영농이고 땅값이 평균수준이면 融資對象에 들어갈 수도 있읍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허광회 (단위농협장) : 저는 초월면 組合長을 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읍니다. 규모는 논이 약 7 천평, 밭이 3 천평으로 대략 만평 정도 짓고 있읍니다. 제 애들은 남자들인데, 하나는 농고로 하나는 공과대학을 보냈읍니다. 농고나온 애에게 전재산과 농토를 줄테니 남아서 농사를 지으라고 했지만 결국 도심지로 나갔읍니다.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광주에서 大農이고, 앞으로 내 자신이 勞動力이 있는 한 농사를 짓겠지만 참 걱정입니다.

과연 앞으로 부재지주가 더 많이 생길 것이냐? 자기 논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냐? 농사짓는 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농촌의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자기자신이 수익에 비례해서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탓해야지, 정부의 責任도 그 누구의 責任도 아닙니다. 제가 조합장을 하지만 저는 아직도 흑백 T·V 를 보고 있읍니다.

힘 안들이고 잘살려는 생각 때문에 負債가 늘고 어려운 중에 있게 되는게 틀림없읍니다. 이것은 나도 농사를 짓지만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실천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자기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자녀출가 시킨다고 대출을 받으러 오면 최하가 3 , 4 백만원입니다. 농가수입이 평균 5 , 6 백만원 한다는 것은 정부의 통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제로 무슨 5 , 6 백만원이나 됩니까? 난 절대로 안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금년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자녀교육시키고 출가시키다 보니까 점점 농촌에 負債가 느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껏 生活한다면 그다지 負債가 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賃借農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은 적정으로 유지된다고 생

각됩니다. 왜냐하면 수리안전답은 한마지기에 쌀한가마로 서로 거래가 되고 있고, 농로가 안닦고 좀 불편한 곳은 한마지기에 쌀 7 말로 거래가 되고 있읍니다. 남종이나 실촌같은 산간지역은 우리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주들이 그냥 임차해서 하라고 해도 안짓읍니다. 사실 품값도 안됩니다. 과연 농민들이 왜 농토를 묵히고, 농사를 안짓는가에 대해, 정부에서 근본적인 對策을 마련해 주지 않고서는 不在地主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농하는 사람이 계속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임차에 대해서는 재촌지주, 부재지주 나눌 것 없이 地主와 耕作者間에 탄력성있게 적용해야지, 남의 땅 그나마 얻은 것도 일터전을 잃게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최천기 (임대인) : 동부읍 망월리 최천기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강동지역과 도로사이를 끼고 있는 부락입니다. 임차법이 신문에 발표되고 나서 지금 현재 저희 아래 부락에서는 한20여호의 농가가 12월말까지 농지를 내놓으라는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매우 비통해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농수산부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근교에서 融資金도 주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賃貸借法도 적용치말고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자녀가 넷인데 집사람도 서울 아이들 학교 있는 곳으로 옮기고 저만 남아서 축산겸 농사를 짓는데 저도 賃貸人으로써 땅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3년동안 임차인에게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임대주의 입장에서는 그럴바에야 차라리 自耕을 하려고 합니다.

權正鉉 : 서울사람은 별문제가 없는데 시골분들은 신문을 깊이 안보시고 대개 TV를 보거나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誤解가 있을 수 있는데 과거의 農地改革처럼 획기적인 對策이 아닌가 생각하신다면 전달이 잘 못된듯 싶습니다.

임대차법을 제정하면 정식으로 所有權을 인정합니다. 말하자면 땅주인도 자기 소유권을 인정받고 賃貸權도 정식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주인이나 소작인이 서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여 염려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 법을 만들면 오히려 항상 불안요인이 있게 됩니다. 각각의 입장이 있지만 모두 만족시킬 수도 없고 90% 정도만 만족시킬 수 밖에 없읍니다.

이종욱(자작농) : 초월 사는 이종욱입니다.

저희 근교에는 相對農地와 絶對農地로 표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대농지는 평당 약 5,6천원 가고, 절대농지는 평당 약 2만 5천원 내지 3만원이 갑니다.

경운기도 못들어가는 상대농지를 5~6천원씩에 사서, 면적을 2천평인가 3천평 확보시켜서 다시 큰덩어리로 垈地化하면, 그러면 십만원짜리도 만들 수 있다는데, 우리 농민들으로서는 한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것이라서 그것을 垈地로 못하여, 아주 가치없는 땅이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주인이 거의 다 절대농지만 갖고 있고, 상대농지는 팔았읍니다. 그 산사람은 다시 큰 덩어리로 만들어 큰 垈地를 조성하여 땅값을 5,6만원씩 받고 있읍니다.

아까 몇분들이 말씀하신데로 지게도 못들어가고 경운기도 못들어 가는 묵은 땅이, 그나마 팔지 못한 것이 다수에게 아직도 많읍니다. 그리고 서울근교의 땅을 산사람들은 상대농지라 해서 埋立을 해 놓읍니다. 매립을 해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의 의욕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지금 현재 자갈논을 만들어 놓고, 아주 심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무얼 심어라 해도, 먹지 못하는 논에 들깨를 조금 심어봐도 들깨가 자라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읍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그걸보고 농사지을 의욕을 잃고 있읍니다.

全敬植 : 그러니까 농지가 좋지 않아서 팔리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그건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처음엔 絶對農地니까 팔지 못한다는 말로 알았읍니다. 그런데 상대농지건 절대농지건 지금 맘대로 농지전용이 됩니까? 주택지구와 이런곳 말고서 여기에

농지과장님도 와계신데 지금 농지전용이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선생님들도 일반농가주택 짓는 것도 힘들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절대농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땅값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는 가능하나, 아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땅을 서울 사람이 안사면 살 사람이 없어서 땅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로 집약되는데, 그런 말씀이죠?

이종욱 : 네

全敬植 : 그건말씀이죠 서울사람에게 땅값을 비싸서 못판다는 것은 솔직히 농지제도의 기본원칙과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땅사고 파는 것은 각자의 소유권의 처분입니다.

헌데 다만 왜 도시사람들에게 땅 파는 것을 막느냐, 우리가 지금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읍니다만, 憲法에 농지의 경자유전원칙이 지정되어 있읍니다. 憲法이라는 것은 국민이 지켜야할 원리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부재지주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추세가 다 그렇읍니다. 어디까지나 농토는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의 돈있는 사람은 땅값 오르기를 바라면서 땅을 사겠지요. 그러나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입니까? 그것은 국민경제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악요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농토를 여러분이 갖고 계십시요. 앞으로 산업화되어 공장과 도로가 많이 생기면, 그러면 지방 농토도 다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에요.

일본의 경우, 농민들은 땅 안팝니다. 하도 안팔아서 오히려 流動化라 해서 땅을 빌어서 농사를 확장해 나갑니다. 이게 일본의 실정입니다. 우리도 멀지않아 그렇게 됩니다.

지금 당장 빚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반박이 있겠지만 하지만 땅값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주위정세를 보십시요. 길이 난다거나 하다못해 도로포장만 해도 땅값이 올라갑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방에 공업을 분산해서 농업소득을 올려 주려고 하고 있지 않읍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공장이 세워지고 농토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먼 미래를 보신다면, 당장 급해서 좀 비싸게 파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읍니까?

어디까지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땅들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나가셔야지, 자주 말씀듣기에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병환 (임대인) : 몇년전에 농수산부에서, 농기구, 창고, 외양간 등 필요한 부분으로 농가주택을 증축하려하면, 이런 것은 許可對象이 아니라 신고대상으로 만들었읍니다. 농가가 자기가 꼭 살기 위해서 증축한다면, 아마 허가하지 않을리가 만무한데, 과거의 예를 보면 농가주택을 빙자해서 특히 도시근교에 많읍니다만 일반주택, 상점, 심지어 가내공장을 만든 사람까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리가 끝난 후 나중에 감사할 때 공무원의 입장이 아주 곤란했었읍니다. 농가가 애들 놀이터나 되어 버린, 이미 아무 쓸모없는 땅을 地目上 변경하려는 땅에 증축하겠노라, 그 이유가 합당하면 승인 안할리가 만무한데, 이건 하나의 농지보존시책의 실무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농지제도개선과는 좀다른 문제이므로 간략히 말씀드렸읍니다. 그건 나중에 실정을 조사해서 해결하기로 하셨으니까 다른분의 말씀을 듣겠읍니다.

유지훈 (임차농) : 저는 중부에서 온 유지훈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현재 그린벨트가 쳐져있고 또 都市計劃法도 적용되고 農漁村計劃法도 받고 있읍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부재지주가 땅 사는 것을 막으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실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농지를 매매하려면 農地賣買證明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비가 없어서 자기 땅을 부득이 팔았어요. 그런데 면에서 매매증명이 안되니까, 그 땅을 산 사람은 해약을 하겠다하고, 그분은 땅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아서 병원에 다 쏟은 후입니다. 면에서는 매매증명을 안해주고, 이 사람은 그 땅을 팔아서 자식

을 살리려고 팔은 것인데, 그래서 심지어 이런말까지 나왔읍니다. "나는 이 땅을 서울사람에게 팔았지만, 내가 고의적으로 팔은 것도 아니고 내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판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자식을 죽이게 만들었으니 너희가 이 땅을 받고 치료비를 보태달라"는 말까지 나왔읍니다. 그때 농지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답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사꾼 땅을 팔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또는 어떤 땅을 팔아서 좀 더보태어 더 좋은 땅을 사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파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매증명이다. 어떤 規定을 정하기 전에, 이 사람이 부득이 팔아야 할 때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 법의 규제를 받다보니, 빚진 사람은 농협이나 은행에 대한 이자가 매달 시일이 지날수록 가산되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농사꾼이 부득이해서 不在地主에게 팔았을 경우라도 그 정상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여기하고는 별개의 문제같은데, 저희는 농어촌지역이라 그런지 지금 현재 건물이 있으면서도 지목상 전답으로 되어있는 지역이 많읍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와서 건축관계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田畓이므로 地目變更을 해라하고, 지목변경을 하려면 地目變更法上에 건축면적의 2배 이상이면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농촌의 집은 큰집이면 한 30평, 그렇지 않으면 15평, 10평짜리도 있읍니다. 여기에 법을 적용시켜 보니까, 20평짜리라야 40평밖에 안됩니다. 또 현재 농어촌의 울타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100평이 됩니다. 이것을 울타리가 쳐져 있을 때, 그 안에서는 지목변경이 가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린벨트에서는 건폐율이 60%이기 때문에, 20평 주택가진 사람이 40평으로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나중에 생활이 좋아졌다든가 해서, 어떤 사정으로 해서 30평으로 짓고

싶을 때는 건폐율이 모자라서 도저히 더지을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울타리가 쳐져있는 범위에서는 또 고의적으로 넓게 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울타리안에서 地目變更을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司 會 : 자식이 아파서 땅을 판다는 위의 경우는 法 이외의 하나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제가 그럴 경우라고 가정해 보니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읍니다. 한데 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정해 놨을 때, 물론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있을겁니다만, 단지 판매의 사유에 따라서 즉 **願賣者**의 사정에 따라서 그 자격을 이렇게 저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논을 팔아서까지 써야 되는 이런 딱한 경우에는 달리 어떤 보조나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도시사람에게 땅을 팔아서 맘대로 쓸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또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농지제도 **賣買側面**에서의 생각 이전에 오히려 사회복지면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그린벨트 안에 있어서의 건축부지면적의 지정대지안에 대해서 즉, 기준대지에 대해서는 그 울타리 안에서는 무조건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말씀같은데, 그것은 **地積法**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관련소관인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 듯 합니다.

서정국 :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農地購入資金을 87년도에는 2천억원 규모로 방출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가 2천억원이 전국으로 퍼져보면 사실 얼마나 됩니까? 물론 서울의 임대지주들이 차지료도 떨어지고, 또 땅을 살 수도 없고, 자기가 농사짓기 전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자연히 땅을 팔게 되는데, 그 경우 농민이 땅을 사야 되는데 솔직히 농촌에 무슨 돈이 있겠읍니까? 내가 500평 팔아서 약간 보태어

600평으로 늘려가는 식으로 어렵게 농지를 구입하고 있는데, 농지를 팔려고 내놔도 농촌실정으로는 살 능력이 없으니까, 정부에서는 농촌을 지원해서 땅을 살 수 있게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읍니다. 그래서 지금 연리 5%에 2년거치 18년상환이라면 대단히 좋은 조건입니다. 5%되는 이자가 어디있읍니까? 상당히 저리이고 조건이 좋은 자금이나 2천억원이래야 결과적으로 그 돈으로 얼마나 농토를 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규모의 자금을 방출해서 부재지주들이 농토를 내어놨을 때 어느정도 살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融資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全敬植 : 국가재정이 허락한다면야 2천억원 아니라 1조원이라도 내놓고 싶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農水産部 당국에서도 활발히 경제기획원과 의논을 하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營農資金처럼 리·동·면에 할당하는 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람 본위로 꼭 농촌에서 자립하고 어디까지나 농업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에 차 있는 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인정을 받으신 분이 농지구입자금을 받게 됩니다. 과거와 같은 나눠먹기식의 자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금을 많이 받아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안자나 모두 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재정의 제한이 있고 하니 양해하십시요.

다음, 말씀 안 하신 분이 해주십시요.

최관준 (임차농) : 미사리에서 온 최관준입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부락은 살기에 힘든 부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만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분들이 들락날락하더니, 신문지상에 농지법이 발표된 후로는 저희 부락에는 찾아 오지도 않읍니다.

저도 대학생자녀가 둘인데, 금년의 경우 미사리지역이 하우스재배를 합니다. 86아시안게임으로 상추가 잘 팔릴 것이다 하여 열심히 지어봤는데 오히려 그전보다 더 상치값이 없읍니다.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이건 구태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다만 제심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오신 분이 분명히 임차농법안을 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차농법안이 통과되면, 토지를 구태여 부재지주 재촌지주 따질 것이 없지 않나 생각되어 여쭤보는 것입니다.

全敬植 :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 법안이 제정되면, 법에 의해 임대를 해주면 구태여 부재지주, 재촌지주니 따질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가요, 이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1950년도 農地改革이 실시되고 나서, 원래는 農地基本法이 생겨야 했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 않았읍니다. 그러다가 차차 임대농지가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현존하는 임대농지를 인정해 놓고, 앞으로 임대농지가 많아지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임차농도 보호하고, 땅을 사신 분도 불안해 하지 말고, 우선 국가에서 조정하는 범위내에서 임대차를 해 나가면서, 그 땅을 가급적으로 직접경작자인 농민들한테 처분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처분할적에 꼭 사겠다는 농민이 있으면 국가에서 농지구입자금을 융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부재지주 발생을 장려한다거나 조장하는 법률이 결코 아닙니다.

權正鉉 : 제가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남의 땅을 빌어 농사짓는 분은 물론 농사일에 관심이 많겠지만 땅임자나 서울에서 땅을 사려는 사람들은 농사에

는 관심이 없고 땅값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읍니다. 땅값이 올라야 부자가 되니까 그래서 모두 다 획기적으로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읍니다만, 좌우간 땅값에 집중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도시근방인가 봅니다. 그래서 농사지을 사람도, 말하자면 농사짓고 싶은 사람도 땅 값에 관심이 있는게 아닌가 보입니다.

그래서 경자유전의 원칙이 좋기는 하지만, 땅값이 올라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서 땅을 산 사람도, 지주도 땅값이 올라야 우리가 좀 허리를 펴고 살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다른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불공평한 것입니다. 서울근교라던지 서울 사람들은, 촌에서 피땀 흘려 농사짓는 사람에 비하여,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어 돈을 막쓰고 다닌다면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런 댓가없는 갑작스런 투기가 계속적으로 보편화되고 존속되어 간다면, 물론 우리 사회가 다른 부문에도 이런 요인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현실은 여하튼간에 방향만은 제대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땅값 문제 때문에 주로 그에 관심을 두시는데 이것이 우리로서는, 오늘의 농지제도개선시책하고 관련된 정책방향은 아닌듯 합니다.

그러니 양해해 주시고, 얘기가 그런 상황에 관심이 모아져 있더라는 것은 충분히 반영하겠읍니다.

농조합장님이 훌륭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대표로써 전국의 농지제도 논의하러 온것이지, 개인적인 살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적으로 사심없이 얘기하는 자리라는 상황을 이해해 주십시요.

조금 차원을 높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물론 개개인의 권리가 보호 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되겠지만 자꾸 땅값에만 국한되어 한쪽 방향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말씀 안하신분 터놓고 말씀해 주십시요.

강영희 (임대인) : 저는 성남에 사는 강영희입니다.

제가 생각해볼 적에는 우리나라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농을 하여 자기 손으로 농사를 못짓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저희실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저는 광주에서 약 30년간 농사를 짓다가 산업도로가 나는 바람에 집이 헐려서 성남으로 이사를 갔읍니다. 성남에 가서도 제가 계속 농사를 사람을 사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로 다시와서 실제 제손으로 농사를 짓고, 실제 제가 건축도 하고 농토를 관리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建築許可關係를 물어봤읍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저는 성남에서 사는 것보다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고 싶어서 이런 건축허가를 낸것인데, 그 허가를 받지 못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읍니다.

全敬植 : 그런 문제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생기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지에 계시므로 증명이 될 수 없읍니다. 주민등록증도 성남에 가 있을 것이므로, 성남에 살면서 괜히 땅을 사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지요. 그러나 앞으로 이 법이 실시되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의 필요성이 거기에 있읍니다. 지금은 선생님의 신분을 심사할 기구가 없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기구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이분은 여기서 농사를 지을 분이라고 인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또 다음분 말씀하십시요.

이의천 (농지개량조합장) :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가급적이면 不在地主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농민이 그 땅을 영원히 부재지주에게 팔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농민에게 돌아가도록, 다시 농민이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裝置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농지세는 어느 세법보다도 가장 농민에게 유리하도록, 부재지주의 땅에는 상당세금을 중

과하여, 자연히 농민에게 팔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주의 경우에는 삼천원짜리 논부터 한 십오만원짜리, 신장쪽은 20만원짜리 땅까지 있는데, 다시는 이러한 부재지주가 생기지 않고 아예 돈있는 서울사람들이 다시는 전혀 농지를 사려고 생각할 여지가 없도록 稅制面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權正鉉 : 말씀 잘 들었읍니다. 그래서 부재지주의 농지는 가급적이면 自作農地로 유도하고, 만일 농사짓는 사람이 자식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減免하는 방안과, 양도소득세도 농민간에는 감면하는 방향으로 稅制改編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부재지주를 인정하지 않읍니다. 원칙은 경자유전입니다. 그래서 경자유전으로 바로 잡고, 어느모로 임대인도 불안하므로 우선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되 처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가 과거의 농지개혁처럼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만약 이래도 땅값이 오른다면, 투기자들끼리 서로 매매되어, 나중에 농사짓는 사람은 땅을 살래야 살 수도 없읍니다. 그러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미리 그런 요소를 제거하여 필요한 농민이 농토를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에 이 법의 의미가 있읍니다.

: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읍니다. 광주지역 지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현재 농촌에서 볼 때 부재지주가 땅을 사서, 경작자인 농민에게 임차를 주면 좋겠는데, 자기가 짓는다면서 경운기도 안 들어가는 땅에 참깨나 좀 심고하여, 농민을 실의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것을 행정기관이나 여기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제도적으로 농민들이 지을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면 농민들이 상당히 의욕에 찰 것입니다.

全敬植 : 농지보존법에는 농토가진 사람은 성실하게 경작해야 한다. 즉 기준 수확량 이하에 미달하는 불성실한 농사를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마음대로 대리경작을 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읍니다. 불성실 경작이란 볼품사납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앞으로는 그 제도도 많이 보완해서, 그런 것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강화해 나간다든지 규제를 가할 것으로 저도 믿습니다.

이의천 : 제가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에 보면 임대차에 대한 자문 및 분규조정 이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관리위원의 권한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농지전용문제라든가, 지금 농촌실정이 농민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법에 묶여서 되는 일이 없어요 돼지우리 하나 만들려 해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창고하나 지을 수 없읍니다. 그런데 돈많은 사람들은 와서 잘만 지어요. 농사 안짓던 사람도 와서 잘지어요

금년도 어느 사람이 별안간에 와서 돼지우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 놓고 한달에 천만원씩 남았다고 합니다. 돼지값이 좋아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농민이 아니라 농사에 투자한 기업가입니다. 그들은 농사로 인해 번돈을 도시로 갖고 갑니다. 집도 여기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순수한 농민은 농사외에 돼지도 좀 먹이고, 소도 키우고 싶은데 제도에 묶여서 못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농사를 계속 지어왔고, 틀림없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농민이 한다면 收入金도 농촌에 再投資되니까 農村經濟도 좀 나아질테고, 지금 문제는 농촌에 와서 사업을 해서 그 수익금을 걷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순수농민은 농사밖에 아는 것이 없어 농사의 재투자가 가능한데 제도에 묶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農地管理委員會에서 틀림없는 사람이고 틀림없는 사업이라고 인정할 때는, 어떻게 보장을 해 주던지 무슨 권한을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全敬植 :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에 관한 한 농지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그 기능이 인정받고, 적어도 농지관리위원회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행정당국에서 시행되도록 농지관리위원

회를 强化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유명무실한 농지관리위원회는 두어서 뭐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연구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만,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촌의 모든것 즉 農政의 기초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農業委員會 같은 것과 비슷합니다. 일본의 농회는 모든 농촌의 말단조직입니다. 그런 농업위원회의 결정은 80%이상 법률상 하자가 없는 한 거의 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볼적에 우리도 앞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그런 정도의 방향으로까지 나아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에 다할 수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시행착오 없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당면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서 몇군데 시험면을 지정하여 시범운영해 보고 나서, 개선점을 보완해서 확신이 설때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해서 권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權正鉉 : 오랜 시간동안 農地制度改善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해야 될 사항을 특히 중요한 특수사항을 지적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대차를 不在地主와 在村地主에 따라 이원화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줄것을 말씀해 주셨고, 임차료에 관해서는 이 지역은 별로 높지 않아 큰 문제는 없으나 이곳이 도시근교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여러가지 農地價格形成에 관한 문제를 말씀해 주셨읍니다. 그 다음은 특히 도시근교다 보니까 不實耕作하는 문제도 나왔고, 토지가격 상승화문제, 이런것이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대책을 세워야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도 나왔읍니다.

그리고 무조건 농지전용의 이득을 노린 투기를 억제하다 보니까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역효과를 내어, 농민이 오히려 피해를 느끼게 되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농지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민에 대한 전용심사를 해서 증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읍니다.

대개 시간이 없어서 말씀하신 바 모두를 다시 반복 정리할 수는 없지만 다들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읍니다.

이런 상황들이 전국적으로, 다들 일선에서 생생한 농민의 여론으로 보고가 되고 여러 차원에서 협의가 되어 우리 농지제도의 기틀이 되도록 하겠읍니다.

바쁘신데 오랜시간 동안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政策討議시리즈 32

農地所有現況과 改善方案

1986년 12월

發行人 金 榮 鎭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동 4 -102

登録 1979年 5月 25日 第 5 -10號

電話 962-7311

印 刷 (株) 文 苑 社

出處를 明示하는 한 자유로이 引用할 수 있으나 無斷轉載 및 複製는 禁함.